

연구보고서

1999 - 010

실업통계의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目次

序言

第1章 序論

第2章 失業統計의 算定基準과 作成方法

第1節 失業統計의 算定基準

1. 失業의 정의
2. 失業의 분류

第2節 失業統計 作成方法

第3節 우리나라 失業統計의 作成方法

1. 우리나라의 失業통계 작성방법
2. 失業통계 작성의 역사

第4節 失業統計 作成의 國際比較

1. 失業통계 조사방법
2. 경제활동분류 포함범위
3. 불완전취업
4. 연령범주
5. 표본추출률

第3章 主要國의 失業統計 作成現況

第1節 美國

1. 失業통계 작성방법
2. 失業통계 작성의 역사

第2節 日本

1. 失業통계 작성방법
2. 노동력조사특별조사

第3節 캐나다

1. 失業통계 작성방법
2. 失業통계 작성의 역사

第3節 英國

1. 失業통계 작성방법
2. 失業통계 작성의 역사

第5節 멕시코

第4章 失業統計 改善方案

第1節 失業統計 作成을 둘러싼 與件變化

1. 인구측면의 여건변화
2. 노동시장의 여건변화
3. IMF 자금지원 신청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

第2節 雇傭構造 變化의 適切한 反映方案

1.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통계적 정의의 일원화
2. 다양한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의 개발
3. 失業통계 개선을 위한 설문지 개정방안

第3節 失業統計의 信賴性 및 效率性 提高方案

1. 조사요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방안
2. CAPI 조사방식의 도입
3. 무응답가구(non-response) 처리방안
4. 가중치 부여의 세분화
5. 표본관리방법의 개선
6. 소지역 失業통계의 개발

表目次

- <표 2-1> 실업통계 작성방법 비교
- <표 2-2> CAPI 방법의 개관
- <표 2-3> 실업통계 조사항목 사항
- <표 2-4> 각국의 실업통계 작성방법
- <표 2-5> 노동력표본조사와 직업안정기관 조사의 실업자수 비교
- <표 2-6> 취업자와 실업자 개념의 국제비교
- <표 2-7> 일시해고자(lay-off)의 국가별 정의 및 경제활동상태 구분
- <표 2-8> 구직활동기간의 국제비교
- <표 2-9> 구직활동기간의 실업률
- <표 2-10> 경제활동 분류
- <표 2-11> 각국의 불안전취업에 대한 통계적 정의
- <표 2-12> 조사대상 연령별주의 국제비교
- <표 2-13> 표본추출률의 국제비교
- <표 3-1> 표본 PSU 구성
- <표 3-2> 실업통계 조사항목 사항
- <표 3-3> 미국 CPS의 변천
- <표 3-4> 실업통계 조사항목 사항
- <표 3-5> 일본 노동력조사의 변천
- <표 3-6> 휴직자 및 실업자 정의의 변천
- <표 3-7> 노동력조사특별조사 조사항목(1999년 2월 기준)
- <표 3-8> 주(州)별 표본수 현황(1998년 3월 기준)
- <표 3-9> 캐나다의 실업통계 조사항목 사항
- <표 3-10> 캐나다 노동력조사의 주요 변경내용
- <표 3-11> 영국 노동력조사의 취업자 분류
- <표 4-1> 인구변화 추이
- <표 4-2> 농가·비농가별 생산가능인구 구조의 변화
- <표 4-3>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1970~98)
- <표 4-4> 성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표 4-5> 실업률의 장기변화 추이
- <표 4-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추세
- <표 4-7> 최근의 고용동향
- <표 4-8> 월간 노동력 상태의 변화
- <표 4-9> 산업별 취업자 추이
- <표 4-10>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표 4-1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
- <표 4-1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1995년 5월 기준)
- <표 4-13> 종사상지위별 노동력 상태의 변화(플로우 분석): 3월 실업→4월 취업
- <표 4-14> 추가취업희망자 추이
- <표 4-15> 장기실업률 추이
- <표 4-16> 성별·연령별 장기실업 현황
- <표 4-17>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정의
- <표 4-18> 근로시간 구분에 따른 취업자의 변화
- <표 4-19> 주요국의 구직단념자 정의
- <표 4-20>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비교: 통계청·노동부
- <표 4-21> 각 기관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비교(1998년 기준)
- <표 4-22> 미국의 노동력 불안전활용 관련지표
- <표 4-23> 멕시코의 노동력 불안전활용 관련지표
- <표 4-24> 노동력 불안전활용 관련지표의 개발방안

- <표 4-2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조사항목(1999년 6월)
- <표 4-26> 성별 15세 이상 인구
- <표 4-27> 학력별 15세 이상 인구
- <표 4-28> 연령계층별 15세 이상 인구
- <표 4-29> 센서스와 추정방법별 15세 이상 인구 분포차이 비교
- <표 4-30> 추정방법별 취업자수 분포차이 비교
- <표 4-31> 추정방법별 실업자수 분포차이 비교
- <표 4-32> 추정방법별 비경제활동인구 분포차이 비교
- <표 4-33> 추정방법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비교(1995년 11월 기준)
- <표 4-34> 성별 · 학력별 · 계층별 실업률 비교
- <표 4-35> 고정표본방식과 연동교체방식의 장 · 단점 비교
- <표 4-36> 인구이동 통계
- <표 4-37> 시도별 아파트 신축현황(1995.11.1~1998.10.31)
- <표 4-38> 월간 중복률
- <표 4-39> 충청북도 경제활동인구 총괄(1994년 4월 기준)
- <표 4-40> 충청북도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와 조사구 현황
- <표 4-41> 연령계층별 · 학력별 추정 실업자 현황

그림目次

- [그림 2-1] 경제활동상태 분류
- [그림 2-2] 조사흐름도
- [그림 3-1] 취업상태 구분
- [그림 3-2] 조사흐름도
- [그림 3-3] 캐나다의 경제활동상태 조사흐름도
- [그림 3-4] 분기별 비교
- [그림 3-5] LFS의 경제활동상태 분류
- [그림 4-1] 평균가구원수 추이
- [그림 4-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그림 4-3] 지난 30여년간의 고용변화
- [그림 4-4] 고용구조의 변화
- [그림 4-5] 월별 실업률 추이
- [그림 4-6] 단시간근로자의 질문흐름도
- [그림 4-7] 불완전취업자의 질문흐름도
- [그림 4-8] 구직단념자의 질문흐름도
- [그림 4-9]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질문흐름도
- [그림 4-10] 인적사항의 질문지(안)
- [그림 4-11] 경제활동상태의 질문지(안)
- [그림 4-12] 취업자의 질문지(안)
- [그림 4-13] 실업자의 질문지(안)
- [그림 4-14] 비경제활동인구의 질문지(안)
- [그림 4-15] 조사구와 주소의 계속조사 현황
- [그림 4-16] A-설계와 C-설계에서 연동표본 교체현황

序言

우리나라에서 실업관련 통계가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구조적으로도 크게 변모하여 왔다.

특히 1997년 말의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사회적인 위기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초래하였다.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고용규모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취업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임금상승률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실업발생과 소득불안정 및 불균등의 심화 등에 따른 사회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1998년 3월 이래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내용과 규모로 추진된 실업대책은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이자 재취업을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상당부분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실업대책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실업관련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업관련 통계자료는 급변하는 고용구조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반영하여 고용 및 실업대책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통계는 상당한 부분의 개선과 보완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실업통계는 국제비교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우선 실업과 관련한 제개념 및 통계적 정의, 실업통계 작성의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실업통계 작성방법 및 현황, 그리고 실업통계 작성방법의 국가간 차이와 주요국 경험의 시사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업통계 개선의 필요성을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통해서 제시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실업통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주요 통계적 정의를 일원화하는 방안, 노동력 불안전지표의 개발, 실업통계 조사의 효율화, 소지역 통계조사 방안 등의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경제활동인구 조사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는 본래 노동부의 위탁용역과제로 수행된 것을 실업통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약간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발간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발간을 허락해 준 노동부 관계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는 본원의 강순희 동향분석실장의 책임하에 전재식 연구원, 그리고 공군사관학교의 이계오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다. 제한된 시간에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충실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린다. 또한 정책담당자겸 전문가로서 본 연구가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준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실의 이화영 박사,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회의에서 좋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신 홍익대학교의 박래영 교수, 숭실대학교의 조우현 교수, 서강대학교의 남성일 교수, 명지대학교의 최강식 교수,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최영섭 부장,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의 김태홍 박사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마무리 작업까지 과제수행의 전과정에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성의를 다하여 준 김난주 석사, 나지은 연구조원, 그리고 편집과 교정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박찬영 출판팀자, 정철 책임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9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朴煥求

第 1 章

序 論

우리나라에서 실업관련 통계가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양적·질적인 차원에서 크게 변모하여 왔다. 특히 1997년 말의 IMF 지원체제에서 비롯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초래하였다.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고용규모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임금상승률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실업자 발생과 소득불안정 및 불균등의 심화 등에 따른 사회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 3월 이래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내용과 규모로 적극적으로 추진된 실업대책이 기대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으며 평가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행의 실업통계로 이러한 평가를 심층적으로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는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빠르게 변모해 가는 경제·사회적 구조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자료는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관련 통계는 급변하는 고용구조를 정확하고 시의성있게 반영하여 고용 및 실업대책의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통계는 국제비교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무한경쟁의 세계에 접어드는 마당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나라들의 노동시장 여건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실업통계가 거시경제 지표로서 정확성과 시의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부 실업대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 그리고 국제비교의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실업통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실업과 관련한 제개념 및 실업의 통계적 정의, 실업통계작성의 국제표준규정과 우리나라의 실업통계 작성방법 및 현황, 그리고 실업통계 작성방법의 국가간 차이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실업통계 작성현황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며, 제4장에서는 실업통계 개선의 필요성을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통해서 제시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第 2 章

失業統計의 算定基準과 作成方法

第 1 節 失業統計의 算定基準

1. 실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실업자'라고 하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 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실업이란 일자리가 없거나 단지 일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의미하지는 않으며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구직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만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1982년에 채택된 ILO 기준에 근거하여 실업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각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실업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먼저 ILO 기준¹⁾에 의한 각 경제활동상태의 개념 및 분류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는 크게 경제활동인구(labour force)와 비경제활동인구(inactive person)로 나누어지는데, 경제활동인구란 일정연령 이상의 민간인구, 즉 경제적 의미에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employed person)와 실업자(unemployed person)로 나누어진다.

[그림 2-1] 경제활동상태 분류



주 :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범주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는 만 15세 이상 인 차를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켜 생산가능인구로 구분하고 있음.

ILO 기준에 따르면, 취업자란 조사대상기간(reference period) 중 소득있는 일에 종사하는 특정연령 이상인 자를 말하며, 여기서 조사대상기간은 1주일 혹은 1일로 정의되어 있다. 이 때 취업자는 크게 임금근로자(paid employment)와 자영업자(self employment)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임금근로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최소한 1시간 이상 일한 자, 혹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persons who with a job but not at work)를 일컫는다. 이 때 일시휴직자는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임금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나, 복직 약속(recall agreement)을 받아놓았거나, 아니면 전직의사에 상관없이 경과된 공식기간 동안에도 부가급여(compensation benefit)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만이 포함된다. 자영업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수입이나 가족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한 자를 칭하며, 여기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실업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직업은 없으나(without work),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currently available for work),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seeking work) 자로 정의된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기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일정연령 이상인 자로서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각 개념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이 중에서 실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의사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ILO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취업의사 여부를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로만 판단할 수 없다. 만약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일시 중단한 경우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구직활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구직활동의 비용이 아주 높은 경우 취업의사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개념상으로는 분명히 실업자에 속하지만 통계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된다.

2. 실업의 분류²⁾

실업은 발생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실업은 발생원인에 따라 크게 수요부족실업(demand deficient unemployment)과 비수요부족실업(non-demand deficient unemployment)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요부족실업이란 총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퇴되고 그 때문에 기업에 의한 해고 등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실업이다. 수요부족실업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이다. 다음으로 비수요부족실업에는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그리고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 등이 있다. 한편 실업자를 실제로 이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유형에 따라 정부의 실업대책이 달라지므로 실업대책이라는 정책적 요구와의 관련하여서는 이들 실업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실업의 유형 및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가. 경기적 실업

어떤 경제의 총수요가 전체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 수요부족실업이며 그것의 단기적 현상이 바로 경기적 실업이다. 즉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의 인원감축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호황기에는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므로 개별기업들은 설비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증대하게 된다. 그러나 경기후퇴기를 맞이하게 되면 기업은 처음에는 재고를 증가시킴으로써 대응하지만 불경기가 더욱 진행되면 결국 고용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경기적 실업이다.

나.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이란 실업과 미충원상태에 있는 (unfilled vacancy)이 공존하는 경우의 실업, 즉 구직자와 구인자가 적절히 대응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구인과 구직에는 탐색활동이 필요한데 노동시장에서의 정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마찰적 실업을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마찰적 실업은 미충원공석에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실업자로 존재하고 있더라도 취업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난다.

다.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구인사업장 또는 미충원상태에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또는 해당지역 내에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공석과 실업이 공존하더라도 구인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기술의 불일치(skill mismatch)로 인한 구조적 실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노동력에 대한 수요구조가 변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직종간 부존상태의 불균형이 존재하게 되면 노동시장 정보의 불완전성에 의하지 않고도 공석과 실업이 공존하게 된다.

라. 계절적 실업

계절적 실업이란 건설업, 농업, 그 외의 계절적 특성을 가지는 산업에서 기후나 날씨, 일기에 따라서 생산 또는 서비스 활동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혹한기에는 건설공사가 불가능하며 농산물의 생산이나 의류의 수요 등에는 계절성이 대단히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어떤 계절에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다른 계절에는 수요가 매우 부족하여 계절적으로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계절적 실업도 경기적 실업과 유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절적 실업은 계절성에 의하여 확실하게 실업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적 실업과는 다르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부분 졸업시기가 연초에 몰려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갓 졸업한 신규노동력의 대다수가 취업을 위하여 연말, 연초를 전후로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계절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실업을 이직이유에 따라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과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며, 또한 시대적 요구와 배경에 발생하는 실업이 다소 존재하게 되는 데 그 중의 하나가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다. 모든 실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³⁾. 실업은 상이한 기업들과 상이한 근로자간에 일궁합(job match) 과정에서 양자간의 불합치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직장탐색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실업은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실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실업률 상승은 경기침체와 이를 계기로 한 기업의 대대적인 고용조정에 의한 것으로서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 그 극복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 소득감소, 삶의 질 하락을 동시에 수반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최근의 실업에 대하여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더불어 실업자 구조분석 등 미시적인 접근을 가미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실업대책이 강구될 수 있다고 본다.

주석 1) 1982년의 제13차 ILO 노동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채택된 권고안이다.

주석 2) 배무기, 『노동경제학』, 132~146쪽 참조.

주석 3) 조우현, 『노동경제학』, 485쪽 참조.

第 2 節 失業統計 作成方法

각국은 앞서 언급한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개념 및 분류에 기초하여 매월, 매분기, 혹은 매년마다 실업통계를 작성하며 국제비교 지표로 사용한다.

실업통계 작성방법은 크게 ‘노동력표본조사’ 방식과 ‘직업안정기관 통계’ 방식으로 대별된다. 노동력표본조사 방식이란 일정한 표본가구 내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통하여 일정연령 이상의 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조사한 후 각 계층별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실업자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ILO의 권고 방식이다. 이 방식은 ILO 기준에 따른 데이터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통계의 국제비교가 가능하며, 모든 국민을 조사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고, 또한 조사항목의 세분화가 가능하여 노동시장 특성을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조사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직업안정기관 통계방식이란 직업안정기관이나 실업급여 사무소의 업무통계에 등록된 등록실업자수를 기초로 실업률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직업안정기관 방식에 의한 실업자는 주로 실수 혹은 분기별 및 연간 노동력조사에서 얻어지는 실업자를 기초로 보간법(補間法)¹⁾ 등으로 추계한 등록실업자수를 센서스, 노동력조사, 기타 통계조사나 업무자료에서 산출한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을 실업률 산식으로 사용한다. 주로 실업보험제도와 직업안정기관 제도가 발달하고,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직업안정기관 통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법은 조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신규실업자, 농림어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던 전직실업자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허위로 등록된 위장실업자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ILO 기준에 따른 실업자 파악이 곤란하며 행정제도와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사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도 연 1~4회 노동력표본조사 방법에 의한 가구조사를

통해 이러한 실업통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표 2-1> 실업통계 작성방법 비교

	노동력표본조사(ILO 권고방식)	직업안정기관 통계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타계식조사 • 전화면접조사 • 자계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가 직접 직업안정기관에 등록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기준에 따른 데이터 파악이 가능 • 모든 국민을 조사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조사항목을 세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특징을 세분하여 분석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과 시간 절약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한 비용 사용 •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 발생 가능성 매우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기준에 따른 실업자 파악 곤란 • 위장실업자 발생 가능성 높음 • 행정제도와 법률의 개정 여 따라 조사내용이 변경됨
실업자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은 없으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실제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실업자수} +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안정기관 등록자 중 미취업자 • 실업률 = $\frac{\text{등록실업자수}}{\text{등록실업자수} +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노동력표본조사의 경우 조사에서부터 수량화된 자료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자료수집, 자료입력, 자료처리의 단계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업통계의 조사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이며 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는 면접타계식(face-to-face) 조사방법과 자계식(self administration) 조사방법 등이 있다. 먼저 면접타계식 조사방법이란 면접조사원이 직접 응답자와 마주하여 면접조사원과 응답자와의 질의와 응답을 통해 면접조사원이 조사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면접자가 응답자와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면접자가 응답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다음으로 자계식 조사방법은 면접조사원 없이 응답자가 설문지에 조사항목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다.

면접타계식 조사방법에는 설문지에 필기구로 작성하는 방법(face-to-face interview with pencil)과 컴퓨터 이용 조사방법(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이하 CAPI 방식이라 칭함)이 있다.

또한 응답자의 요청이나 상황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조사방법(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이하 CATI 방식이라 칭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CAPI 방식은 면접조사원이 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조사표의 조사내용을 직접 컴퓨터에 작성하며, 수집된 자료는 통신을 통해 중앙에 보내는 방식이다. CAPI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으로는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앙에 직접 보내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오류뿐만 아니라 자료의 손상이나 손실이 없으며, 자료를 수집한 그 날로 중앙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자료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면접조사원이 컴퓨터 화면에 올라오는 질문을 읽고 응답자의 답변을 입력하면 그 응답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매우 편리하며, 면접조사원에게 정확히 다음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실수로 '비해당' 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월의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과 현재의 응답을 비교하여 잘못된 응답에 대해 면접원이 다시 질문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조사가 필요없는 경우는 자동으로 처리하여 조사원이나 응답자 양자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실업기간의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함으로써 조사부담이 적어진다는 장점도 추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컴퓨터가 사용상에서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사를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면접조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며, 전산관련 용품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며, 면접조사원에게 컴퓨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한다는 부담도 크다.

<표 2-2> CAPI 방법의 개관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CAPI)	
개념	· 면접조사원이 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조사표의 조사내용을 직접 컴퓨터에 작성하며, 수집된 자료는 통신을 통해 중앙에 보내는 방식
장점	· 자료의 손상이나 손실 최소화 · 복잡한 설문조사의 작성 용이 · 자료처리의 신속성 · 면접자와 응답자의 부담 경감
단점	· 컴퓨터 사용상의 오류 발생 가능성 높음 · 막대한 비용 소요 · 면접조사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 철저

주석 1) 보간법이란 확률(면적)이 주어진 경우 분포표를 이용하여 통계량을 구하거나, 또는 통계량이 주어진 경우 이에 해당하는 확률(면적)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第 3 節 우리나라 失業統計의 作成方法

1. 우리나라의 실업통계 작성방법

우리나라는 1963년 실업률 통계작성 때부터 ILO 방식에 의거한 노동력표본조사 방식을 사용하여 통계청(구(舊)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분기별로 실시하여 왔으며, 1982년 7월부터는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고 있다. 고용관련 통계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외에도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구(舊) 고용전망조사보고서)』, 『노동력유동실태보고서』,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들 통계의 대부분은 가구단위 조사가 아닌 사업체단위로 조사하고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모집단이 상이하다. 또한 사업체단위의 조사이기 때문에 노동수요 측면만을 파악할 수 있으며 노동의 공급 측면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조사통계를 가지고는 실업과 관련한 지표를 구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1999년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실업통계 작성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목적 및 조사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상태, 즉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등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근로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대상자는 전국 가구 중 표본으로 뽑힌 30,000가구 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만 1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조사대상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ILO 권고안을 기초로 노동력 접근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되, 현역군인(직업군인 포함)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등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기간은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으로 하며,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사방법은 통계청에서 12개 지방사무소 조사담당 직원이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며, 조사표 작성은 직원이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면접타계식 조사방법에 의한다.

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 섬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2,029조사구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하여 지역별 포분수에 따라 계통추출법을 이용 1,231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선정한다. 이들 조사구는 조사구별로 평균 8가구가 되도록 구역을 정하여 중앙에서 지정한 표본구역을 포함한 인접조사구역 3개를 추출하여 이 구역 내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를 조사한다.

표본추출과정에 있어서는 먼저 1차 추출단위 조사구 명부를 작성하는데, 이는 1992년 7월 1일 현재 행정구역에 의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와 각 도의 시구 및 군부로 나눈 25개 지역별로 층화하며, 조사구의 나열은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1) 동부(7대 대도시와 9개 도에서 시지역)

① 주택특성(5)

대형아파트(30평 이상), 중소형아파트(30평 미만),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기타

② 농림어업 비율(10)

0%, 1~10%, 11~20%, 21~30%, ………, 81~90%, 91~100%

③ 광공업비율(10)

0%, 1~10%, 11~20%, 21~30%, ………, 81~90%, 91~100%

④ 행정구역별

2) 읍면부(도·농 혼합 시에서 읍·면 지역 포함)

① 주택특성(5)

대형아파트(30평 이상), 중소형아파트(30평 미만),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기타

② 광공업 비율(10)

0%, 1~10%, 11~20%, 21~30%, ………, 81~90%, 91~100%

③ 서비스업 비율(10)

0%, 1~10%, 11~20%, 21~30%, ………, 81~90%, 91~100%

④ 행정구역별

한편 25개 지역별로 작성된 추출단위 조사구 명부에서 각 지역별 표본조사구수에 따라 크기의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표본조사구를 계통추출한다. 그리고 각 표본조사구에서 가구수가 균등하도록 크기의 측도와 같은 수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이 중 3개의 인접구역을 조사구역으로 추출하며, 추출된 조사구역에서는 구역 내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전수조사한다.

결과적으로 25개 지역별 표본추출률은 서로 다르게 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는 동일하게 되는 지역별 자체 가중평균이며, 목표 표본가구는 30,000가구가 표본으로 되었으나¹⁾, 1998년에 실제적으로 조사된 조사가구수는 월평균 28,300가구에 이른다.

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 현황

현행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30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사항 및 구조, 그리고 전직사항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인적사항 항목에는 개인의 신상명세, 즉 가구원의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이 그리고 취업자 항목에는 취업시간, 36시간 미만 취업한 이유와 추가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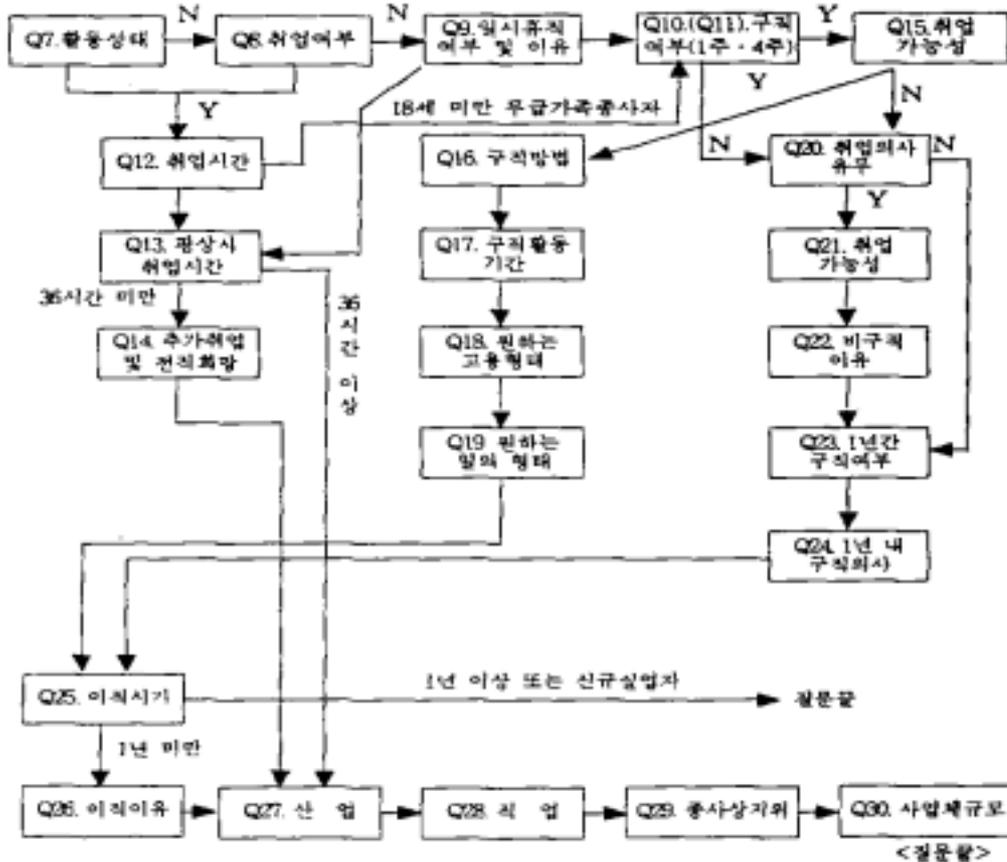
및 전직희망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업자 항목에는 취업가능성 여부, 구직경로, 구직기간,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항목에는 취업의사유무, 취업가능성 여부, 비구직 이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및 시기, 향후 1년간 구직할 의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전직사항을 묻는 항목에는 이직이유,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등이 있으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취업자와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모두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표 2-3> 실업통계 조사항목 사항

	항목수	내 용
인적사항	6	•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 정도, 혼인상태
확인항목	5	•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의 구직여부, 1개월간의 구직여부
취업자	3	• 취업시간,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 추가취업 및 전직 희망 여부
실업자	5	• 취업가능성 여부, 구직경로, 구직기간,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
비경제활동인구	5	• 취업의사 유무, 취업가능성 여부, 비구직 이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및 시기, 향후 1년간 구직할 의사
전직사항	6	• 전직유무, 이직이유,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이같이 구성되어 있는 조사항목은 실질적으로 다음의 조사흐름도에 따라 작성된다. 조사흐름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활동상태(Q7)와 취업여부(Q8), 그리고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Q9)를 질문하여 취업자와 기타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한다. 그 다음으로 구직여부(Q10)와 취업의사(Q10)를 질문하여 다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만약 취업시간(Q12) 항목을 질문하여 취업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는 경제활동분류상 취업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구직여부(Q10)를 질문하여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1998년부터 실업자에 대한 신규 및 전직실업자의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노동시장 재진입자(re-entrant)들은 신규실업자에서 전직실업자로 변경되었으며, 전직실업자는 이직시기에 따라 다시 1년 이상 전직실업자와 1년 미만 전직실업자로 나누어졌다. 전직실업자 중 이직시기가 1년 이상인 전직실업자에 대해서는 전 직장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이직시기가 1년 미만 전직실업자에 대한 구조만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설문지를 개정하였다. 따라서 이직시기(Q25)를 질문하여 이직시기가 1년 미만인 전직실업자에 대해서만 실업구조를 묻는 형태가 조사흐름도가 되고 있다.

[그림 2-2] 조사흐름도



2. 실업통계 작성의 역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3년 처음 조사된 이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개선과 발전을 꾸준히 거듭해 왔다. 특히 그 당시의 경제상황 현실도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표본수의 개편과 내용의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활동인구에 관한 조사는 내무부 통계국에서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1957~62년까지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시작되었으며, 1962년 6월 1일 지정통계 제111-11-04호로 지정, 동년 8월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명칭변경 및 새로운 표본과 전문화된 조사원에 의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3년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따른 자료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동력조사의 결함을 보완하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작성할 목적으로 통계법(1962년 1월 15일 공포) 제2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4호로 지정하고 조사명칭도 경제활동인구조사로 개편하였으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²⁾에서 매분기마다 조사표 1매당 여러 명이 조사하는 방법인 연기식 조사표에 의해 15개 항목을 면접조사하였다.

1969년에는 표본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상 편의와 조사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1966년 인구센서스 조사구 중에서 다목적 표본을 설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외에도 도시가계조사, 인구동태조사 등 각종 가구조사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후 7차례의 표본개편이 진행되었다.

한편 1980년에는 다양한 자료생산을 위하여 조사항목을 26개로 확대하였고 조사표도 조사표 1매당 1명씩 조사하는 방법인 단기식으로 변경하였으며, 1982년 7월에는 고용구조의 변화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주기를 월별로 변경하였으며, 조사표도 단기식과 연기식을 병행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2년에 개정된 ILO 권고안에 따라 1983년 조사표를 전면 보완하였으며, 1985년 1월부터는 조사결과 자료의 이용 확충을 위하여 단기식 조사표로

단일화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민소득의 향상과 교육시설 확충으로 중학교 진학률이 99%를 상회하고, 1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자가 극히 저조함에 따라 그동안 적용된 조사대상 하한 연령 14세를 1987년 1월부터는 15세로 상향조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88년 7월 이후 기존의 표본 17,500가구를 32,500가구로 확대하여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시켰으며, 1989년부터 전국자료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시·도별 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1992년에는 1990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표본을 개편하였고, 1993년부터는 개편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경제구조를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1994년 6월에는 새로운 시도별 인구추계가 공표 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시도별 자료가 생산되기 시작한 1989년부터 시계열을 조정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인구,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가 급변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고용사정도 크게 변하였으며, 시간제 취업이나 파견근로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여 고용통계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OECD 가입에 따라 실업률 국제비교를 위하여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업자 기준과 일치시키고 고용대책별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실업보조지표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사표 개편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표본을 개편하였으며 지역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월별로 16개 시도별 자료도 함께 공표토록 하였다. 특히 1998년 9월부터는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하에서 실업대책의 평가와 향후 실업대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에서 분기별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8년 9월의 1차 경황부가조사, 12월의 2차 경황부가조사 실시 이후, 경황부가조사를 더욱 개선한 후 실시하기 위해서 1999년 3월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1999년 6월부터 경황부가조사표를 더욱 개선시켜 조사를 재개하고 있다.

주석 1) 목표 표본가구수는 1997년 말까지는 34,000가구였으나 1998년 표본개편 이후 30,000가구로 변경되었다.

주석 2) 1963년에 국명칭 변경(통계국 → 조사통계국)과 함께 경제기획원 산하의 외국으로 개편되어 통계기획과, 통계기준과, 인구통계과 및 경제통계과의 4과로 조직되었다. 그후 조사통계국은 여러 차례 확대·개편되어 오다가 국가 기본 통계생산과 통계조사 및 조정과에 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1990년 12월에 3국 14와 11개 통계사무소 5개의 출장소로 구성된 통계청으로 승격·개편되었다.

第 4 節 失業統計 作成의 國際比較

노동시장 상황과 복지제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업통계의 조사방법, 경제활동의 개념, 조사대상기간(reference period), 구직활동기간(job search period), 조사대상 연령, 그리고 조사대상자 범위 등에서 각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ILO 방식에 의거하여 실업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실업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국가별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실업통계 조사방법

노동력표본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등이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실업보험을 시행하고 있어 직업안정기관 방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력표본조사 방법에 의한 실업통계를 공식적인 통계로 생산하고 있다.

직업안정업무 통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비교적 실업보험제도와 직업안정기관제도가 발달하고,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다. 그러나 직업안정업무 통계방식을 이용하여 실업률을 산정하는 나라의 경우도 국제비교를 위하여 ILO 기준의 노동력조사 방식으로 실업률을 집계하여 함께 발표한다. 예컨대 유럽연합국가의 경우는 EU 내

국가들의 실업률을 비교하기 위하여 ILO 기준에 의거한 EU 통일기준에 따라 각국이 매년(또는 분기) 실시하는 노동력조사를 독자적으로 취합하여 발표하고 있다. 실업률은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실업자를 기초로 하되 노동력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EU 통계국에서 계산하여 발표하였으나 1996년 하반기부터는 각국에서 직접 추계하여 EU 통계국에 제공하고 있다.

<표 2-4> 각국의 실업통계 작성방법

	노동력표본조사 방식			직업안정기관 통계 방식 ³⁾
	면접타계식		자계식	
	설문지	CAPI ¹⁾		
국가	대만,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47개국
조사 대상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국 : 매월 15일이 속하는 주 · 미 국 : 12일이 속하는 주 · 일 본 : 매월 말일이 속한 1주²⁾ · 대 만 : 매월 15일이 속하는 주 · 캐 나 다 : 매월 15일이 속하는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국 : 둘째 목요일 · 프 랑 스 : 매월 말일

주 : 1)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방식 병행.
 2) 12일의 경우는 26일이 속한 1주.
 3) 직업안정기관 통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국제비교를 위해서 노동력표본조사 방식도 병행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 역시 각 집계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자료 : 유럽국가 -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1996.
 기타 국가 - 자국통계

실업률은 조사방식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직업안정기관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실업률을 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를 할 목적으로 노동력표본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표 2-5>에서 보듯이 노동력표본조사에서 추정된 실업자 및 실업률과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실업자수 및 실업률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전체 실업자는 추정방향과 상관없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5> 노동력표본조사와 직업안정기관 조사의 실업자수 비교

(단위 : 천명, %, %포인트)

	실업자수		
	노동력표본조사(A)	직업안정기관(B)	차이(A-B)
영 국(1994. 봄)	2,650(9.4)	2,620(9.3)	30(0.1)
프랑스(1994. 3월)	3,115(12.5)	3,327(13.3)	-208(-0.8)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임.
 자료 : ILO, World Labor Report, 1995

노동력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자계식 조사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는 일본 등이 있다. CAPI 방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며, 대만, 프랑스 등의 경우는 직접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타계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기간(reference period)의 경우는 1주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라마다 대부분 비슷하며 다만 특정조사 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한국의 경우는 조사대상기간이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 미국은 매월 12일이 속한 1주간, 그리고 일본은 매월 말일의 1주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되 실제조사는 그 다음주에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직업안정기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조사대상일이 하루단위이다. 예를 들면 영국은 두 번째 목요일에 실업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매월 말일에 집계하고 있다.

2. 경제활동분류 포함범위

앞서 살펴보았듯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기준은 세계적으로 ILO 권고안을 기초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자 및 실업자에 대한 구분이 거의 비슷하며, 다만 그 나라의 경제사정 및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기준에 약간의 차이만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주당 취업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질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기타 개인적 이유 등에 의한 일시휴직자(temporarily absent)도 취업자 범주로 포함된다. 반면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는 주당 취업시간에 따라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주당 18시간 이상인 경우를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미국은 15시간 이상, 싱가포르와 일본 등은 1시간 이상인 경우를 취업자로 구분하며, 캐나다, 영국 등은 취업시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특이한 사항으로는 영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부보조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를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취업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다.

<표 2-6> 취업자와 실업자 개념의 국제비교

	취업자	실업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움 가족 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기간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기간 중 임금근로자로서 또는 사업체나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자로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의 가족으로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직업 혹은 사업체는 갖고 있으나 휴가, 병, 일기불순, 육아문제, 출산휴가, 노동쟁의, 직업교육, 기타 개인적 이유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기간 중 취업되지 못한 자 중에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1주 내에 취업이 가능하였던 자 • 조사대상기간 중 일시해고된 직장에서 재소환(recall)을 기다리고 있고 만약 재소환이 된다면 그 직장에 복귀해서 업무가 가능했던 일시해고(lay-off)자

	취업자	실업자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기간 중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조사대상기간 중 가족의 이익을 위해 1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직장이나 사업이 있으나 질병, 부상, 작업장의 기계 파손, 노동쟁의나 이외의 이유로 인한 일시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기간 동안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을 할 수 있었고 유급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 • 조사대상기간 중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자나 구직결과 대기자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기간 동안 임금이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 • 자신의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무급가족종사자 • 조사대상기간 중 일을 가지고 있었으나 병, 장애, 개인 및 가족적 이유, 휴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의해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기간동안 일은 하지 않았으나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자 • 재소환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일시휴직자 • 조사대상기간으로부터 4주 이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기간 중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조사대상기간 중 1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조사대상기간 중 일은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임금근로자 •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 • 구직활동 결과를 기다리는 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1시간 일한 임금근로자 •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휴일을 맞이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일시휴직자 • 정부보조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가자 • 가족의 사업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주간 동안 일은 없었으나 직장을 원한 자 중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2주내에 취업이 가능한 자 • 일시적인 병이나 휴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못한 자 • 취업된 직장에서의 발령대기자 또는 취업원서 제출결과를 기다리는 자

자료 : 한국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미국 - BLS, *Census Population Survey*.
 싱가포르 -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1997*.
 일본 - 総務廳統計局, 『勞働力調査年報』, 1996.
 영국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Force Survey*.
 캐나다 - Statistics, Canada, *Guide to the Labour Force Survey, 1999*.

다음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실업자의 범주를 현재 일이 없으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취업이 가능한 자로 분류한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일시해고자(lay-off)인 경우 캐나다, 미국 등 수요감소시 인력감축 방안으로서 일시해고를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들은 일시해고자를 실업자 범주에 포함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 등이 일시해고를 실업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유럽국가들의 경우에는 일시해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시해고에 대한 정의 및 포함범주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취업유무와 구직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고 있다.

발령대기자인 경우 싱가포르, 일본, 영국 등은 실업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한국은 4주 이내의 발령대기자인 경우 실업자로 분류한다. 반면 일본은 실업자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미국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취업내정자는 실업자 범주에서 제외한다. 학생구직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업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2-7> 일시해고자(lay-off)의 국가별 정의 및 경제활동상태 구분

	정 의	경제활동상태
한 국	• 일정한 기준 없음	취업유무 및 구직여부에 따라 분류
미 국	• 일시적 수요하락, 경영사정 악화, 기계교체, 재료부족, 재고량 조정 등 회사관련 이유에 의해 일시적으로 離職된 직장으로부터 재소환을 기다리는 자. 단 반드시 직장으로서의 복귀날짜를 정했거나, 만약 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재소환이 되어야 함	실업자
대 만	• 직장으로부터 해고된 후 재소환을 기다리는 자	실업자
캐나다	• 조사대상기간 중 회사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방출되어서 일하지 못한 자. 단 직장으로서의 재소환 날짜를 명확하게 정했거나 고용주로부터 장래에 재소환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어야만 함. 그리고 반드시 조사대상기간 중 일을 할 수 있는 자여야만 함	실업자

자료 : 한 국 - 통계청.

미 국 - BLS, *Census Population Survey*.

캐나다 - Statistics, Canada, *Guide to the Labour Force Survey*, 1999.

대 만 - R.O.C., *Yearbook of Manpower Survey Statistics Taiwan Area*, 1998.

한편 조사상에서 실업자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 ‘구직활동 여부’를 질문하는 항목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 주에 직장을 구해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구해보았음’이라고 답한 경우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질문에서 보듯이 실업자의 판단기준으로 구직활동기간(job search period)을 ‘지난 주’라는 1주간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직활동기간은 각 나라마다 서로 상이하다. 먼저 최근에 일부 학자들과 언론 사이에 실업통계와 관련하여 ‘ILO 기준은 구직활동기간이 1주이고 OECD 기준은 4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다. ILO 기준에는 구직활동기간이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나라마다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OECD의 경우에도 ILO 권고안을 기초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OECD에서는 회원국들간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를 위해 1년에 1번씩 EuroStat(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기준¹⁾에 의해서 표준화된 실업률(standardized unemployment rate)을 작성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나라별 구직활동기간을 살펴보면, 구직활동기간이 1주인 나라는 한국²⁾,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이며, 미국, 영국, 캐나다는 4주, 그리고 대체적으로 직업안정기관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실업자를 구분한다.

<표 2-8> 구직활동기간의 국제비교

	한 국	미 국	일 본
구직활동기간	1주	4주	1주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구직활동기간	4주	4주	1주
			대만

구직활동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업률의 변동은 외국의 경우를 볼 때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9>에서 보듯이 일본³⁾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구직활동기간이 1주인 경우와 4주인 경우의 실업률은 차이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0.5%포인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률이 감소할 경우 그 격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9> 구직활동기간별 실업률

(단위 : %, %포인트)

	구직활동기간		
	1주(A)	4주(B)	차이(B-A)
한 국 ¹⁾	6.2	6.7	0.5
일 본 ²⁾	2.1	2.1	0.0

주 : 1) 1999년 6월 기준임.

2) 1992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1999년 6월 중 고용동향」.

Elder and Sorrentino(1993), p.57.

3. 불완전취업

불완전취업(underemployment)에 대한 통일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는 그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취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논의중에 있다.

실제적으로 ILO 국제노동가전문회의에서 불완전취업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25년 이래 불완전취업에 관한 국제기준이 1957년도에 최초로 마련되어 현재의 불완전취업의 기준에 대한 기초가 이루어졌다. 1966년에는 불완전고용과 노동력 과소이용(underutilization)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1982년에서야 비로서 불완전취업에 관한 결의안이 수정되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ILO 기준에 따르면 불완전취업이란 ‘근로의 지속시간(duration)이나 생산성(productivity) 측면에서 완전고용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된다. 따라서 어떤 근로자가 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위해서, 혹은 자신이 소유한 기술 등의 충분한 활용,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을 위해 새로운 직업을 구할 의사가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불완전취업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 2-10>에서와 같이 다음의 3가지 항목에 의해서 취업과 실업, 불완전취업,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취업자와 불완전취업자의 구분은 둘 다 일은 하고 있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자와는 달리 불완전취업자는 다른 일을 할 의향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하는 점에서 구분된다. 또한 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의 구분은 둘 다 일을 할 의향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점에서는 같으나 실업자는 현재 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반면, 불완전취업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 이는 불완전취업자가 근로시간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부적당한 고용(inadequate employment)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10> 경제활동 분류

	경제활동상태 분류			
	취업	실업	불완전취업	비경제활동
일을 하고 있거나 직업을 있음 (works or has a job)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일할 의향이 있음 (willing to work)	-	예	예	아니오
일을 할 수 있음 (able to work)	-	예	예	아니오

자료 : ILO, *The Measurement of underemployment*, October, 1998, p.10.

불완전취업은 크게 가시적 불완전취업(visible underemployment)과 비가시적 불완전취업(invisible underemployment) 두 가지로 나뉜다⁴⁾. 여기서 가시적 불완전취업이란 조사대상기간 동안 노동시장적 이유에 의해서 정상근로시간(normal duration of work)보다 짧게 근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직장을 구했거나 추가취업이 가능했던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가시적 불완전취업을 판별하는 기준은 ① 정상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 조사대상기간동안 실제근로시간이 정상근로시간보다 짧고, ② 추가취업 희망여부: 총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의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을 더욱 늘리거나 전직 또는 추가직장을 갖기를 원하며, ③ 추가취업 가능성 : 조사대상기간 동안 새롭게 구한 추가직장이 구해질 경우 추가근로를 할 수 있는 자 등 3가지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는 근로시간이 실제근로시간 기준인지 통상근로시간 기준인지 불분명하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의 부재, 그리고 비자발적 성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비가시적 불완전취업은 부적절한 생산성 측면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의의 내면에는 비가시적 불완전취업을 계량화시킬 수 있는 측정변수의 선택이 매우 어려우며, 또한 측정시 응답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비가시적 불완전취업을 계량화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국제적으로도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불충분취업을 의미하는 가시적 불완전고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반영하는 비가시적 불완전고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ILO 국제노동전문가회의의 기초자료 작성을 위해서 ILO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불완전취업에 대한 각국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2-11>과 같다. 먼저 지적하고 넘어갈 점은 본 표에서 정의된 불완전취업에 대한 개념은 각국의 불완전취업의 지표를 추정하기 위한 일종의 방향을 제시

<표 2-11> 각국의 불완전취업에 대한 통계적 정의

	지리적 불완전취업의 정의 기준			기타
	취업시간	노동시장에 사유: 1a) 정상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 1b) 초과근로가 없음 1c) 시간제근로 1d) 정상시 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	추가취업 희망여부	
미국 (1980)	평상시 취업시간 < 35시간 평상시 취업시간 > 35시간 일 세 취업시간 < 35시간	1a) 일거리가 없어서, 재보부족, 기계 고장, 시간제근로로 인한 것임	전일제근로를 원하며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가능한 자	
일본 (1985)	일 세 취업시간 < 35시간 평상시 취업시간 < 35시간 일 세 취업시간 < 35시간 평상시 취업시간 > 35시간	1a) 더 많은 일을 원하나 장영직희와 35시간 이상 하는 일을 찾지 못함 1b) 시업부족, 재보부족, 기계수리	추가취업을 원하거나 현재의 직장 에서 근로시간을 늘리기를 원하는 자	- 기타 형태의 불완전취업 : 더 많은 수입이나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장을 찾기 위해 권리를 원하는 자
영국 (1980)	주원 직장이 시간제임 주원 직장에서의 실제 취업시간이 평상시 취업시간보다 적음	1c) 전일제근로를 찾을 수 없음 1d) 경제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한 일시 해고/조일 단속	현 직장보다 더 많은 일하기를 원 해서 추가취업 또는 권리를 원하는 자	- 기타 형태의 불완전취업 : 현 직장에서의 급여가 불만족스러워서 권리를 원하는 자
EU	· 전일제근로를 찾을 수 없거나 더 많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시간제근로를 제외한 취업자 ·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인한 일거리 부족으로 평상시보다 적게 일한 전일제근로자 · 새로운 일의 시작이나 전직, 혹은 일시 휴일로 평상시보다 적게 일한 전일제근로자			- 기타 형태의 불완전취업 : 부업을 찾기 위하여 또는 더 나은 직업조건을 희망하여 다른 직장을 찾고 있는 취업자

자료 : ILO, The Measurement of underemployment, October 1988, pp.20-22.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완전취업의 개념을 기초로 ILO에서 다시 정리한 개념임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각국의 불완전취업자⁵⁾에 대한 수량화를 위해서 먼저 조사대상기간동안 실제 취업시간이나 평상시 취업시간을 질문한 후 만약 일정시간 이하의 취업을 하였을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하여 비자발적 여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으로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추가취업 여부를 질문하여 추가취업을 희망한 자의 경우 불완전취업자로 계산하고 있다.

4. 연령범주

실업통계가 포괄하고 있는 연령범주는 국가별로 다르며, 그 나라의 교육이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게 조사대상 연령범주를 정하고 있다. 먼저 ILO의 기준에 따르면 연령범주를 특정연령(specified age)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나라별로는

한국·일본·프랑스·뉴질랜드·캐나다·핀란드·호주·오스트리아·이탈리아·싱가포르·대만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15세를 하한연령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14세, 미국·스웨덴·노르웨이·영국 등은 16세를 하한연령으로 하고 있다. 이 중 핀란드·노르웨이 등은 75세 이상, 스웨덴은 65세 이상 연령을 고용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6년까지는 조사대상 연령이 14세 이상이었으나, 이후 국민소득의 향상과 교육시설 확충으로 중학교 진학률이 99%를 상회하고, 1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가 극히 저조함에 따라 1987년 1월부터는 15세로 상향조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2-12> 조사대상 연령범주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하한연령	만 15세	만 16세	만 15세	만 16세
상한연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대만	싱가포르	핀란드	캐나다
하한연령	만 15세	만 15세	만 15세	만 15세
상한연령	없음	없음	만 75세	없음

자료 : OECD, *Quarterly Labour Force Statistics*, 1998.

5. 표본추출률

노동력조사도 전수조사가 가장 이상적이거나 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소요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대상가구는 30,000가구로서, 총 1,260만가구 중 표본추출률이 1/420에 달한다. 이 수치는 미국(1/1,930), 일본(1/940)보다도 높아 노동시장의 현실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표본수라고 할 수 있다.

<표 2-13> 표본추출률의 국제비교

(단위 : 개소, %)

	한국	미국	일본
전체가구수(A)	12,598,181 ¹⁾	96,436,000	37,600,000
표본가구수(B)	30,000	50,000	40,000
표본추출률(A/B)	1/420	1/1,930	1/940

주 : 1) 1996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7.

한국노동연구원, 「'98 해외노동통계」, 1999.

UN, '97 *Demographic Yearbook* 1997

주석 1) EuroStat 기준에 따르면 구직활동기간이 4주(Person had during last 4 weeks taken active steps to find a job)로 정의되어 있다.

주석 2) 우리나라는 1999년 5월까지의 구직활동기간이 1주인 실업률만을 공표하였으나,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비교를 위해 1999년 6월부터 구직활동기간이 4주인 경우의 실업률도 동시에 발표하고 있다.

주석 3)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기준에 의해 산정한 실업률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실업률 산정방법이 거의 비슷하며, 다른 점이 있다면 구직활동기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구직활동기간이 4주이며, 일본은 1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기준은 동일하며, 다만 구직활동기간만이 다르다는 가정하에서 분석하였다.

주석 4) ILO, Six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The Measurement of Underemployment*, 참조.

주석 5) 불완전취업자 중 가시적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개념만이 수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시적 불완전취업자의 질문항목에 국한하여 정리하였다.

第 3 章

主要國의 失業統計 作成現況

第 1 節 美國

1. 失業통계 작성방법

1940년 3월에 처음 실시된 미국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력의 특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노동력 통계조사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실업통계이다. 조사업무는 인구통계국(Bureau of the Census)에서, 분석 및 실업률의 발표는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 CPS의 목적 및 조사대상

CPS는 미국의 월별 실업률을 조사하는 자료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실업이외에도 취업, 비경제활동인구 등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자료에는 취업자의 산업, 직업, 취업시간, 소득, 실업자의 이직이유, 실업기간,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및 구직단념자의 특성 등 노동력과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CPS는 전국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754개 지역(PSU's)에서¹⁾ 추출된 50,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원은 매월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와 16세 이상 연령의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노동력 정보를 얻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와 접촉한다. 조사대상기간은 매월 12일을 포함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주일이며, 조사원은 그 다음 주에 조사를 실시한다.

나. CPS의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CPS의 표본은 1994년 이전까지는 1980년 인구센서스 정보를 모집단으로 이용하였으나 1994년 1월부터는 1990년 인구센서스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노동력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A-설계와 C-설계로 불리는 두 개의 독립적인 전국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A-설계는 군(County)²⁾ 또는 몇 개의 군으로 된 1차 추출단위(PSU)를 동일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묶어 층을 만든 후 각 층에서 하나의 PSU를 추출하고 표본 PSU에서 다음 단계의 표본추출 단위를 선택한다.

PSU 중에서 많은 인구를 가진 PSU는 자체 가중치(Self-weighting Region:SR)를 갖는 별도의 층으로 취급하여 반드시 표본 PSU로 한다. A-설계에는 156개 SR지역과 220개 비자체 가중치(Non Self-weighting Region:NSR) 지역을 포함한다. C-설계는 A-설계와 독립적으로 A-설계에서 만들어진 층을 이용하여 SR지역은 한 층마다 하나의 PSU를 추출하고 NSR 지역은 2개 층을 묶어서 한 층으로 간주하고 그 층에서 하나의 PSU를 선택하여 조사항목의 추정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X = (2/3) X_a + (1/3) X_c$$

여기서 X_a 는 A-설계의 추정값이고, X_c 는 C-설계의 추정값이다. 또한 A-설계와 C-설계가 독립적이므로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E(X_a X_c) = E(X_a) E(X_c)$$

$$\text{Var}(X) = (2/3)^2 \text{Var}(X_a) + (1/3)^2 \text{Var}(X_c)$$

PSU를 정의하는 기준은 인구와 지역의 크기가 되며 여러 가지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군을 분류한 후 이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묶어서 PSU를 구성한다. 그 결과 미국 전체의 3,141개 군(County)을 1,924개 PSU로 만든다. 같은 성격의 PSU들을 한 층(stratum)으로 합하며, 이 때 조사원들이 업무분담 관리를 위해서 가능한 한 크기가 동일하게 층화작업을 한다. 이상과 같은 작업에 의하여 A-설계와 C-설계에서 추출한 PSU는 모두 461개이며, 이들의 구성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표본 PSU 구성

표본 PSU	A-설계	C-설계
SR지역 PSU	156	156
NSR지역 PSU	220	110
A 혹은 C-설계	195	85
A와 C-설계	25	25
전 체	376	266

최종추출단위(Ultimate Sampling Unit : USU)는 4가구를 포함하도록 구성되며 USU의 추출과정은 PSU에서 센서스 구역(Enumeration Districts : ED) 내의 USU의 수를 확률추도로 하여 확률비례 계통추출법으로 표본 ED를 선정한다.

이러한 표본선정 과정을 통해 매월 약 59,000가구의 자료가 할당되고 이중 인터뷰에 적합한 50,000가구가 면접조사를 받는다. 만약 조사기간중에 표본으로 선택된 가구가 이사를 가면 현재의 주소로 이사온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CPS는 매월 표본을 교체하는데 최종 추출단위만을 교체한다. 이 때 교체방식은 표본으로 선정된 USU를 4개월간 연속조사를 진행하고 난 후 8개월 간 쉬고 나서 다시 4개월간 연속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표본목록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표본관리는 직장이동이나 실업기간 등 개인의 변화하는 상태와 과정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한편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조사원은 첫 번째 달과 8개월 쉬고 난 후 다시 조사가 시작되는 4개월 중 첫 번째 달은 직접 면접하고, 나머지 달은 전화면접을 실시한다. 만약 전화가 없거나 언어사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직접 면접조사한다. 따라서 전화면접률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4년부터 CPS는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CAPI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완료된 면접조사 결과는 본부 컴퓨터로 보내지며 이곳에서 응답의 일관성을 기해 자료를 편집하고 결측치(missing data)를 위해 대체기법(imputation)이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코드가 더해진다. 조사자료가 확률 선택에 의한 것이어서 주(州)별, 인종별, 연령별, 성별, 히스패닉 태생에 의한 인구추정량이 매월 인구통계국의 인구예측치와 같도록 하기 위해 가중치³⁾를 부여한다. 매월의 변화에 대한 추정치를 개선하기 위해 이전 달의 자료를 결합시키는 복합추정량 등이 사용되며, 노동력 추정치는 월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절적으로 조정된다.

다. CPS의 조사항목

CPS는 1994년 1월에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다. 개편은 주로 조사방식과 조사항목에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때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CAPI 면접방식이 도입되었다. 조사항목 개편의 주요 특징은 질문내용의 정확성 추구, 질문순서의 오류로 인한 '비해당'의 가능성 배제, 추가질문을 통한 기존 개념에 준한 자료 획득, 개념정의를 조사표에 기재하여 조사원의 이해를 높였다는 것 등이다. 개편된 조사항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실업통계 조사항목 사항

	내 용
취업자	- 일, 추가취업, 취업시간, 시간제 근무, 산업과 직업, 소득
실업자	- 구직활동, 일시해고, 이직이유, 실업기간
비경제활동인구	- 퇴직자와 장애인, 구직단념자

2. 실업통계 작성의 역사

미국 실업통계의 원조는 1937년 Enumerative Check Census(ECC)가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시행한 조사이다. 1930년대 후반에 Work Project Administration(WPA)⁴⁾의 연구단은 처음에 지방을 대상으로, 이후 전국 대상으로 실업통계조사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ECC의 연구와 경험은 WPA가 1940년 3월부터 시행한 매월 실업표본조사로 전수되었다. 따라서 CPS의 역사는 WPA가 1940년 3월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연구를 조사하고 월별실업보고서(monthly report of unemployment)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

인구통계국이 설립되면서 1942년 8월에는 실업표본조사기관이 인구통계국으로 이전되었고, 이와 동시에 조사명칭은 현재의 CPS로 개정되었다. 1943년 10월에는 표본이 대폭 개편되었다. 그 당시의 확률표본 이용은 전표본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고 새로운 표본이론과 원칙이 개발되고 구성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응용되었다. 1945년 7월에는 조사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하여 표준화된 질문으로 조사표를 개편하였다. 1945년까지는 약 25,000단위의 가구가 표본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면접한 가구 약 21,000가구가 포함되었다.

1954년에는 CPS 표본구성 of the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해 2월에 총예산과 표본가구수의 변화없이 PSU의 표본이 68개에서 230개로 확대되었다. 현장조직과 감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재구성된 표본은 단위비용당 정보를 더욱 많이 제공함으로써 통계치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추정치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지역추정치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1957년 1월에는 취업자의 통계적 정의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취업과 실업자료에 대한 정부관계 부처간의 폭넓은 검토 결과, '직업은 있지만 일하지 않는' 두 부류의 취업자로 나누었다. 즉 ① 일시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과 ② 면접시의 30일 이내 새로운 유급 직장의 출근에 대기하고 있는 자들은 실업자로 간주하였다. 단 조사주에 통학을 하고 새로운 직장 출근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된다. 정의 변화는 기본 질문과 계산과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1959년 7월에는 CPS의 분석과 월별 실업률에 대한 공표가 BLS로 이전되었다. 이와 동시에 표본이 60,000가구로 확대되었다.

1962년에 The President's Committee to Apprais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Statistics가 고용과 실업에 대한 측정방법 수정과 구직단념자에 관한 자료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1967년 1월 CPS가 크게 개편되었다.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주간부터 4주전까지의 기간에 구직활동, 구직방법, 구직능력에 관한 질문, 초과근무에 관한 질문, 취업시간이 주당 35~48시간에 해당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빠진 근로시간 질문, 실업기간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 자영업자에 대한 질문,

그리고 구직단념자에 관한 질문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PSU 표본의 357개에서 449개로 확대되어 조사군이 863개로 늘어나는 등 미국 내 거의 모든 주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통계에 대한 신뢰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1971년 1월과 1972년 1월에는 1970년 센서스 직업분류가 CPS에 도입되었다. 직업에 대한 질문시 직장에서의 주요 활동이나 임무에 대한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1970년 센서스에 사용된 직업에 관한 질문과의 비교가 용이하게 만들어졌다. 새로운 분류는 1971년 1월 CPS 코딩처리과정에 도입되어 1972년 1월부터 개정된 것으로 표가 만들어졌다. 1978년 10월에 소득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소득항목은 평상 근로시간당 임금률, 시간당 임금률, 평상 주당소득을 포함했다. 이러한 소득항목은 임금근로자인 사람에게만 질문한다.

1980년대 초 인구통계국과 BLS에서 방법개발조사(methods development survey)가 검토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예산부족과 표본선정의 어려움으로 CPS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86년에 들어가서야 비로서 CPS 개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CPS는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2가지 종류의 질문지가 만들어졌으며, 이들은 1990년 7월부터 1991년 1월 사이에 72,000명을 대상으로 배포·조사되어 하나의 질문지로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이 질문지는 1991년 7월부터 1991년 10월 사이에 32,000명에게 배포되었다. 이처럼 두차례에 걸친 연구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질문지는 개정되었다. 이 질문지는 1992년 7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독립적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시험되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1994년 1월에 CPS의 질문지가 정식으로 개편되었다.

질문지의 재구성에 있어 중시한 것은 ① 보다 정확한 공식적인 노동력 개념의 측정, ② CPS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양 확대, ③ 개념과 정의에서의 변화의 반영, ④ 새로운 질문지와 함께 컴퓨터지원조사(CAPI) 환경의 잠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 등 4가지이다.

특히 '복수직장(multiple job holding)'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위해 관련자료는 연간보다는 월간으로 횟수를 늘려 수집하게 되었다. '평상 근로시간(usual hours worked)'에 대한 통계치의 개선을 위해서 표본 전체에 대해서 관련자료가 더욱 심도있게 수집되었다. 또한 질문지 표현(wording)은 구직 단념자, 실업, 신규진입자, 재진입자, 그리고 전시간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여러 가지 수정된 노동력 개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었다.

길고 더 복잡해진 질문지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CAPI의 도입으로 해소하였다. 이 때부터 현장조사원들은 새로운 질문지를 인식하고 작용하도록 장치가 완비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 컴퓨터 이용은 면접시 조사와 편집을 통해 발생하는 조사원의 실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일관성을 높이고 일정 달의 보고된 정보, 예를 들어 산업, 직업, 퇴직·능력상실 상태, 실업기간 등이 다음 달에 확증되고 업데이트될 수 있는 의존면접(dependent interviewing)을 가능하게 한다.

표본의 대규모 개정은 10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논의한 CPS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요약한 것이 <표 3-3>이다.

<표 3-3> 미국 CPS의 변천

변천 내용	
1940년대	1945년 7월 CPS 질문지 개정
	1947년 8월 표본선정방법 개정
	1949년 6월 특별거주장소 도입
1950년대	1952년 2월 document sensing 도입
	1953년 1월 비율추정치를 위한 1950년 센서스 자료 이동
	1953년 9월 표(tabulation)의 고속전기장치로 전환
	1954년 2월 지역표본 230으로 확대
	1955년 5월 파트타임 근로자에 관한 월 질문지 추가
	1955년 7월 조사주 변화: 매달 8일에서 매달 12일 속한 주로 변화
	1956년 5월 지역표본 330으로 확대
	1957년 1월 취업상태 정의 변화
	1957년 6월 계절조정 도입

1960년대	1960년 1월 알래스카와 하와이 추가 1961년 10월 FOSDIC 체계로 전환 1961년 12월 비률추정에 사용된 입력치의 업데이트 시작 1963년 1월 기술적(記述的)인 정보 증가 1967년 1월 449-PSU 표본 확대 1967년 1월 취업과 실업에 대한 개념 변화 1968년 3월 연령/성 비률추정량 셀을 더 많이 도입
1970년대	1971년 1월~1972년 1월 1970년 센서스 직업분류 도입 1971년 12월~1973년 3월 표본의 확대와 입력자료의 업데이트 1974년 2월 인구의 독립 추정치 유도를 위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방법 이용 1975년 9월 주정부 보충 표본 도입 1978년 '통제카드(control card)' 처리과정 개정 1979년 1월 방법론 도입, 항목 추가 1979년 9월/10월 더욱 많은 변화 권고
1980년대	1980년 2월 공식 추정치에 'B'표본 사용 개시 1980년 2월 공식 추정치에 'D'표본 사용 개시 1981년 2월/3월 'E' 표본부분을 공식 추정치에 도입 1981년 5월 표본 축소 1982년 11월 소득추정치 확장 1983년 1월 군대인력(Armed Forces personnel) 산입 1984년 4월 10년 주기 표본 기반 이전 1984년 9월 항목 추가 1985년 1월 추정과정의 주요 변화 1985년 6월 CATI 시설 개장 1987년 4월 CATI 사례를 CPS 월 추정치에 도입
1990년대	1994년 1월 새 질문지와 CAPI의 도입

주석 1) PSU's란 primary sampling units의 약자로서 CPS 조사를 위해 미국 전역에서 1차적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주석 2) 군(County)은 주(state) 밑의 행정구역 단위이다.

주석 3) CPS의 모든 조사결과에 대해 가중치(weight)를 부여한다. 이 때 가중치 부여절차에는 최종 가중치(final weight)와 부가 가중치(additional weight)를 부여하며, 최종가중치에는 ① 기본 가중치(basic weight), ② 특별 가중치 조정, ③ 비면접 조정, ④ 1단계 조정요인, ⑤ 2단계 조정요인 등이 있다. 그리고 부가 가중치에는 근로자의 임금에 상응하는 전체 소득에 대한 것이며, 이 때 소득가중치는 연령, 인종, 성별, 그리고 근로자의 계층에 따른 노동력 상태를 이용하는 표본비율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다.

주석 4) 1939년 이전에는 Work Progress Administration으로 알려졌다.

주석 5) 1940년은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의 해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두 조사의 비교분석 결과는 전수조사에 비해 표본조사의 추정이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第2節 日本

1. 실업통계 작성방법

일본의 실업관련 통계에는 총무청 통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력조사』, 『노동력조사특별조사』와 『취업구조기본조사』와 노동성의 『매월근로통계조사』, 『직업안정통계』 등이 있다. 『노동력조사』와 『매월근로통계조사』, 『직업안정통계』는 매월 실시되고 있고, 『노동력조사특별조사』는 매년, 『취업구조기본조사』는 5년마다 조사되고 있다. 통계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조사들은 가구를 통한 조사이며 노동성의 『매월근로통계조사』는 사업체를 통해, 『직업안정통계』는 직업안정업무 통계에 의한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여러 가지 조사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가 용이한 『노동력조사』 및 『노동력조사특별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노동력조사의 목적 및 조사대상

노동력조사는 취업 및 실업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다. 조사범위는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 거주하는 전인구이다. 다만 외국의 외교단체·영사단체(직원 및 그의 가족을 포함), 외국 군대의 군인·군속(軍屬) 및 가족들은 제외된다.

조사방식은 노동력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조사의 약 80만 조사구 중에서 약 2,900조사구를 선정한다. 이 중에서 약 40,000가구 및 그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이 조사대상이 되지만 가구원 중 1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기간은 매월 말일(단, 12월은 26일) 현재를 기준으로 매월 말일이 끝나는 1주간(단, 12월은 20일부터 26일까지가 1주간임)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하며, 조사표와 배포와 수집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고 작성은 자계식 기입방식을 따르고 있다.

나. 노동력조사의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조사원은 담당하는 조사구 내에 있는 전체 주소의 명부를 작성한다. 지도원은 이 명부에서 총무부 통계국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진 수의 주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주소에 대해서 2개월 연속으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한다.

조사원은 조사기간이 시작되는 3일 이내에 선정된 주소를 방문하여 그 주소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노동력조사조사표(1개월용 또는 2개월용)를 배포하고 기입을 의뢰함과 동시에 기입지도도를 한다. 조사원은 조사기간이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다시 방문해 기입내용을 검사하고 조사표를 수집한다. 수집된 조사표는 조사원으로부터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제출되어 지도원이 기입내용을 검사한 후 총무국 통계센터에 제출된다.

조사는 일본 전역을 10개 지역¹⁾으로 구분하여 지리적으로 경계를 정하고 각 경제별로 층화 2단계 추출법을 적용한 표본조사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²⁾로 하고, 주소³⁾를 2차 추출단위로 한다.

제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에서는 층화의 주요 기준으로서 취업상태, 산업과 종사상의 지위를 고려하였으며, 국세조사 조사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다만 형무소·구치소에 있는 구역, 자위대 구역, 주둔군지구 및 수면조사구에 대해서는 추출을 행하지 않고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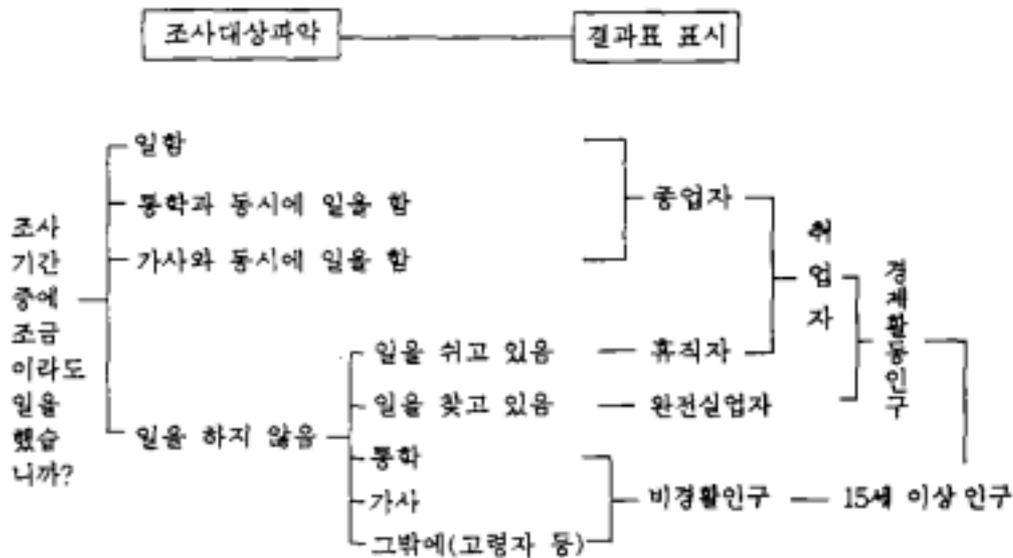
조사구의 추출은 전체적으로 74만개 중에서 2,880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추출하는데 실제 추출은 각 지역블록 내에서는 층마다 또한 층 내에서는 8조의 부표본마다 독립적으로 선정하였다. 각층 내의 조사구의 배열은 '도도부현(都道府縣) → 시구정촌(市區町村) → 조사구 번호의 주번호 → 조사구 번호의 분할번호 → 조사구 번호의 단위구 번호'의 순으로 나열하였다. 각층에서 추출간격을 정하여 가중된(weighted) 계통추출법으로 1차 추출단위(조사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표본조사구에 대해서 조사원이 조사구 내를 순회하여 조사구 내에 소재한 주소를 파악하여 frame list를 작성한다. 각 표본조사구에서 추출간격을 정하고 추출간격보다 작은 수를 추출시작번호로 무작위로 정한 후에 추출시작번호에 추출간격을 순차적으로 더해가면서 표본주소를 결정한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표본주소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를 조사한다.

다. 노동력조사의 조사항목 현황

노동력조사의 조사항목은 크게 기본 속성,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14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다.

개인의 기본 속성에 해당하는 항목에서는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그리고 혼인여부를 묻고 있다. 취업상태에 관해서는 조사대상기간에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과 일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전자는 종업자라 칭하고, 일을 하지 않은 사유별로 휴직자, 완전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취업상태를 구분하고 있다.

[그림 3-1] 취업상태 구분



취업자에 대해서는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사업체의 규모, 취업시간, 전직·전업의 희망의사 및 구직활동 여부를 묻고 있다.

<표 3-4> 실업통계 조사항목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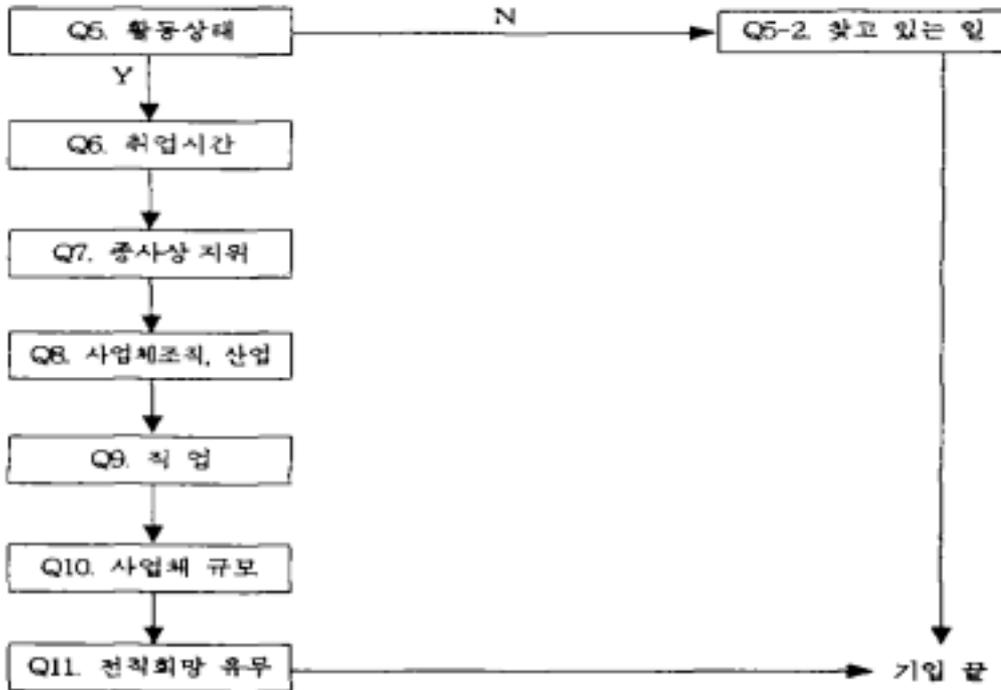
	항목수	내 용
인적사항	4	- 가구원 성명·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출생연월, 배우 관계
확인항목	1	- 1주간의 활동상태
취업자	7	- 취업시간, 종사상의 지위, 사업체 조직, 산업, 직업, 사업체 규모, 전직희망 유무
실업자사항	2	- 실업의 형태, 구직이유 ¹⁾

주 : 1) 구직이유는 2개월째 질문지에만 포함된 항목임.

조사항목을 조사흐름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활동상태(Q5)에서 취업자와 일시휴직자와 완전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다. 그리고 완전실업자의 경우 찾고 있는 일(Q5-2)에 대해 질문한다. 2개월째 조사에서는 구직활동 이유(Q5-3)에 대한 항목도 있다. 취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주간 1주간의 취업시간(Q6)을 묻고 이어 종사상의 지위(Q7), 사업체 조직과 산업(Q8), 직업(Q9), 사업체 규모(Q10)를 차례대로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전직희망 유무(Q11)를 묻고 조사는

종결된다.

[그림 3-2] 조사흐름도



라. 실업통계 작성의 역사

일본의 노동력조사는 전후 혼란했던 경제·사회적 상황에서 국민의 취업, 실업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1946년 9월에 총사령부에서 만든 『노동력 조사월보 제출에 관한 지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의 노동력조사를 참고로 하여 조사의 기획·설계가 행해져서 1947년 7월에는 조사사항 등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되고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일본경제의 큰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력조사는 취업 및 실업 등의 실태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상태로 인하여 완전실업률의 추이가 특히 부각되는 등 노동력조사의 중요도는 한층 커지고 있다. 194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노동력조사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조사사항과 통계적 개념 등에서 개편이 이루어졌다. 1967년 9월에는 조사표 작성방식이 타계식에서 자계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공표수치(및 당시 소급 계산된 1953~67년의 개산치(改算値)는 이전의 공표수치와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었다. 표본설계도 몇 차례 변경되어 최초의 조사에는 표본수가 약 15,000가구였으나, 1961년에는 약 25,000가구로 확대된 것과 함께 조사구를 25%씩 교체하는 현행의 방식이 도입되었다. 1972년에는 오키나와의 복귀를 고려한 표본이 추가되어 1983년에 표본수가 현행의 약 40,000가구로 확대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논의한 일본 노동력조사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요약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 일본 노동력조사의 변천

	변 천 내 용
1947	- 조사기간 : 매월 처음의 10일간 → 매월 첫째 일요일에 시작되는 1주간 - 취업의 산정단위 : 일수 → 시간 - 성,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배우관계 등 - 일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시간, 단시간 취업일(4시간 미만)과 그 이유, 산업 및 종사상의 지위, 실업의 이유, 실업자의 희망취업시간 등 - 사업주에 대한 특별 질문을 폐지 - 미리 취업시간기입표를 가구에 배포
1949	- 5월 조사사항에 추가취업 희망의 유무, 추가취업 희망시간 등을 덧붙여 조사표 양식을 전면적으로 변경
1950	- 4월 지정 통계 제30호에 지정 - 8월 조사주년을 월말 1주간으로 변경
1951	- 10월 조사사항에 직업을 추가, 조사표 양식을 단기식에서 연기식 표기 방식으로 변경
1959	- 1월 조사사항의 추가취업 희망시간을 폐지, 희망하는 일의 본업·부업 구별, 경영조직, 기업의 종업원수, 취업상황 및 전직희망의 유무를 추가
1961	- 10월 조사사항의 취업상황을 폐지, 가구의 종류를 추가, 취업시간 기입표를 가구조사표로 변경
1967	- 9월 면접타계식 방식을 자계식 방식으로 변경, 가구표의 폐지
1983	- 10월 조사사항에 구직이유를 추가(2개월째 조사표만)
1992	- 1월 조사사항의 경지면적을 폐지, 마크시트(mark sheet) 조사표로 변경

취업상태의 정의는 1947년 7월 이후 4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1947년 6월 이전의 정의는 현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1947년 7월 이후에 변경된 휴직자 및 실업자 정의의 변천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표 3-6> 휴직자 및 실업자 정의의 변천

	휴 직 자	실 업 자
1947년 7월 ~1949년 4월 ¹⁾	평상시에 일을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악천후, 노동쟁의, 가정적 또는 개인적 사정, 유급휴가 등으로 취업하지 않은 자	조사대상기간 중 일하는 것을 회피하면서도 적당한 일이 없기 때문이거나 계절적 한산 때문에 또는 재료, 임금, 일할 능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 전혀 종사할 수 없었던 자
1949년 5월 ~1951년 9월 ²⁾	평상시에 일을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쉬고 있는 것이며,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의 사람만 해당하고, 종업원은 휴업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도 급여 또는 임금의 지불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에 있는 자	조사대상기간 중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자(일시휴직자 제외)로서 취업을 회피하고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1951년 10월 ~1967년 9월	평상시에는 수입이 있는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일을 쉬고 있는 사람 중에 ① 자영업주인 경우는 스스로 쉬고 있다 해도 종업원 또는 가족종사자로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종업원의 경우는 조사대상기간 중 급여·임금의 지불을 받았던지 반기로 되어 있는 자(가족종사자를 휴업자로부터 제외)	

주 : 1) 1948년 1월부터는 25시간 이상의 취업희망자만이 실업자이고, 25시간 미만의 취업희망자는 비경제활동인구임.
2) 1950년 1월부터 실업자로 호칭하던 것을 완전실업자로 변경.

1946년 9월에 시작된 일본의 노동력조사는 미국의 노동력조사를 기초로 하여 통계학의 한 분야인 표본이론에 기초를 두어 설계된 대표적인 표본 조사이다. 이와 같이 시작된 노동력조사는 그 후의 50년 동안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6년 9월 조사개시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모집단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市·都를 제1차 추출단위로, 區·町·村을 제2차 추출단위로, 그리고 隣組를 제3차 추출단위로 하는 층화 3단추출법에 의해 15,0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전인구를 기초로 하는 비추정법을 이용해 산출했다. 이후 1948년 10월부터는 2차추출 단위를 1948년 상주인구 조사구로 제3차 추출단위를 가구로 변경하고 약 1,000조사구 약16,000가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952년 11월부터는 제1차 추출단위를 직접 국세조사 조사구(國稅調査 調査區)로 하고, 제2차 추출단위를 가구로 하는 층화 2단추출법을 도입하여 표본교대방법을 변경하였다. 이 방식으로 매월 1/3의 조사구를 갱신하고 동일조사구는 3개월간 계속해 조사하는 것으로 새롭게 바뀌었다. 또한 1954년 12월부터는 제2차 추출단위를 그 때까지의 사용했던 가구(世帯)로부터 보다 파악하기 쉬운 주소로 바꾸었다. 이후 표본추출방법은 제1차 추출단위가 직접 국세조사 조사구로, 제2차 추출단위가 주소라고 하는 오늘과 같은 층화 2단계 추출법으로 되었다.

1961년 10월부터는 표본수를 약 25,000가구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표본의 교대방법을 매월 조사구의 1/4을 교대하고 한 번 추출된 조사구는 다음해의 동월에도 다시 조사하는 현행의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한 비추정의 방법도 성별, 연령계급별, 지역별의 15세 이상 추계인구를 bench mark로 하는 현행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더욱이 1962년 7월부터는 국세조사시 이후의 모집단의 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신설 집단주택 지역에 의한 단위구를 추가 추출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후 1972년에는 오키나와의 복귀에 따라 표본이 추가되고, 1982년 10월부터는 지역별의 추정값이 4분기마다 얻어지도록 표본수를 현행의 2,900조사구, 40,000가구로 확대하였다.

2. 노동력조사특별조사

가. 노동력조사특별조사의 목적 및 조사대상

노동력조사특별조사는 1953년 10월부터 노동력조사를 보완하고 취업 및 실업상태 상세하게 조사하여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노동력조사특별조사는 초기에는 연 2회에 걸쳐 조사하였으나 1984년 이후부터는 매년 2월 기준으로 한차례만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장기불황조짐을 보이게 되자 1999년도 들어서는 2월 말과 8월 말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노동력조사』와 마찬가지로 전국가구에서 층화추출법으로 무작위 추출한 약 40,00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15세 이상 인구 10만명이 조사를 받게 된다. 단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해도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영사기관의 구성원(수행원 및 가족을 포함), 외국 군대의 군인 및 그 가족, 자위대의 영사 내 또는 선박 내의 거주자, 형이 확정된 사람 및 소년원 등에 있는 자는 『노동력조사』처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표를 배포하고 15세 이상의 각가구원이 조사표에 직접 기입하는 자계식 방식이다.

나. 노동력조사특별조사의 조사항목 현황

매월의 노동력조사를 보충하여 취업 및 실업실태를 자세하게 조사하고 고용문제와 실업문제의 개선에 유용하게 쓰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력조사특별조사는 노동력조사에 비해 조사항목이 크게 확충되며 자세한 내용은 <표 3-7>과 같다.

<표 3-7> 노동력조사특별조사 조사항목(1999년 2월 기준)

	내 용
전제사항	- 성별, 출생연도, 배우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연간 수입*
확인항목	- 1주간의 활동상태
가구에 대한 사항	- 성별 15세 이상의 가구원수, 연령별 15세 미만의 가구원수*
취업자	- 사업체 조직,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산업, 직업, 사업체 규모, 취업시간, 단시간 근로이유*, 전직 또는 추가취업 희망여부, 전직희망의 이유*, 구직활동의 유무*, 현 직장의 취업시기, 현 직장의 구직방법*, 전직의 유무*, 전직의 결정시기*
실업자	- 구직활동방법*, 구직활동기간*, 최근의 구직활동시기*, 찾고 있는 일의 형태, 구직이유, 취직실패 이유*, 전직의 유무*
비경활인구	- 취업희망 유무*, 비구직 이유*, 희망고용형태*, 최근의 구직활동 유무*, 취업가능성*, 전직유무*
전직사항	- 전 직장의 이직시기*, 전 직장의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전 직장의 산업*, 일의 종류*, 전 직장의 사업체 규모*, 전 직장의 이직이유*

주 : * 표시는 노동력조사에는 없는 조사항목임.

주석 1) 北海道, 東北, 南關東, 北關東·甲信, 北陸, 東海, 近畿, 中國, 四國, 九州.

주석 2) 국세조사구 및 국세조사 이후 신설된 집단주택지역 중에 설정되어진 지역.

주석 3) 주택이나 그 지역의 건물로 하나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 또는 건물의 한 구획.

주석 4) 형무소·구치소에 있는 구역 및 자위대 구역에 대해서는 각각 법무성, 방위청으로부터 시설 내 거주자수의 자료를 얻어 집계에 더하고 있다.

第3節 캐나다

1. 실업통계 작성방법

캐나다의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 LFS)는 캐나다 통계국(Statistics Canada)이 매월마다 수행하는 가구조사이다. 1945년 처음 실시한 이후 LFS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세분류로 나누어 세 범주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해 왔다.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산업별 노동이동, 근로시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과 같은 노동시장의 주요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 노동력조사의 목적 및 조사대상

노동력조사는 자영업, 시간제 취업, 실업을 포함하여 전체 취업에 대한 월별 추정치의 유일한 원천이다. 노동력조사는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지표를 매월마다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노동력조사는 연령,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그리고 가족 특징을 포함하여 생산가능 인구의 특징에 관한 정보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LFS는 53,000개의 표본에 대해 매월 15일을 포함하는 주에 15세 이상 인구¹⁾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구조사로서 유콘(Yukon)²⁾과 서북부 지역의 거주자들, 인디안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직업군인 그리고 교도소 수감자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 이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이다.

나. 노동력조사의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캐나다 사람들은 주와 주 내 소지역과 같은 다양한 지리적 영역에서 살고있다. 따라서 조사비용을 최소화하고 추정치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표본설정을 할 때 이 지역에 인구는 더 많은 계층(stratum)으로 분할된다. 분할된 계층 내 가구는 직접적으로 선정되지는 않는다. 각각의 계층 대신 군집(cluster)으로 나눈 후 군집표본이 계층으로 나뉜다. 다음으로 선정된 각각의 계층으로 가구 표본이 선택된다.

지역별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수는 조사비용과 질문지구성의 개편에 따라 다양하다. 1995년 7월 이후 표본가구수는 53,000가구였다. 표본은 다양한 지리적 수준에서 신뢰할 만한 추정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와 주 내 계층으로 할당된다. 이것은 전국단위(national), 주단위(province), 대도시단위 (census metropolitan areas(large city)³⁾, 경제지역(economic regions)⁴⁾, 고용보험지역(employment insurance regions)⁵⁾을 포함한다. 다음의 가이드라인은 표본할당에 사용되었다.

- ① 캐나다와 주 : 실업추정치 CV(Coefficient of Variation)는 캐나다의 경우 2%, 주의 경우 4~7%보다 커서는 안된다.
- ② Census Metropolitan Areas(CMAs)/고용보험지역 : CV가 15% 이하이거나 3개월 평균실업 추정치에서보다 작아야 한다.
- ③ Economic Regions(ERs) : CV가 25% 이하이거나 3개월 평균실업 추정치에서보다 작아야 한다.
- ④ Census Metropolitan Areas(CMAs)/고용보험지역 : CV가 15% 이하이거나 3개월 평균실업 추정치에서보다 작아야 한다.
- ⑤ Economic Regions(ERs) : CV가 25% 이하이거나 3개월 평균실업 추정치에서보다 작아야 한다.

<표 3-8> 주(州)별 표본수 현황(1998년 3월 기준)

(단위 : 개소)

주	표본수
Newfoundland	1,986
Prince Edward Island	1,424
Nova Scotia	3,561
New Brunswick	3,061
Quebec	10,371
Ontario	15,523
Manitoba	3,909
Saskatchewan	4,073
Alberta	3,995
British Columbia	4,975
전체	52,878

LFS는 가구가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표본으로 사용하고 순환시키는 패널 표본구성을 따른다. 전체 표본은 여섯 개의 하위표본 혹은 패널로 구성되고, 6개월 동안 조사를 완료한 패널은 매달 새로운 패널로 교체되는데 6개월 동안 조사를 마쳐 제외된 가구는 동일지역 혹은 유사지역 내의 가구로 대체된다. 이것은 월과 월 사이의 변화를 추정하는데 효율적이다. 또한 6개월 후의 순환은 조사에 선정된 가구에게 계속적으로 표본가구로 남은 과도한 부담을 덜어준다.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조사가구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LFS는 조사가구에 살고 있는 1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조사한다. 응답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첫 달에만 질문하고 그 질문내용을 다음 5개월 조사에 그대로 적용한다. LFS 자료수집은 매월 실시한 그 다음 주에 한다. 조사주는 보통 그 달의 15일이 포함된 주이다.

조사원은 LFS와 다른 가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고용된

시간제근로자(part-timer)이다. 매월마다 필요로 하는 노동력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조사원들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와 접촉한다. 조사원들 각자는 매월 약 75개의 가구를 방문한다. 표본으로 새롭게 선정된 주소는 보통 직접방문을 통해 접촉된다. 조사원은 처음에는 가구구성원들 각자에 대한 사회·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입수한 후 군인이 아닌 15세 이상 가족구성원들에 대해 노동력 정보를 입수한다. 만약 그 가구에 전화가 있고 전화사용이 가능하다면 이후부터는 전화에 의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데, 전체 가구의 약 85%가 전화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첫째달 이후의 조사에서는 조사원들이 최초 조사한 달에 수집된 사회·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조사하는 당월에 일어난 노동력 정보를 수집한다.

각각의 가구 중 가족구성원들에 관한 정보는 보통 가족구성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서 입수된다. 수집된 정보의 약 65%를 차지하는 이러한 '대리(proxy)' 보고는 반복 방문이나 응답자 각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데 필수적인 고비용과 조사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가 표본에 남아있는 6개월 동안 만약 조사가구가 이사를 해서 새로운 가구로 대체된다면 6개월 기간에 새로운 가구에 관한 정보가 입수된다.

1994년 이후 조사할 때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CAPI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응답은 조사원에 의해 직접 기록된다. 컴퓨터에 입력된 질문지는 자료 입력, 필사본 오류(transcription errors), 자료 전송에 관련한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준다. 응답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코드화되어 해당지역의 통계사무소에 모뎀을 통하여 전송된다. 여기에서 자료는 더욱 폭넓은 처리를 위해 Ottawa로 전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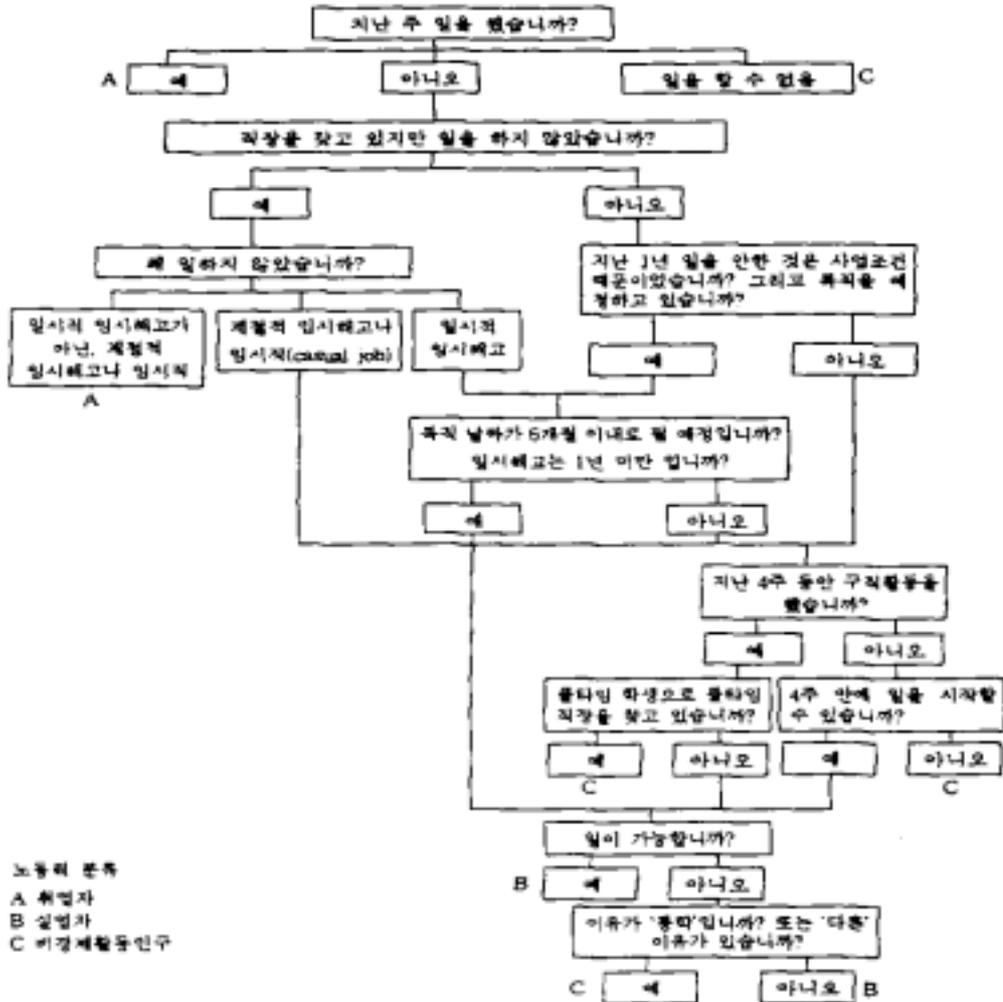
다. 노동력조사의 조사항목 현황

취업자에 대해서 취업구조, 산업, 직업, 직장재직기간(job tenure), 그리고 평상 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별로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 조사는 비자발적 시간제 취업, 복수직장 보유, 그리고 일시휴직자와 같은 항목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도록 질문을 결합시키고 있다. 1997년

1월 이후에는 사업체규모와 이들의 임시적 혹은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임금과 종업원의 노조가입 상태에 대한 정보도 매월 제공하고 있다.

실업자에게는 실업구조, 실업기간, 그리고 구직전의 활동상태에 대해 질문이 이루어진다. 또한 전직실업자에 대하여는 산업, 직업, 최종 직장을 떠난 이유에 관한 정보를 질문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조사는 전국추정치와 각 주별 추정치 제공, 경제권역과 CMA뿐만 아니라 하위 주지역의 노동력 상태에 관한 추정치로도 발표된다.

[그림3-3] 캐나다의 경제활동상태 조사흐름도



<표3-9> 캐나다의 실업통계 조사항목 사항

	내 용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정도, 군인여부
확인사항	-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구직여부, 6개월 이내에 복직가능 여부
취업자	- 취업시간, 유급초과 근무시간, 무급초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 일한 이유, 소득, 노조가입 여부, 영구직 여부
실업자	- 취업가능성 여부, 구직경로, 구직기간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의사 유무, 취업가능성 여부, 비구직 이유, 지난 4주간 구직여부, 구직할 의사
권직사항	- 권직유무, 이직이유,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2. 실업통계 작성의 역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 노동력 조사는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어 왔다. 전시상황으로부터 평화시 경제로의 이행기에 발생한 대규모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정보가 급박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는 국가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수준에서 산업별·직업별 취업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분기별 조사였던 노동력조사(LFS)는 1952년부터 매월단위의 조사로 변경되었다. 1960년에 LFS가 캐나다 실업의 기초자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통계범위의 확대, 특히 좀 더 상세한 지역자료의 요구로 이어졌다. 조사가 만들어낸 정보는 조사내용의 재구성이 있던 1976년과 1997년 개정에 걸쳐 상당히 확대되었고 캐나다 노동시장에 대해 풍부하고 상세한 관측을 제공하고 있다.

1994년에는 CAI를 도입하여 조사원들에게 조사과정에 컴퓨터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료처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었다.

1997년 1월에는 임금, 사업체규모, 노조가입 여부, 정규직(permanent job)과 임시직장(temporary job), 일을 하지 않은 이유로 개인적 혹은 가족적 책임에 대한 질문을 상세화하는 등 LFS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다음은 1997년을 전후하여 조사의 변화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3-10> 캐나다 노동력조사의 주요 변경내용

	1997년 이전	1997년 이후
구직단념자 (discouraged worker)	지난 6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한 자로서 지난 4주간 일할 수 있었지만 적당한 일이 없다고 믿고 일을 찾지 않은 자	조사대상기간 동안 일이나 사업을 원한다고 말한 자로서, 일할 수 있었지만 적당한 일이 없다고 믿고 일을 찾지 않은 자
평상시 근로시간 (usual hours worked)	유급으로 고용되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응답자가 평상시 일한 시간	초과 근무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정규 유급근로시간이나 계약근로시간
실직자 (job loser)	일시적인 해고와 영구적인 해고로 분류됨	(영구적인 해고의 이유를 상세히 밝힘) 계절적 일의 완료, 임시직(temporary job), 계약직의 완료, 일이 없음, 회사 이전, 회사에 사업이 없음, 복직의 예고 없이 사업조건으로 인한 일시해고, 고용주의 면직, 기타
시간제근로이유 (working part time)	일하고 있는 모든 직장 혹은 사업에서 주당 평상시 총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 일한 이유	주된 직장이나 부업에서 주당 평상시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 일한 자로서, 30시간 미만으로 일한 이유와 그 이상 일할 의사에 대해 질문함

1999년에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취업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 1999년 이전에는 '소유권(ownership)'규칙이 공공의료기관과 대학을 공공부문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었으나, 1999년 1월 이후부터는 '자금(funding)' 규칙이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이나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들은 공공부문으로 분류된다.

주석 1) 1966년 이전까지는 16세 이상을 생산가능인구로 구분하였다.

주석 2) 1992년 이후, 지역간 거리에서 기인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유콘에서의 조사가 관리되어 왔다. 소표본으로 인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정치는 세 달치 평균을 기준으로 입수되었다. 이 추정치는 전국 추정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석 3) Census Metropolitan Areas(CMAs)는 거주주민이 최소 100,000명인 도시화된 중심부(혹은 계속적인 인가 밀집지역)의 노동시장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시화된 중심부를 형성하는 도시지역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주석 4) 경제지역(Economic Regions : ERs)은 주정부와 협의로 10년 주기의 표본 재구성 때 만들어졌다.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목적과 통계상의 목적을 위하여 주정부가 사용한 지역이다. Statistics Canada의 하위지방 자료의 보급 이용을 위해 LFS ERs는 주정부와 협의에서 Standard Division이 한정시킨 official subprovincial Regions(SPRs)와 동일공간을 차지한다.

주석 5)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력조사는 고용보험지역에 대해 평균실업률을 3개월 이동치를 계절조정을 거쳐 발표한다. 실업률은 특정 고용보험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험급여의 적정성 수준과 기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지역의 경계는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HRDC)에 의해 결정된다.

第 4節 英國

1. 실업통계 작성방법

영국의 실업관련 통계는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 : LFS), 고용주조사(employer survey), 인구조사, 실업자 등록 등이 있다. LFS는 취업자수와 실업자수에 관해 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주조사¹⁾는 취업자수와 노동인력의 직장, 산업 등에 관해 정보를 제공한다.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다. 영국의 직업안정소(Employment Service)에서 제공하는 실업자 등록(claimant count)²⁾은 매월 특정일에 실업과 관련된 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의 수를 기록한 것이다. 실업자 등록(claimant count)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사는 모두 영국의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서 주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가 용이하며, 영국에서 노동시장에 대해 가장 폭넓게 조사하고 있는 LFS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가. LFS의 목적 및 조사대상

LFS는 취업자, 실업자수 측정뿐만 아니라 취업자의구조(풀타임/파트타임 상태, 일시적 혹은 영구적 일, 근로시간)에 관한 정보와 직업, 산업에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LFS는 인적사항, 노조가입 여부, 건강과 무능력과 같은 기타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수집한다. 영국 LFS는 3개월 단위로 전국 약61,000가구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인 120,000여명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질문지의 모든 상세 사항들은 근로상태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기초로 작성된다. 예를 들어 LFS에서 풀타임과 파트타임 취업자수는 응답자 스스로가 내린 분류에 의존한다.

나. LFS의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LFS는 매달 3개월 기간에 대해 전국에서 선정된 약 61,000가구에 사는 120,000여명에 대해서 조사한다. 각각의 가구는 3개월마다 한번씩 5번 조사된다. 최초의 조사방식은 대개 조사원의 가구 방문에 의한 면접식 조사이다. 이후부터는 전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응답자의 인적사항과 노동시장 활동에 관해 일련의 질문을 한다. 첫 번째 조사와 다섯 번째 조사에서는 소득에 관해서도 질문한다. 조사는 한 해에 걸쳐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주요한 결과는 3개월치에 대해 매달 발표된다.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분기별 혹은 연간으로 한두번 발표한다. 노동력조사(LFS)는 개별 가구에 대한 조사로 공동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학교 기숙사, 근로자 기숙사, 숙박업소와 같은 공동시설에 살고 있는 자들은 제외된다. 때문에 인구의 약 1%가 제외된다.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집에 있는 부모를 통해 조사에 포함된다. 국가의료제도 수용시설(National Health Service accommodation)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포함된다.

매달 발표되는 세 달 평균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즉 계절조정 자료에 대한 비교는 이전 분기와 겹치지 않게 해야 하고, 계절 조정되지 않는 자료에 대한 비교는 1년전 동일기간으로 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분기별 결과가 1년에 12번 발표될 때 시간경과에 따른 수치를 비교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4] 분기별 비교

1998												199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계절조정치는 같은 색상끼리 비교해야 하며, 계절조정이 안된 자료는 전년동기와 비교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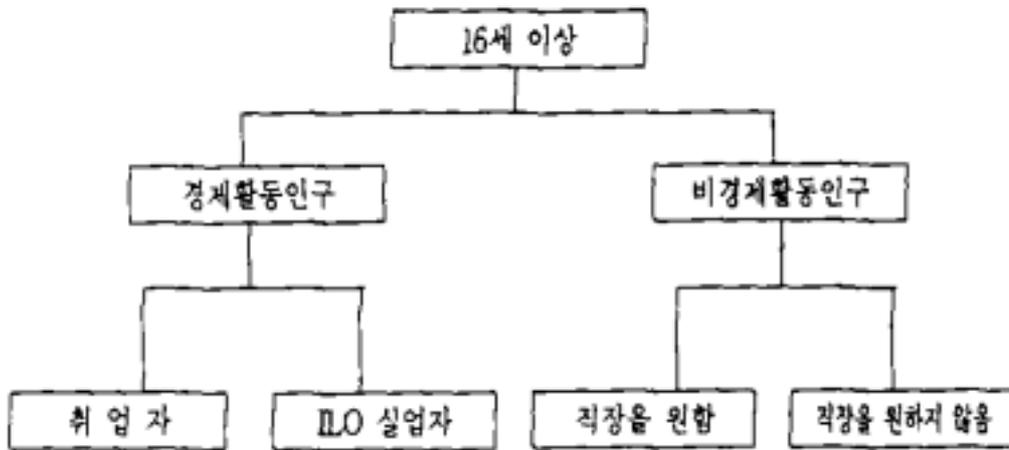
그림자 부분은 LFS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보여준다. 계절별로 조정된 자료에 대해서 시간경과를 감안하여 비교는 동일한 색상으로 칠해진 기간에 대해 행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1999년 1~3월은 1998년 1~3월이나 1998년 10~12월과 비교해야 하며, 1998년 12~1999년 2월과 비교하는 것은 틀린 지표룰 줄 수 있다. 3개월 기간이 겹쳐지는 부분에 대한 추정치의 비교는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매우 불확실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즉 계절별로 조정된 자료에 대한 비교는 전 기간과 겹쳐지는 기간이 없이 해야 하고 계절별로 조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1년전 동일기간에 대한 비교를 해야만 한다.

다. LFS의 조사항목 현황

LFS는 1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취업³⁾, 실업구조, 소득⁴⁾, 근로형태, 직업, 산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LFS는 인적 특징, 노조가입 여부, 건강과 장애(disability)와 같은 기타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수집한다.

1984년부터 영국의 LFS는 ILO의 정의에 따라⁵⁾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LFS의 노동력 분류도 ILO와 동일하다.

[그림3-5] LFS의 경제활동상태 분류



LFS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ILO의 실업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취업자는 다음 네 개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표3-11> 영국 노동력조사의 취업자 분류

취업자 분류	비 고
종업원	종업원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임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을 가지고 있음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독자적으로 일하고 일반적으로 국민보험을 스스로 납부함
무급가족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나 자신 소유에 가까운 사업체에 무급으로 일함
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 (participants in government-supported training programmes)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과 취업프로그램(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me)에 참여자 - 16세 이상 연령의 모든 사람들 중 정부의 취업과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LFS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정의는 ILO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EU 회원국과 OECD 회원국이 사용한다.

2. 실업통계 작성의 역사

LFS는 1973~83년까지는 2년에 한번씩 실시되었다. 1984년 ILO 정의를 처음 사용하였는데, 1984년은 LFS가 매년 봄 절기(3~5월)에 대해 입수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연간베이스로 조사를 행한 최초의 해이기도 하다. 영국은 1992년 봄에, 북아일랜드는 1994~95년 겨울에 연속적인 토대로 옮겨졌다. 1998년 4월 이후에는 조사결과가 각각의 3개월 기간 동안의 평균을 1년에 12번 발표하고 있다. LFS자료는 조사된 시점에서 약 6주 후에 발표된다.

주석 1) 고용주조사는 이직률과 이윤, 직장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주조사는 종업원의 일자리수를 측정하기 위해 1년 단위로 매년 9월에 실시한다.

주석 2) 실업자 등록(claimant count)의 내용이 1996년 10월 7일에 바뀌었는데 실업급여와 실직자 소득원을 구직수당(Jobseeker Allowance : JSA)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즉 1996년 10월 6일까지의 실업자 등록(claimant count)은 실업급여, 소득지원이나 국가보험(NI)을 요청한 사람들을 포함한 수치이다. 실업자 등록 시리즈는 1971년부터 이용가능하다.

주석 3) 주 취업률(headline employment rate)은 경제활동 연령 인구에서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경제활동연령 인구는 남성은 16-64세, 여성은 16-59세이다. 취업률은 취업상태에 있는 16세 이상의 인구에 대한 비율로서 나타낼 수도 있다.

주석 4) LFS는 분기별 변화에 대한 유일한 추정치이다. 소득추정 수준(주당 소득인지 시간당 소득인지)에 대해서는 NES(New Earning Survey)와 LFS에 자료가 있다. NES는 풀타임 종업원과 모든 종업원들의 시간당 소득을 파악하는데 선호된다. LFS는 파트타임 종업원의 소득조사에서 선호되고 있다. LFS 소득추정치는 LFS분기별 부가자료(Labour Force Quarterly Supplement)를 통해 발표된다. 소득에 관한 자료는 매월 소득추정치에 적합한 평균소득지수(Average Earning Index)와 연간 변화에 적합한 신소득조사(New Earning Survey)가 사용된다.

주석 5) 실업자란 조사대상주간 동안 일은 없었으나 직장을 원한 자 중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2주 내에 취업이 가능한 자 등을 칭한다.

第5節 멕시코

국민도시고용조사(National Urban Employment Survey)라는 명칭의 멕시코 노동력조사는 1983년 신설된 멕시코통계연구소(Mexican Statistical Institute)에서 분기마다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조사 초기에는 12개 대도시를 상대로 조사되었으나 현재에는 44개 도시별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1983년과 1984년 3/4분기까지는 Continuous Occupational Survey와 국민도시고용조사 두 가지를 실시하였으나, 1984년 4/4분기 이후부터는 Continuous Occupational Survey는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 도시고용조사가 멕시코의 유일한 분기별 노동력조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85년에는 조사결과의 질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도시고용조사의 질문지가 개정되어 작업장소(가내수공업, 노점, 기타 등)와 사업체 규모, 근로시간, 부가급여, 그리고 소득과 같은 새로운 사항이 질문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멕시코 노동시장을 보다 자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조사도시는 maquiladora 산업¹⁾의 영향으로 미국국경과 인접한 4개의 도시를 추가하여 16개로 늘어났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8년에는 조사지역 도시수가 44개로 늘어남에 따라 인구규모가 10만명 이상인 대도시지역 인구의 90%, 거주자 2,500명 이상인 전도시의 인구 60%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사자료가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데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낮은 농가실업률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센서스나 정기 national survey에 의하며 도시화가 덜 진행된 지역은 대도시 지역보다 실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도시고용조사는 ILO의 권고안을 기초로 통계를 작성한다. 조사대상 연령은 만 12세 이상인 자로 하며, 취업자란 조사대상주간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최소한 1시간 일한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 또는 가족의 사업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질병·방학·여행·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일을 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는 4주 안에 직장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자로 정의된다. 즉 4주 안에 직장에 복귀하거나 일을 시작할 예정인 사람은 이유에 상관없이 취업자로 분류되며, 만약 4주 안에 일을 시작하거나 일터로 돌아갈 예정이 없거나 과거 2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했다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 동안 일하지 못한 자로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자를 실업자로 정의한다. 또한 과거 1~2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해왔고 구직결과 대기, 한달 내의 재소환, 파업의 종결이나 중지(stoppage)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실업자로 정의한다.

주석 1) 멕시코는 1965년에 외국인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maquiladora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maquiladora 프로그램이란 조립가공과 역수출을 위해 수입재의 무관세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第 4 章

失業統計 改善方案

第1節 失業統計 作成을 둘러싼 與件變化

우리나라에서 경제관련 통계가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양적·질적인 차원에서 크게 변모하여 왔다. 특히 1997년 말의 IMF 자금지원체제는 이때까지 우리가 한번도 겪지 못했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가져왔다.

이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과정,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고용관련 지표의 변화를 파악·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여 봄으로써 실업통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1. 인구측면의 여건변화

가. 인구 및 인구구조의 변화

그간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출산율과 사망률이 하락함에 따라 1960년대에는 2~3%의 높은 수준이었으나 1970년에 2.0% 미만에 도달한 이후 1995년에는 1.0% 미만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최근까지도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생산가능 인구인 15세 이상 인구변화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2~3%대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풍부한 노동력의 공급원이 되었고, 1980년대 중반까지도 '베이비붐'세대의 유입으로 2%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던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둔화되어 1991년에 1%대에 진입한 이후 1998년에는 1.5%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출산력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모하였는데, 대표적인 변화는 고령화가 크게 진척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3.1%에서 1980년 3.8%, 1990년 5.9%, 그리고 1998년 6.6%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여전히 적극적인 경제활동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고령층 인력의 활용대책과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정책이 더욱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15세 미만의 연소층은 출생률의 저하와 '베이비붐' 세대의 중장년층의 유입으로 구성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표4-1> 인구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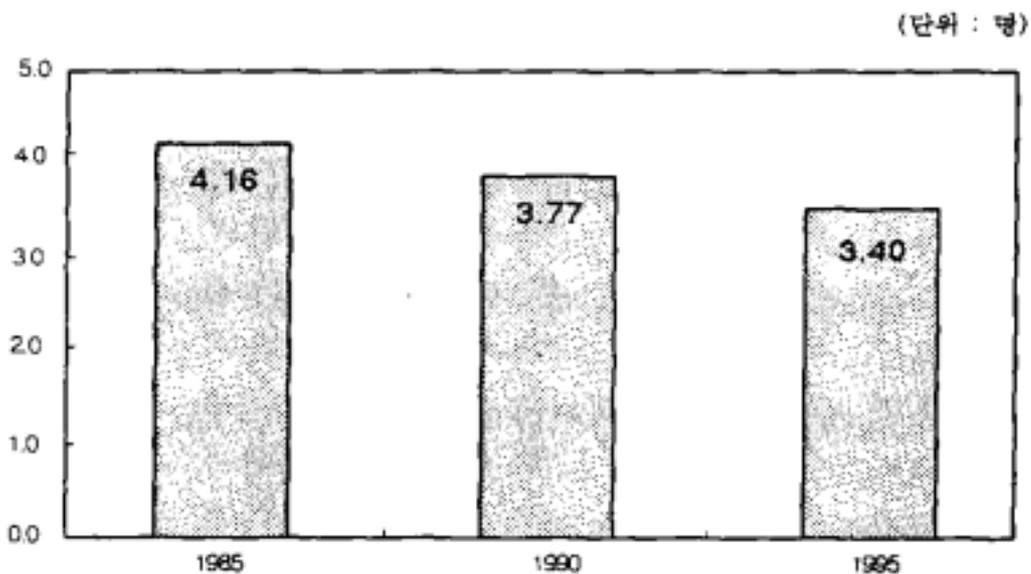
	1970	1980	1990	1995	1998p
전체인구 ¹⁾ (증가율)	32,241 (1.82)	38,134 (1.37)	42,806 (1.02)	45,093 (0.95)	46,430 (0.95)
구성비					
0~14세	42.5	34.0	25.6	23.4	22.0
15~64세	54.4	62.2	69.3	70.7	71.4
65세 이상	3.1	3.8	5.1	5.9	6.6
15세 이상 인구 ²⁾ (증가율)	17,468 (3.66)	24,463 (2.84)	30,887 (2.06)	33,558 (1.88)	35,243 (1.46)

주 : 1) 「장래인구추계」의 전체 인구임.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숙박인구(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임.
 3) p는 추계치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12.

나. 가구구성 형태의 변화

산업화로 인하여 가족의 구성형태가 점차 핵가족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구수는 1985년 9,571천개소에서 1990년 11,355개소, 그리고 1995년 12,958천개소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평균가구원수는 1985년 4.16명에서 1990년 3.77명, 그리고 1995년에는 3.4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 평균가구원수 추이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7.

2. 노동시장의 여건변화

가. 농가 노동력의 감소

1970년대 초반을 전후로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 인구이동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농가인구는 크게 감소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중 농가지역의 거주자는 1970년에는 46.7%의 비중을 차지하여 농가와 비농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1990년 16.5%, 그리고 1998년에는 10.1%를 기록하였다. 반면 비농가지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 89.9%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노동력 10명 중 9명이 비농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농가·비농가별 생산가능인구 구조의 변화

(단위 : 천명, %)

	1970	1980	1990	1996	1998
전 세	17,468 (100.0)	24,463 (100.0)	30,887 (100.0)	33,558 (100.0)	35,243 (100.0)
농 가	8,163 (46.7)	7,891 (32.3)	5,109 (16.5)	3,887 (11.6)	3,550 (10.1)
비농가	9,306 (53.3)	16,572 (67.7)	25,778 (83.5)	29,671 (88.4)	31,693 (89.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나.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노동력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수준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력의 부족이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이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본격적인 상승은 상당부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추이를 성별로 살펴볼 때, 남성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1980년대 중반까지 약 40%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1987년을 전후로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7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여성의 고학력화가 꾸준히 진전되어 왔고 가사노동의 자동화, 육아여건의 개선 등이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결부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표4-3>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197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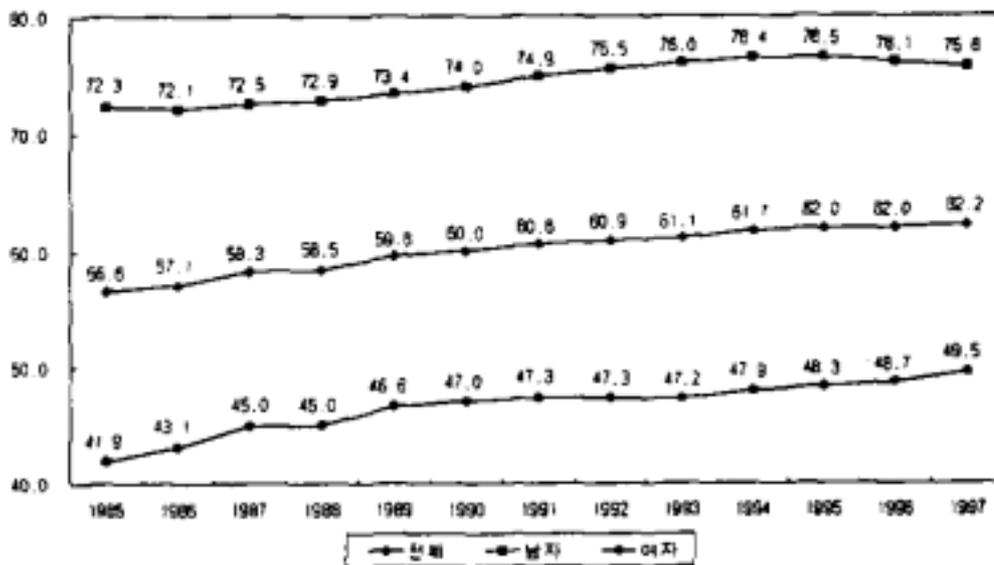
(단위 : 천명, %)

	전 체		남 자		여 자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1970	10,062	57.6	6,447	77.9	3,615	39.3
1980	14,431	59.0	9,019	76.4	5,412	42.8
1990	18,539	60.0	11,030	74.0	7,509	47.0
1995	20,797	62.0	12,433	76.5	8,364	48.3
1997	21,604	62.2	12,761	75.6	8,843	49.5
1998	21,390	60.7	12,883	75.2	8,507	47.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그림 4-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다.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구조 변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고학력화 추세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교육, 훈련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한계수익(미래의 소득)이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이루어지며, 동시에 인적자본 투자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은 높은 임금소득의 수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대수익의 실현을 위하여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참가유인이 저학력자보다 더 높게 된다.

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까지 꾸준하게 80%대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 중졸 이하 저학력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의 55.5%에서 1990년 53.5%, 그리고 1998년에는 48.7%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대졸 이상 고학력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온 반면, 중졸 이하 저학력계층의 참가율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 추세가 남성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표 4-4> 성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0	59.0	55.5	66.1	82.5
1990	60.0	53.5	65.0	80.7
1997	62.2	51.0	67.2	81.5
1998	60.7	48.7	64.7	78.9
	남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0	76.4	72.5	81.1	95.1
1990	74.0	65.0	80.0	93.2
1997	75.6	60.5	81.0	92.5
1998	75.2	58.3	80.0	91.3
	여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0	42.8	42.6	43.1	46.6
1990	47.0	45.6	47.5	57.2
1997	49.5	44.4	52.0	63.9
1998	47.0	42.3	48.4	59.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라. 실업률의 변화추이

1963년부터 실업통계가 작성된 이래 실업률은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의 추세를 보면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의 증가속도보다는 노동수요의 증가속도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1963~97년 기간 동안 노동공급지표인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9% 증가한 반면, 취업자는 연평균 3.1%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러한 실업률의 변화추이를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수준 등 노동시장지표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제 I 기(1963~72년) : 고성장 고실업기

1963~72년 기간 동안 연평균 실업률은 5.8%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입대체 산업화 및 경공업 중심의 한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높은 노동수요의 증가로 1963년 8.1%에서 1972년에는 4.5%로 실업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중 취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3.6%를 기록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3.1%를 기록하였다.

2) 제 II 기(1973~78년) : 고성장 중실업기

1973~78년 기간 동안 연평균 실업률은 3.8%로 전기에 비하여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 궤도에 접어들고 초기의 경공업 및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율이 연평균 4.2%에 이를 정도로 고용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의 증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취업에의 기대 증가에서 비롯된 이농과 경제활동참가의 급증은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4.0%를 기록하고 있어 실업률은 크게 낮아지고 있지 않다.

3) 제 III 기(1979~86년) : 중성장 중실업기

1979~86년 기간 동안도 연평균 실업률은 3.9%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로 전기에 비하여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전반적으로 고성장 기조가 유지되기는 하였지만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본격 이동하는 과도기이며, 또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광주사태 등 정치·사회적 불안정, 오일쇼크의 여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980년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에 있어 부침이 심하였던 시기이다. 이와 같이 경제전반에 성과가 불안정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도 불안정하게 나타났는데, 이 기간 중 취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1.9%를 기록하여 이전에 비해서 크게 낮아지고 있다.

4) 제 IV 기(1987~97년) : 중성장 저실업기

1987~97년 기간 동안 연평균 실업률은 2.4%로 거의 완전고용상태¹⁾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 초기(1986~88년)에는 이른 바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등 3저호황으로 두 자리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1980년대 후반 노사관계의 급변과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가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경제구조의 변환이 요구되었고, 이는 예전과는 다른 중성장체제로의 돌입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올림픽 특수 등에 따른 내수산업의 호황으로 인하여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2.6%로 지난 시기에 비하여 더 높아졌으며, 이러한 노동공급 증가를 앞지르는 노동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실업률은 더욱 하락하여 자연실업률²⁾ 수준을 기록하였다.

5) 제 V 기(1998년 이후) : 안정성장하 고실업시기로의 전환

1997년 말의 금융·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노동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1998년 실업률은 6.8%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취업자 증가율은 -5.3%를 기록하여 1984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하였다. 노동공급의 감소도 두드러져 경제활동인구는 1.0% 감소하였다. 특히 IMF 자금지원체제하에서 경제전반에 걸친 급격한 구조조정의 진행은 기존 성장패러다임의 완전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술적 반등효과가 반영되는 1999년을 제외하면 그 이후의 경제성장률은 5%전후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사정도 이전과 같은 완전고용 수준으로의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가 순탄하게 회복되더라도 향후 3~4년간은 4~5%대의 고실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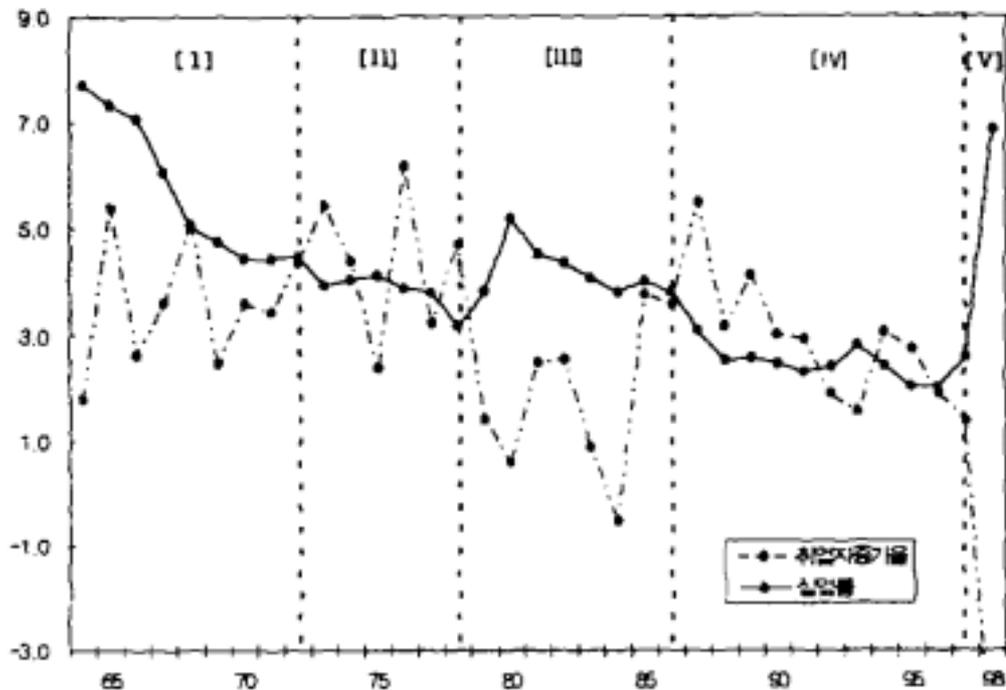
<표 4-5> 실업률의 장기변화 추이

(단위 : %)

	I기 (1963~72년)	II기 (1973~78년)	III기 (1979~86년)	IV기 (1987~97년)	V기 (1998년)
경제성장률	9.3	9.2	7.0	7.7	-5.8
경황 증가율	3.1	4.0	1.9	2.5	-1.0
취업자 증가율	3.6	4.2	1.9	2.6	-5.3
실업률	5.8	3.8	3.9	2.4	6.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그림 4-3] 지난 3여년간의 고용변화



마.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그간 실업률의 감소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산업발전에 따른 노동수요의 증대에 기인하였다. 그런데 각 시기의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던 산업은 시기마다 달리 나타난다. 제 I·II기 기간의 높은 취업자 증가는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이 제 I기의 경우 경공업부문 중심으로, 그리고 제 II기의 경우 중화학공업부문과 건설업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노동수요의 급격한 증가 결과이다. 그러나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시기인 제 III기의 경우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취업자 증가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를 보충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서비스 산업화를 향하여 급격하게 진행되게 된다. 제 IV기의 경우 88올림픽 개최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라 건설업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경공업부문의 고용규모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증가폭 둔화가 더욱 심화되게 된다.

<표 4-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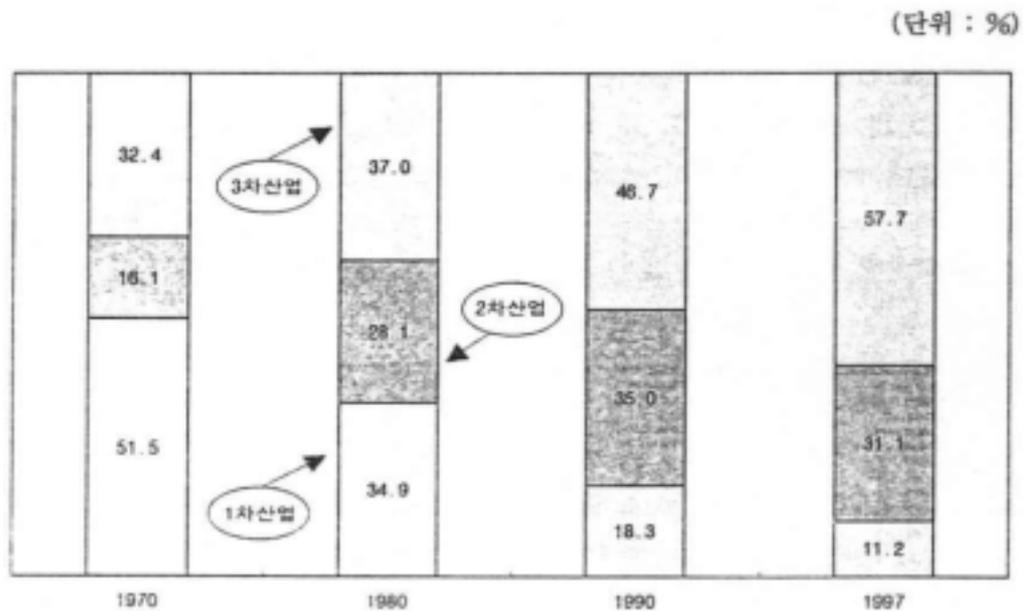
(단위 : %)

	I기 (1963~72년)	II기 (1973~78년)	III기 (1979~86년)	IV기 (1987~97년)	V기 (1998년)
전체	3.6	4.2	1.9	2.6	-5.3
농림어업	0.6	-1.1	-4.0	-4.2	4.3
제조업	10.0	11.5	3.1	0.1	-13.2
서비스업	6.2	6.8	5.1	5.7	-4.4
건설업	8.1	17.3	0.9	8.1	-2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1960년대에 경제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되면서 농림어업부분의 비중이 감소되는 가운데, 1970년대 초반까지는 경공업 중심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2차 산업화가 진행되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서비스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4] 고용구조의 변화



3. IMF 자금지원 신청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

가. 고용사정의 악화

1998년도의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은 크게 '극심한 경기침체', '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임금수준의 하락'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1998년도 경제성장률은 -5.8%로 지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38.5% 감소하였다. 기업의 경영환경도 극도로 악화되어 부도기업체는 1997년도의 17,168개소에서 1998년에는 22,828개소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기업은 악화된

경쟁환경을 개선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8년 초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노동시장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IMF 자금지원 신청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우선적으로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등 고용사정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1998년 연평균 실업자수는 1,463천명, 실업률은 6.8%로 100백만명 이상의 실업자수를 기록한 것은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는 지난 1984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1.0%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도 1997년의 62.2%에서 60.7%로 1.5%포인트 하락하였다.

<표 4-7>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1997	1998				1998.1/4	
		1/4	2/4	3/4	4/4		
15세 이상 인구	34,736(1.6)	35,243(1.5)	35,070(1.6)	35,187(1.5)	35,308(1.4)	35,410(1.3)	35,480(1.2)
경제활동인구	21,604(2.0)	21,390(-1.0)	20,892(-1.0)	21,663(-0.9)	21,571(-1.1)	21,432(-0.9)	20,792(-0.5)
참 가 율	62.2	60.7	59.6	61.6	61.1	60.5	58.6
취 업 자	21,048(1.4)	19,926(-5.3)	19,710(-3.7)	20,178(-3.4)	19,971(-6.4)	19,846(-5.8)	19,042(-3.4)
실 업 자	556	1,463	1,182	1,485	1,600	1,586	1,751
실 업 륜	2.6	6.8	5.7	6.9	7.4	7.4	8.4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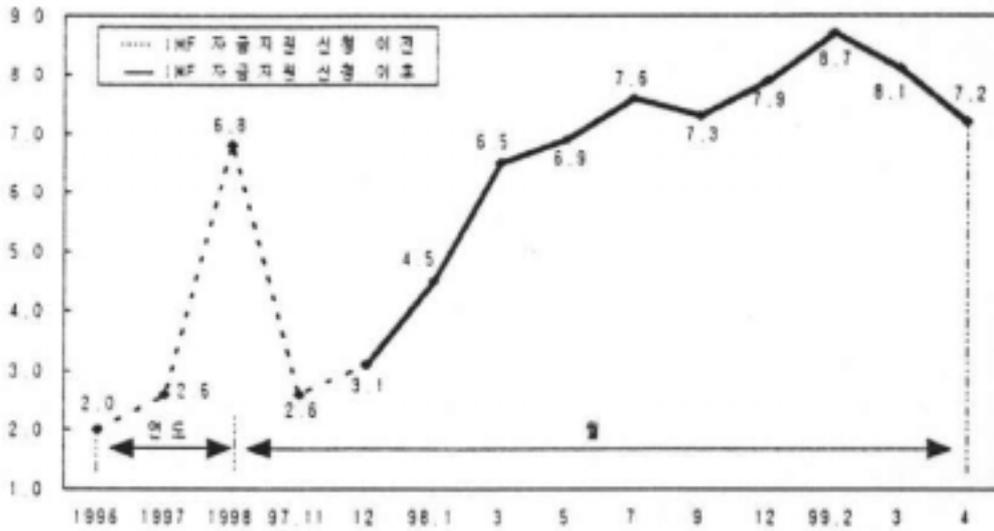
나.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회복³⁾

월별 실업추이를 살펴보면, IMF 자금지원 신청 직후인 1997년 12월의 3.1%에서 1999년 3월 4.5%, 7월 7.6%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후 실업률 상승추세가 다소 주춤하다가 11월 이후 다시 높아져 1999년 1월 8.5%, 2월 8.7%를 기록하였다.

이같은 실업률 상승추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1998년도 상반기의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은 경기적 요인과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하반기 이후의 실업률 상승은 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농업, 건설업 등 계절적 특성을 가진 산업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와 졸업을 앞두고 방학을 이용하여 재학생들이 대거 구직활동에 나섰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말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실업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데다가⁴⁾ 1999년 3월 이후에는 계절적 요인까지 반영되면서 3월 8.1%, 4월 7.2%, 5월 6.5%로 최근까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구나 당초의 전망과는 달리 구직단념자 효과가 장기화되는 것도 노동공급 압박(supply pressure)을 최소화하여 실업률을 더욱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4-5] 월별 실업률 추이



먼저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고용흡수력(employment capacity)이 빨리 증가하여 실업률이 하락하는 측면을 살펴보자.

199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당초의 예상⁵⁾과는 달리 4.6%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민간소비(6.3%)와 설비투자(12.9%) 등 내수도 크게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호전은 2/4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회복의 가속화는 1998년에 감소하였던 취업자수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1999년 5월 들어서는 IMF 자금지원 신청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이는 노동력 상태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취업자의 실업자로의 이동보다 실업자의 취업으로의 이동이 훨씬 크게 나타나 경기회복에 따라 노동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 1~4월간의 노동력 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IMF 직후인 1998년에는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노동력 이동보다 커 실업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1999년 들어 실업자로부터 취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3월부터 이러한 현상이 반전되고 있는 것이다.

<표 4-8> 월간 노동력 상태의 변화

(단위 : 천명)

	1998			1999		
	1월→2월	2월→3월	3월→4월	1월→2월	2월→3월	3월→4월
취업→실업	329	350	277	275	308	279
실업→취업	180	275	276	263	515	449

자료 : 신동균, 『최근 실업구조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내부자료.

또한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의 효과도 실업률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이 반영되는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취업자는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⁶⁾.

<표 4-9>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1999. 1/4	1999. 4			1999. 5		
			증 감	증가율		증 감	증가율
전 체	-3.4	20,004	-123	-0.6	20,301	75	0.4
농림어업	-13.8	2,403	-270	-10.1	2,540	-268	-9.5
광공업	-6.5	3,907	-17	-0.4	3,930	72	1.9
제조업	-6.4	3,889	-17	-0.4	3,911	72	1.9
SOC 및 기타 서비스업	-0.9	13,694	165	1.2	13,831	271	2.0
건설업	-23.9	1,425	-211	-12.9	1,475	-136	-8.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3	5,586	23	0.4	5,621	75	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7.1	4,735	400	9.2	4,739	349	7.9
전기·운수·창고·금융업	-1.9	1,948	-45	-2.3	1,974	-20	-1.0

주 : 증감 및 증가율은 전년동기(동월)대비임.

다음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자 감소효과를 살펴보자. 실업률의 일반적 추세를 보면, 신규학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많고 농림어업 등 계절적 산업의 영향으로 1~3월에 가장 높은 후 점차 감소하다가 11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실업률과 원계열 실업률의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계절조정의 경우가 전월대비 변화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계절적 변화요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규모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원계열 실업률과 계절조정 실업률과의 격차만큼은 계절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망실업효과와 장기화로 인한 실업률 감소측면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고용흡수력이 증대되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사람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경우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반기에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공급은 오히려 IMF 직후인 1998년보다 감소하고 있다. 즉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동월에 비하여 1%포인트 내외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구직의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노동력이 여전히 비경제활동상태로 머물면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예년과는 달리 1999년 들어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가 여성보다 더 크게 나타나 남성의 실망노동자효과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0>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포인트)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체	1998(A)	58.9	59.2	60.6	61.3	61.7
	1999(B)	58.3	58.0	59.5	60.7	61.0
	차이(A-B)	-0.6	-1.2	-1.1	-0.6	-0.7
남성	1998(A)	73.9	74.0	75.2	75.8	76.1
	1999(B)	72.8	72.4	73.8	74.5	74.7
	차이(A-B)	-1.1	-1.6	-1.4	-1.3	-1.4
여성	1998(A)	44.8	45.2	46.8	47.7	48.1
	1999(B)	44.7	44.3	46.1	47.5	48.1
	차이(A-B)	-0.1	-0.9	-0.7	-0.2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호

다. 고용의 안정성 저하

취업자수의 급속한 감소와 아울러 고용의 안정성도 크게 하락하였다. 취업자를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1998년에 상용근로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9.7%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감소인원 1,122천명 중 61.8%를 기록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일용근로자도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의 극심한 침체로 인하여 전년대비 8.0% 감소하였다.

<표 4-1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1997	1998	증감인원(증감률)
전체	21,048(1.4)	19,926	-1,122(-5.3)
비임금근로자 ¹⁾	7,820(2.7)	7,736	-66(-1.1)
상용근로자	7,133(-3.3)	6,440	-693(-9.7)
임시근로자	4,204(8.7)	4,013	-188(-4.5)
일용근로자	1,890(5.2)	1,738	-152(-8.0)

주 : 1) 비임금근로자 항목에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속함.

2)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호

특히 1999년에 들어서면서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비록 총량으로 보면 실업자 감소 및 취업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의 안정성은 1998년보다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1999년 5월 중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에 비해서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한 계층은 임시·일용직 계층으로, 특히 일용직의 경우는 전년동월 대비 4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3월에 처음으로 50%를 넘은 후 4월 51.8%, 5월에는 52.5%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일용직 취업자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영향과 경기회복에 따른

초기 고용증가가 주로 이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경기불황시 고용의 감소나 경기회복시 고용의 증가는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계층에서부터 나타나서 점차 정규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표 4-1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1999년 5월 기준)

(단위 : 천명, %)

	1998. 5.	1999. 4.	전년동월대비		1999. 5.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전 세	20,226	20,004	-123	-0.6	20,301	75	0.4
비임금근로자	7,965	7,654	-241	-3.1	7,753	-212	-2.7
자영업주	5,817	5,728	-55	-1.0	5,773	-44	-0.8
무급가족종사자	2,149	1,926	-186	-8.8	1,980	-169	-7.9
임금근로자	12,261	12,350	118	1.0	12,547	286	2.3
상용근로자	6,505	5,952	-609	-9.3	5,958	-547	-8.4
임시근로자	4,078	4,117	50	2.2	4,135	57	1.4
일용근로자	1,678	2,282	639	38.9	2,454	776	46.2

이러한 고용의 안정성 저하는 노동력 상태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99년 3월에 실업상태에 있다가 4월에 취업된 사람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449천명 중 임시·일용직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77.4%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3> 종사상지위별 노동력 상태의 변화(플로우 분석): 3월 실업→4월 취업

(단위 : 천명, %)

	비 중
전 세	449(100.0)
비임금근로자	9.1
상용근로자	30.1
임시근로자	47.3
일용근로자	13.5

자료 : 신동균, 『최근 실업구조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내부자료

한편 취업자 중 취업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1997년 344천명에서 1998년 평균 47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추가 취업희망자수는 1997년에 비해 거의 1.7배 가량 늘어났으며, 특히 IMF 자금지원 신청 이후인 1998년 1/4분기부터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표 4-14> 추가취업희망자 추이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 1/4	
		1/4	2/4	3/4	4/4		
18시간 미만 취업자	344	475	425	420	537	516	658
추가취업희망자 ¹⁾	108(31.4)	185(38.9)	137(32.2)	185(44.0)	213(39.7)	203(39.3)	232(35.3)

주 : 1) 추가취업희망 항목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 등이 이에 속함.

2) ()안의 수치는 18시간 미만 취업자 전체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호.

라. 실업의 장기화⁷⁾

1) 실업기간의 추이 및 구조변화

장기실업자란 일정한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혹은 12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각 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기준을 12개월로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은 상당히 자의적이며 전반적인 실업률 수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OECD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 실업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때에는 장기실업의 기준을 연속적으로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실업한 자로 규정하다가 1980년대 이후 고실업이 정착되면서 그 기준을 12개월 이상으로 정하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장기실업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적 충격의 여파로 대량실업자가 방출됨에 따라 장기실업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15>에서 나타나듯이 1998년 1~9월 기간 동안 12개월 기준의 평균 장기실업률⁸⁾은 1%를 밑도는 수준으로 IMF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장기실업자의 수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전체 실업자수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일시적인 하락현상이며, 그 규모에 있어서는 12개월 기준으로 볼 때 1998년 1월의 1만명 수준에서 9월에는 2.7만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IMF 사태 이후 12개월 기준의 장기실업률의 증가는 6개월 기준보다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98년 초부터 발생한 대규모의 실업자들이 12개월이 경과한 1999년에 가서야 장기실업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98년의 장기실업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경기변동에 따른 장기실업률의 변동은 단기실업률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4-15> 장기실업률 추이

(단위 : %)

	1991	1994	1997	1998				
				1월	3월	5월	7월	9월
6개월 이상	14.4	20.7	15.6	5.6	6.6	10.2	16.5	21.4
12개월 이상	4.1	5.5	2.5	1.1	0.5	0.8	0.9	1.7

자료 : 신동균,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1999.

장기실업률의 변화를 세부 그룹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장기실업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러한 패턴은 IMF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 내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가 비경제활동으로 유출되는 실업자들의 비율에 있어서 남성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시기를 막론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장기실업률이 높아지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장기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IMF 이전 인력난이 극심할 때에도 고학력자들의 장기실업률이 12개월 기준으로 할 경우 10%대로 높았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고학력자들의 높은 유보임금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4-16> 성별·연령별 장기실업 현황

(단위 : %)

			1991	1994	1997	1998				
						1월	3월	5월	7월	9월
성 별	남자	6개월 이상	16.7	22.8	18.5	6.8	7.4	11.2	18.5	23.9
		12개월 이상	5.6	6.6	3.4	1.2	0.7	1.0	1.3	1.8
	여자	6개월 이상	10.7	16.1	10.8	3.4	4.8	7.9	11.9	16.5
		12개월 이상	2.7	3.2	0.5	0.9	0.2	0.2	0.2	1.5
학 력 별	중졸	6개월 이상	-	15.0	-	1.9	4.2	7.0	13.6	18.2
		12개월 이상	-	2.0	-	0.6	0.1	0.1	0.2	0.8
	고졸	6개월 이상	-	17.4	-	4.0	5.4	8.1	14.1	19.9
		12개월 이상	-	3.9	-	0.7	0.2	0.5	0.6	1.6
	대졸 이상	6개월 이상	-	30.8	-	14.2	10.8	17.3	26.2	27.8
		12개월 이상	-	10.8	-	3.1	1.4	1.7	2.5	2.3

자료 : 신동균,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1999, 32쪽.

2) 장기실업의 추정 및 향후 전망

장기실업률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해자드율(hazard rate)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택하겠다. 가장 직접적으로 해자드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패널(panel)형태로 재구성하여 전월의 실업자풀에서 얼마만큼이 탈출했는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한다면, 우선 특정 월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구직기간별로 실업자들을 분류하고 각 그룹에서 해자드율을 계산한다. 그 이유는 해자드율이 실업기간별로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계산된 각각의 월별 해자드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전형적(typical)' 해자드율을 계산하여 장기실업률을 예측한다. 이 과정에서 예측모형은 여러 가지 함수형태를 고려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를 사용하겠다.

$$h(t) = \text{EXP}(\alpha + \beta t)$$

즉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된 월별 해자드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구직기간을 설명변수로 하여 계수값(coefficient)을 추정한 다음 이 추정치들을 이용하여 월별 해자드율을 추정한다.

장기실업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에서 추정된 해자드율을 생존율(survival rate)⁹⁾로 전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구직기간별 실업자 집단에 대해 생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일정기간 이후에도 계속 실업상태에 있을 사람들을 구직활동별로 추정한다. 다음에는 일정기간 이후에도 계속 실업상태에 있을 사람들을 실업기간별로 분류하고 다시 생존율을 차등 적용하여 일정기간 이후에도 실업상태에 있을 사람들을 기간별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1999년 12월까지의 실업기간별 분포를 구한 결과, 전체 실업자 중에서 12개월 이상 연속적(complete spell)으로 실업상태인 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장기실업률은 1998년의 1.5%에서 1999년에는 약 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석 1) 노동에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고용기회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없거나 이동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이나 현행의 실질임금이 희망임금 수준과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 등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이 '0'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선진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3~4% 정도의 실업률 수준을 완전고용상태로 보고 있다.

주석 2) 정부가 경제에 대하여 전혀 간섭을 하지 않을 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률을 말한다. 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마찰적 실업의 정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고용보험, 기타 경제사회적 각종 제도적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주석 3) 1998년도의 급격한 경기침체와 실업률 급증 이후 한국경제의 전망과 관련하여 완만한 회복(U자형), 저성장경제의 지속(L자형), 그리고 급속한 회복(V자형) 등의 시나리오가 나타났으나 최근의 상황만으로는 V자형 시나리오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주석 4)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은 1998년 하반기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998년 3/4분기 이후 오히려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집계상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취업자는 대부분 공공서비스업 부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주석 5) 당초 각 기관의 1999년도 1/4분기 경제전망은 다음과 같다.

- KDI(1999.4월 발표) : 2.9%
- 한국은행(1999.4. 9일 발표) : 3.1%
- 한국금융연구원(1999. 2월 발표) : 2.1%

주석 6) 1998년 3/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1단계로 68천명, 2단계 370천명, 1999년 1/4분기에 410천명에게 실시하였고, 2/4분기에 450천명에게 실시중이다.

주석 7) 신동균,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1999. 참조.

주석 8) 장기실업률=12개월 이상(또는 6개월 이상) 실업자/전체실업자×100

주석 9) 생존율 = 1 - 해자드율.

第 2 節 雇傭構造 變化의 適切한 反映方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여건 및 노동시장의 상황 등의 변화에 맞추어 실업관련 통계도 적절하게 개편되어야 한다.

실업통계가 보다 내실있게 개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설문지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로 경제지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문지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단시간근로자, 불완전취업자, 구직단념자 등 각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통계적 정의(statistical definition)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통계적 개념정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로 각종 실업대책을 평가(evaluation)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체제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각종 실업대책의 평가항목을 추가시키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자칫 잘못하면 기존 조사의 기능과 목적까지도 손상시킬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체제를 유지하되 부가조사 형태로서 분기나 반기마다 실업대책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본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의 개편과 관련하여 먼저 각각의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적 정의의 마련과 이를 토대로 한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의 개발방안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정부의 실업 대책 평가를 위한 설문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통계청에서 이미 1998년 9월부터 실업대책의 평가를 위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설문항목 개정 및 보완을 실시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통계적 정의의 일원화

다양한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자, 불완전취업자, 구직단념자 등 각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통계적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들 상태에 대한 명확한 통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부부처 등 각 통계작성 기관간에도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각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통계적 정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사표의 수정 및 보완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가. 단시간근로자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단시간고용은 서비스업 미숙련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단시간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¹⁾로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요약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유연한 인력관리를 행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유연한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사무자동화로 업무가 단순화되고 있으며,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청소년층, 주부노동력, 고령층 등 과거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주변 인력이 부분적인 취업을 원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취업형태로 단시간근로제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로 보아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연한 노동시장을 정착시키고 인력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제도를 도입·정착시킨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노동시장 및 고용제도의 변화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part-timer)에 대해서 ILO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자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가령 도소매업 등에서 하루 몇 시간 정도 근무하거나 서비스업종에서 단순한 심부름 정도의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제조업과 금융업 등에서 정규근로자와 거의 다름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짧다면 그 정도는 얼마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 4-17>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p>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p> <p>제25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일부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없다.</p>	<p>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2와 같다(98. 2. 24 개정).</p> <p>② 법 제25조 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p> <p>③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법 제54조,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단시간근로자를 통계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통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범위를 몇 시간으로 규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36시간 미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단시간근로자는 동시에 단기계약직인 경우가 많으므로 통계상에 나타나는 36시간 미만 임시직의 현황이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현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²⁾,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수의 국가에서 35~36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를 분류하고 있어 동일한 조건의 국제비교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시간근로자는 불안전취업자의 통계적 정의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만약 취업자가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의 근로시간 계산 문제이다. 즉 근로자가 주업(first job) 이외에 다른 일(other jobs)을 갖고 있을 경우 주업에서의 근로시간만을 조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업에서의 근로시간과 부업에서의 근로시간을 합친 근로시간을 조사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ILO에서는 모든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을 합하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비교를 위해서 ILO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좀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서 설문을 주업 이외에 부업의 유무를 질문한 후 주업에서의 근로시간과 부업의 근로시간을 모두 조사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단시간근로자의 통계적 정의에 따른 질문흐름도(questionnaire flow chart)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림 4-6] 단시간근로자의 질문흐름도



나. 불완전취업자

최근 실업률이 하향추세로 접어들면서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고용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불완전취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취업자가 실제로 얼마만큼 증가하는가를 정확히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참고로 통계청에서는 현재 주당 취업시간이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 수치를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불완전취업자의 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ILO의 정의에 따르면 불완전취업자³⁾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였으며, 추가취업 및 전직을 원하는 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기준에 일치한 통계적 정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2장에서 국제비교를 통하여 논의한 바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이를 기초로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통계적 기준의 마련과 설문지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근로시간 기준으로서 어느 정도를 정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불완전취업자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에 따른 취업자수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8> 근로시간 구분에 따른 취업자의 변화

	(단위 : 천명)
	1998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한 18시간 미만 취업자	237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한 30시간 미만 취업자	636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한 36시간 미만 취업자	868

주 : 노동시장적 사유에는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일거리가 없어서, 노사분규, 사업부진 등이 속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데이터』.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정한 근로자의 통계적 기준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36시간 미만 취업자를 근로시간 기준에서의 불완전취업자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기준의 극단적인 경우로서 노동시장적 사유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경우도 불완전취업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ILO 기준에도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한 일시휴직자를 불완전취업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서의 국제비교를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해서 1시간 일한 취업자나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일시휴직자의 상황이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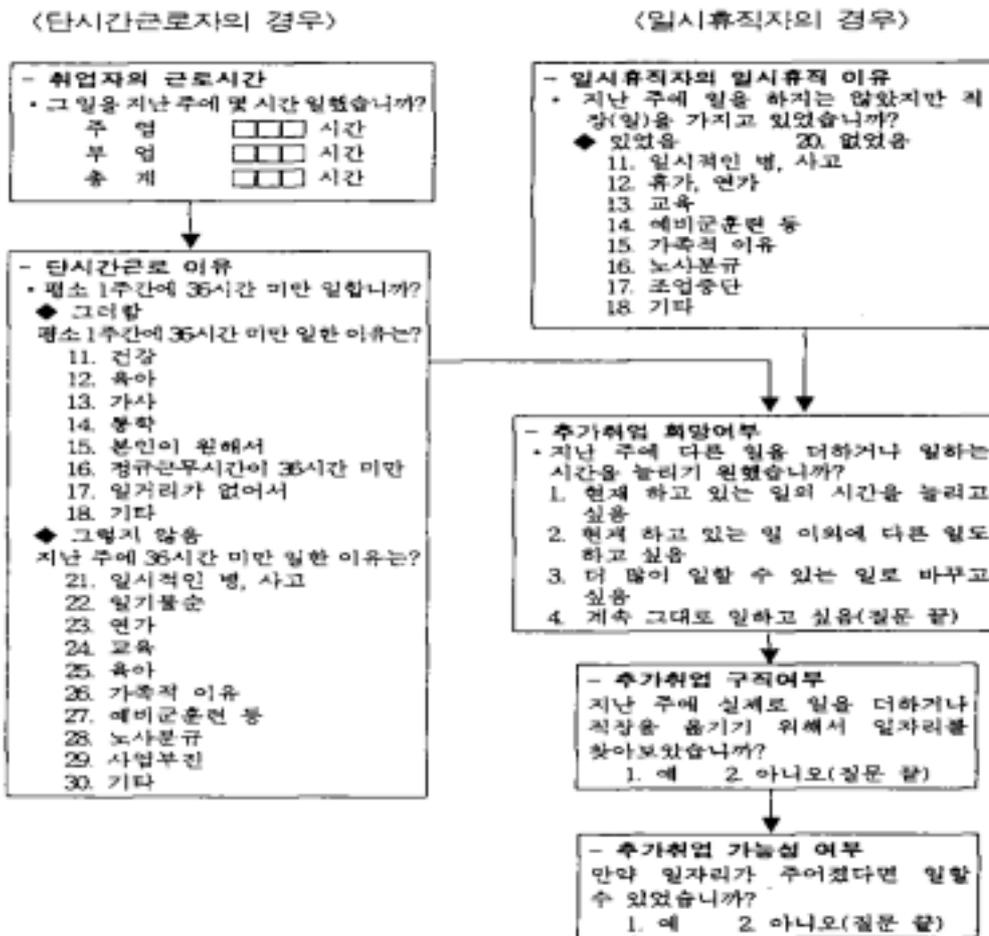
둘째, 노동시장적 사유에 대한 항목의 구성문제이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36시간 미만 근로의 이유를 크게 평상시 근로시간 기준과 조사대상주간의 실제근로시간 기준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 근로시간 기준에서의 불완전취업자를 판단하기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노동시장적 사유를 묻는 항목을 보다 자세히 수정하면 충분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 이유에 의한 36시간 미만 근로자 중 추가취업 희망여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경제활동인구 조사표상에서는 현재 하는 일의 근로시간을 더 늘리거나 추가취업 또는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를 질문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기준과 동일하다.

넷째, 만약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고 있다면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실제로 일을 찾아보았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응답자 대부분은 더욱 많은 근로소득을 위해서 실제로는 추가취업이나 전직희망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예'로 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통계적 정의는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해서 36시간 미만 일한 근로자나 일시휴직자 중 현재 하는 일을 더욱 늘리거나 추가취업 및 전직을 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일을 찾아보았고 일이 주어졌을 때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자'로 개념화할 수 있다. 따라서 불완전취업자의 측정을 위한 조사흐름도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7] 불완전취업자의 질문흐름도



다. 구직단념자⁴⁾

ILO 정의에 따르면, 구직단념자란 "일을 원하고(want a job) 현재 일할 수 있지만(currently available for work) 구직결과 일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포기한 자"를 지칭하며, 주로 여성, 청소년, 그리고 중고령층과 같은 이차적 노동력 계층에서 발견되기 쉽다. 실업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반해 구직단념자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감안될 소지가 매우 높다. 예를 들면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유로 현재에는 본인에게 적합한 직장이 없다는 생각 등 노동시장 관련사항일 수도 있고 자신의 자격이 부족하다거나 근로자의 연령상 제약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구직단념자를 추정하기란 특히 어렵다. 때문에 구직단념자를 실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적 정의는 명확하지가 않으며 또한 나라마다 다르다.

구직단념자는 조사시점에서 일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가이드라인하에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구직단념자는 실업자처럼 활용되지 못한 노동자원을 나타내는 것이며, 미래의 시점에서 실업자로 이동할 확률이 어느 계층보다도 크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의 범주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인' 실업자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유용할 듯 싶다. 따라서 구직단념자의 통계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미래의 실업자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필요하나 아직까지도 구직단념자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만약 "현재 직장이 있다면 일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해서 구직을 포기한 자 중 지난 1년 이내에 구직할 경험이 있는 자"를 구직단념자로 구분할 경우 구직단념자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3~4%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구직단념자의 연령범주이다. 현재 구직단념자 산출이 1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령층의 경우 조사상에서는 구직단념자에 속하는 결과가 나타났더라도 이들을 과연 구직단념자로 간주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구직단념자의 조사대상연령을 15~64세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표 4-19> 주요국의 구직단념자 정의

	정 의	비 고
미 국	16~64세 대상 1. 지난 4주 동안 구직을 하지는 않았고 2. 직장을 갖기를 원했으며 3. 지난 12개월 동안 구직할 경험이 있거나 최종 직장 에서 근무한 지가 12개월을 넘지 않았고 4. 지난 주에 일을 할 수 있었고 5. 다음 상황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믿음 -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음 - 학력이나 기술수준의 부족 - 근로자의 연령제한 - 다른 형태의 차별	CPS (연평균)
일 본	15~64세 대상 1. 조사주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2. 근로조건이 편함을 경우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기를 회 망하였음 3.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상황들로 인해 직장 을 얻는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임 - 지역 내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음 -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수준에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없음 - 현 경제사정이나 시기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음	노동력특별조사 보고서(2월)
캐나다	15세 이상 대상 1.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2. 지난 주에 직장을 원했고 3. 지난 주에 직장을 갖는 것이 가능했으나 4. 숙련에 적합하거나 지역 내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구직활동을 안함	March Survey of Job Opportunities
Eurostat Countries ¹⁾	15세~64세 대상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과 어디 가면 일자리를 얻 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함	Labour Force Sample Surveys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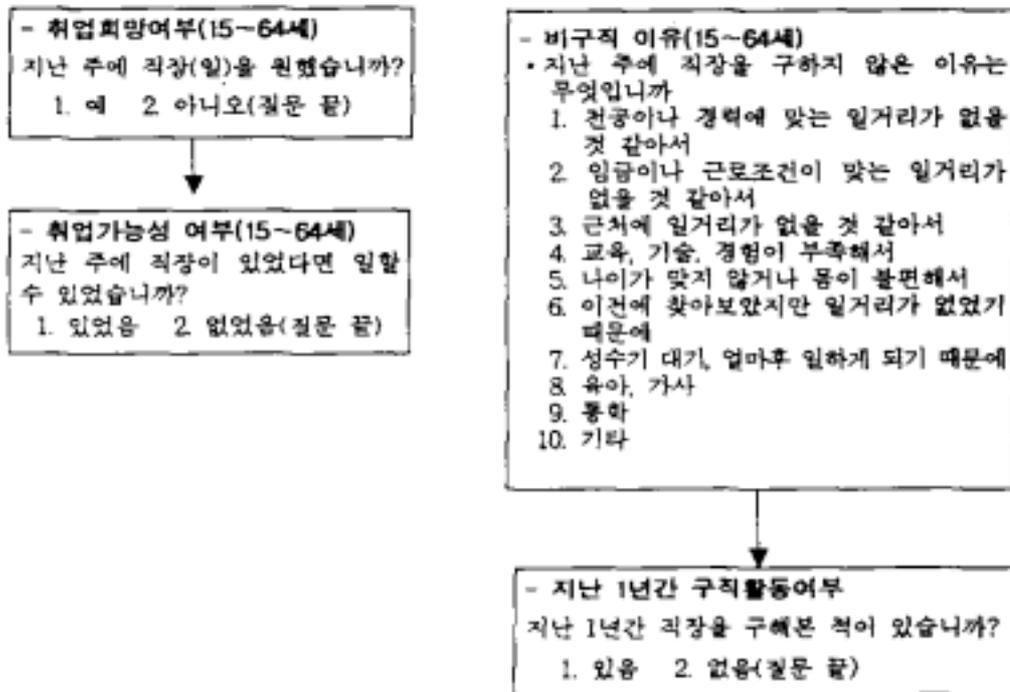
주 : 1)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
인, 영국.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July 1996, pp.82~83.

둘째로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객관적인 성격의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설문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럽국가들의 경우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유만으로 구직단념자를 정의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응답자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자신들이 갖는 특징을 개념화(abstract)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직단념자로 명확히 구별해내는 것은 어렵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구직단념자에 대한 통계적 정의는 "조사대상주간 동안 직장을
원했고 직장이 있었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하였던 15~64세 연령계층 중에서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해 구직을 포기하였으며 지난 1년 이내에 구직할 경험이 있는 자"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조사흐름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그림 4-8] 구직단념자의 질문흐름도



라. 임금근로자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진전되면서 임금근로자에 대한 통계분류가 대폭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매우 높다. 고용형태의 다양화란 종전의 근무형태인 정규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처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는 이유로는 노동수요 측면의 경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전문인력의 적기 확보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관리의 유연성 확보 등을 들 수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여성·청소년·고령층 등 주변노동력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정규직 형태의 근무를 원하거나 일부 전문직 및 기술직 근로자들의 경우 특정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기술 및 지식을 자유로이 활용하려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기관에서 분류하는 임금근로자는 크게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그리고 일용근로자 등 3가지로만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는 우리나라의 실업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변화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우리와 같은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으며, 선진국들의 경우는 전시간근로(full-time)와 시간제근로(part-time)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나마 <표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청과 노동부간에도 임금근로자의 구조에 관한 각각의 개념이 상이한 실정이다. 먼저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양 기관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임시근로자, 그리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로 분류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상용근로자이며 1개월 미만인 자는 임시근로자, 그리고 현재의 계약에 관계없이 그날그날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 구분한다. 따라서 노동부의 기준으로는 상용근로자의 범주에 속하는 자들이라도 통계청의 기준에 의하면 임시근로자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은 고용계약기간만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를 구분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고용계약기간뿐만 아니라 연속근무 여부를 구분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노동부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할지라도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내에 45일 이상 근로한 자인 경우 상용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우는 만약 임시근로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임시근로자로 구분한다.

<표 4-20>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비교 : 통계청 · 노동부

	통계청	노동부
상용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로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 일용 및 임시근로자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근로한 자
임시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직명에 관계없이 1개월 미만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한시적 위원, 비상근직, 촉탁 등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미만 재직하고 있는 자도 포함
일용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일정한 사업장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	- 현재의 직명에 관계없이 사업체에서 그날그날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45일 미만 근로한 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7.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8.

이같은 분류상의 차이 때문에 양 기관에서 집계된 임금근로자의 구성비간의 차이가 크다.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의 임금근로자 구성을 살펴볼 때, 앞서 언급했듯이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노동부 통계가 통계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통계청 통계가 높게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통계청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7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상용근로자가 9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근로자의 경우는 통계청 20.2%, 노동부 1.4%를 기록하여 양 기관간의 차이가 크다. 물론 조사대상이 노동부는 사업체 기준이고, 통계청은 가구기준이라는 상이함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

<표 4-21> 각 기관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비교(1998년 기준)

(단위 : %)

	통계청	노동부
임금근로자 전체	100.0(100.0)	100.0
상용근로자	73.1(33.0)	94.0
임시근로자	20.2(32.8)	1.4
일용근로자	6.7(14.2)	4.6

주 : 1)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사업장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데이터』, 1998.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8.

한편 통계청은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조의 조사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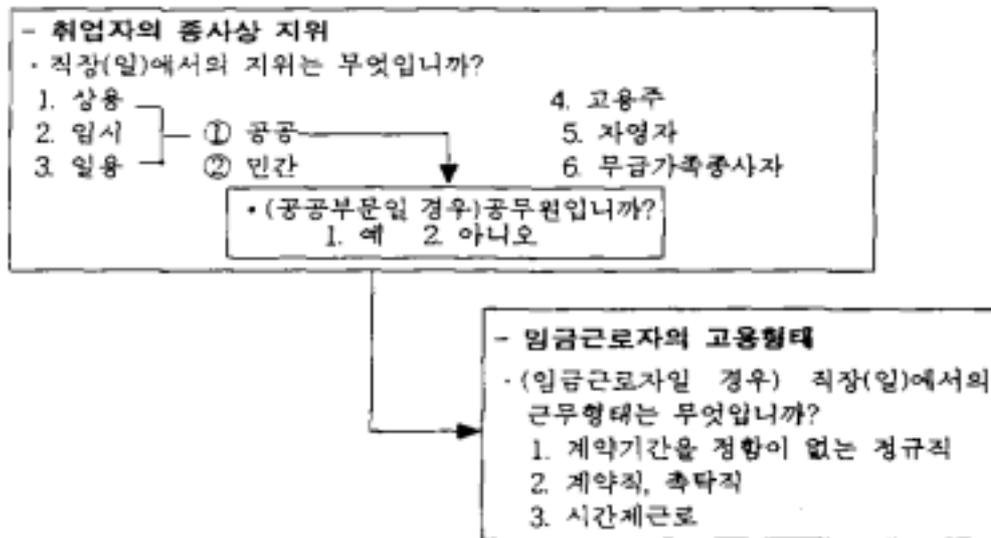
상용근로자들 중 상당수를 임시근로자로 계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지침서에 따르면 계약을 정하지 않고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여부나 의료보험 혜택여부를 추가적으로 질문하여, 만약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임시근로자로 구분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대다수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상용근로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임시근로자에 속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 때문에 1999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 등 비정규직 계층의 비중이 50%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노동시장이 유연한(flexible) 나라보다도 더욱 유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조사표를 개편하기 이전에 각 통계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통계적 정의를 통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느 기관의 정의가 더욱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며, 이에 대한 연구는 각 통계기관과 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념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조사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통계분류를 완전히 무시하고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설문항목으로 전면 개편하느냐, 아니면 현재의 분류를 남겨두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자료에 대한 시계열의 연속성을 보전하는 것도 여러 목적의 연구를 위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후자의 방안을 중심으로 설문항목을 개편하고자 한다.

시간제근로, 계약직·축타직 등이 다양한 고용형태로서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를 추가하여 조사항목을 개편한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9]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질문흐름도



2. 다양한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의 개발

가.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 개발의 필요성

실업률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⁵⁾. 먼저 실업률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서 사용된다. 이 경우 실업률은 단기적인 경제상황의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고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공적인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실업률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의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한 경제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잠재노동력 및 노동력의 활용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한다. 넷째, 실업률은 중·장기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성공여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순조로운 경제성장 및 발전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반대로 실업률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제성장 및 발전과정의 한계 또는 정부정책의 실패를 반증하게 된다. 다섯째, 실업률은 국가간 또는 지역간 경제 및 고용상황을 비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필요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실업의 개념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에 추가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하에서 정부정책이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실업자 중심의 정책위주에서 실업될 확률이 높은 계층 또는 실제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주변 계층의 범위까지도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여야 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여러 차원의 노동력의 불완전활용 관련지표의 작성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나. 외국의 사례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이미 절감하고 다양한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를 작성하는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의 개발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보기로 하자.

1) 미국

다양한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이를 시행에 옮긴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1994년부터 U-1부터 U-6까지 6가지의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⁶⁾,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4-22>와 같다.

여기서 구직 단념자(discouraged worker)는 현재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으면 근로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적 요인⁷⁾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자이며 실제로 지난 1년 사이에 구직활동을 한 자로 정의된다.

한계근로자(marginally attached worker)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적당한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으면 일할 수 있고, 최근에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한계근로자는 통상적인 구직단념자와 유사하지만 범주가 구직단념자 보다 포괄적이다. 즉 한계근로자의 범주에는 구직단념자 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학업,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포함된다.

<표4-22> 미국의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

	정 의	비 율 ¹⁾
U-1	15주 이상 실업자/경제활동인구	1.0
U-2	[직장상실자 + 임시직 직장유 그만둔 자]/경제활동인구	1.7
U-3	실업자/경제활동인구(공식적인 실업률 통계)	4.1
U-4	[실업자 + 구직단념자]/[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4.3
U-5	[실업자 + 한계근로자]/[경제활동인구 + 한계근로자]	4.9
U-6	[실업자 + 한계근로자 + 경제적 이유의 단시간근로자]/[경제활동인구 + 한계근로자]	7.0

주 : 1) 1999년 9월 기준임.

자료 : Bregger & Haugen(1995).

2) 멕시코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유사하게 여러 가지의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중 멕시코는 IMF 자금지원을 신청하였고 급격한 경제변화와 고용악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경험을 겪었던 나라로서, 공식적인 실업의 정의에서 파생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표4-23>과 같이 R-1에서 R-11까지의 11가지 다양한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를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1994년 2/4분기 현재로 보면, 공식적인 실업률인 R-1의 3.5%에서 R-8의 23.9%까지 큰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실업자에 최저 임금액 미만을 얻은 취업자를 합산한 R-9는 11.5%로 빈곤인구의 추정에 대한 공식적인 실업률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4-23> 멕시코의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

		(단위 : %)
	정 의	비율 ¹⁾
R-1	공식실업률(open unemployment rate)	3.5
R-2	대체실업률(alternative unemployment rate) = (R-1 + 취업대기자(4주 이내) + 잠재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잠재실업자)	6.1
R-3	실질경제압박률(real economic pressure rate) = (R-1 + 부업구직자) / 경제활동인구	4.4
R-4	실질선호압박률(real preference pressure rate) = (R-1 + 새 직장을 찾는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5.3
R-5	일반압박률(general pressure rate) = (R-1 + 구직활동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6.3
R-6	(R-1 + 15시간 미만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7.9
R-7	(R-1 + 경제적 이유의 35시간 미만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6.1
R-8	(R-1 + 35시간 미만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23.9
R-9	(R-1 +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11.5
R-10	(경제적 이유의 35시간 미만 취업자 +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35시간 이상 취업자 + 최저임금의 1-2배를 받는 취업자) / 취업자	14.1
R-11	(R-1 + 잠재실업자 + 취업대기자 + 구직활동 취업자 + 15시간 미만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잠재실업자)	13.3

주 : 1) 비율은 1994 2/4분기 기준임.
 자료 : Fleck and Sorrentino(1994).

다. 다양한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 개발방안

다양한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미국과 멕시코의 사례를 응용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여건은 실업률이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문제,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 측면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포함한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먼저 <표4-24>와 같이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를 K-1에서부터 K-7까지 7가지 형태로 나누는 방법을 제안한다.

K-1은 현재 장기실업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장기실업률을 추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장기실업자의 문제는 외국보다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사회 안정망 구축이 미약한 현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현 시점에서 장기실업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많은 OECD국가들이 장기실업의 고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 장기실업은 사후적인 치유책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실업률은 일반실업률과는 달리 일단 높아진 후에는 경기가 다소 상승하더라도 바로 낮아지지 않는다. 즉 총실업률은 경기변동에 다소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반해 장기실업률은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일정기간 계속 유지 내지 상승하다가 호황이 장기간 지속될 때에야 비로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K-2는 노동시장적 이유에 의해 직장을 그만 둔 자(job losers)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직장의 휴·폐업,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그리고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경영 악화로 인하여 실업이 된 자들로서 주로 경기적 요인이나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이다.

K-3은 공식실업률(open unemployment rate)이다.

K-4는 구직활동기간이 4주인 경우의 실업률 지표이다. 주로 OECD 회원국 등 외국과의 실업률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5는 포괄적인 실업률 지표이다. 구직단념자의 경우 경기가 회복되면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 노동공급압박(labor supply pressure)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6은 고용의 안정성(Job security)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여기서 불완전 취업자란 "노동시간적 사유에 의해서 36시간 미만 일한 근로자나 일시휴직자 중 현재 하는 일을 더욱 늘리거나 추가취직 및 전직을 원하고 있는 자"로 정의한다. 물론 앞에서 논한 불완전취업자의 통계적 기준치에 합치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중 실제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는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하여야 하겠으나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조사표에는 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수치가 다소 과대추정(over estimate)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이들 중 약 93%가 비농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2.5%로 나타나 비농가부문에서의 임금근로자 형태로 종사하는 취업자 계층에서 불완전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7의 경우는 미래에 실업자로 될 확률이 높거나 실제 실업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계층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의의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라고 말할 수 있겠다.

<표4-24>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의 개발방안

		(단위 : %)
	정 의	비율(1998)
K-1	12개월 이상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¹⁾	0.1
K-2	비자발적 전직실업자 ²⁾ /경제활동인구×100	4.3
K-3	1주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공식적인 실업률 통계)	6.8
K-4	4주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
K-5	[1주 실업자+구직단념자]/[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100	8.9
K-6	[1주 실업자+불완전취업자]/경제활동인구×100	10.4
K-7	[1주 실업자+불완전취업자+구직단념자]/[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100	12.4

주 : 1)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장기실업자 비중(=12개월 이상 실업자/전체실업자×100)을 국제비교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이 기준에 의하면 1998년도 현재 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2) 이직시기가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중 '직장의 휴·폐업',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등이 이에 속함.

3) 구직단념자는 15-6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함.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를 분류하여 그 비율을 추정한 결과 1998년 연평균 공식실업률(K-3)은 6.8%이었으나 장기실업률(K-1)의 경우는 0.1%,

그리고 K-5는 8.9%를 기록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K-7은 12.4%로 나타나 공식실업률인 K-3에 비해 약 1.8배 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실업통계 개선을 위한 설문지 개정방안

실업통계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바로 정부의 정책을 평가(evaluation)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표만으로도 실업대책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의 역할은 상당 정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1999년 6월 기준)의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설문 항목수는 총 5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항목은 다음의 <표4-25>에 제시되어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과 2 참조).

<표4-2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조사항목(1999년 6월)

	항목수	내 용
인 적 사 항	6	가구원 설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상태
확 인 항 목	5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의 구직여부, 1개월간의 구직여부
취 업 자	13	취업시간,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 추가취업 및 전직희망 여부, 추가취업 및 전직시기, 다른 일의 구직유무, 다른 일을 찾아본 이유,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현 직장의 시작시기, 현 직장의 구직방법, 현 직장의 구직소요기간
실 업 자	10	취업가능성 여부, 구직하기 직전의 주된 활동, 구직이유, 구직활동기간, 구직경로,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 희망직종, 희망소득, 취업실패 이유
비경제활동인구	12	취업희망여부, 취업희망 이유, 희망근무형태, 희망직종, 비구직 이유, 취업가능성 여부, 일할 수 없었던 이유, 최종 구직시기, 구직방법, 구직활동기간, 구직활동횟수, 향후 1년 이내 구직의사
공 통 사 항	11	생계유지방법(가구주만 해당), 직업훈련유무 및 기간, 실업급여 유무 및 기간, 최종학교 졸업연도, 직장 이직 시기, 전 직장의 산업, 전 직장의 직업, 전 직장의 종사상 지위, 전 직장의 사업체 규모, 전 직장의 이직이유, 전 직장의 총소득

주 : * 표시는 경제활동인구조사표에는 없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표에만 있는 항목임.

하지만 정부는 실업의 구조적 분석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고용통계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서 실업대책기금을 활용하여 CAPI 조사용 노트북 컴퓨터 500대를 일괄 구입하여 1998년 10월부터 시험조사를 걸쳐 금년 1월부터 현장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등 우리의 실험통계조사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개선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필기구를 이용하여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였던 기존의 조사방식에서는 설문조사 항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CAPI 도입으로 인하여 이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의 실업통계 질문 항목수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설문 항목수는 1차적으로 100개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외국의 경우처럼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를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 때 CAPI 도입과 관련한 설문지 개편과정에 몇 년의 연구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CAPI 방식의 도입과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항목과 개정되어야 할 항목을 중심으로 질문흐름도를 제시하겠다. 설문항목의 개편방향은 인적사항 항목, 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중심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우선적으로 추가된 조사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가. 인적사항 및 경제활동상태 구분을 위한 질문지

먼저 인적사항에 대한 항목의 경우 신규학졸자의 노동력 공급규모와 청소년층의 노동공급 현황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군복무 여부 및 재학생의 경우 학년을 질문하는 항목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배려 대사의 선정이나 소득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의 재산수준과 무업가구를 파악하는 항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림4-10] 인적사항의 질문지(안)

1. 가구원번호	2. 가구주와의 관계	3. 무업가구	4. 성별	5. 군복무 여부	
일련번호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1. 가구주 2. 배우자(이하 4로 감) 3. 미혼자녀 4. 미혼형제, 자매 5. 부모(장인, 장모) 6. 조부모 7. 기타 친인척 8. 동거인	현재 귀하의 가족 중 직장(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1. 남편 4. 자녀 2. 아내 5. 기타 3. 부모 6. 없음	1. 남자 2. 여자 (6으로 감)	1. 필 2. 면제 3. 미필	
6. 교육정도				7. 혼인상태	8. 주거소유형태 및 액수
6-1. 학력	6-2. 계열	6-3. 수학여부	6-4. 학년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자택 2. 전세 3. 월세 4. 기타 평가금액 : <input type="text"/> 만원
0. 무학	1. 인문사회	1. 졸업(8로감)	1. 1학년		
1. 초등학교	2. 예체능	2. 재학	2. 2학년		
2. 중학교	3. 사범	3. 중퇴(8로감)	3. 3학년		
3. 고등학교	4. 기타	4. 휴학	4. 4학년		
4. 전문대 (초급대)	(상농공수산)		5. 5학년		
5. 대학	5. 자연		6. 6학년		
6. 대학원	6. 의학				

다음으로 각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기 위한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물론 일시해고자(lay-off)등을 구분하여 이를 취업자에 분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타 경제활동상태로 분류해야 할 것인가를 논해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시해고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해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후 설문지를 개정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구분은 이전의 경제활동인구 조사표와 동일하다.

[그림4-11]경제활동상태의 질문지(안)

지난 1주간의 활동상태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9.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다? 1. 일하였음(가1번으로) 6. 통 학 2. 일시휴직 7. 연 로 3. 구직활동 8. 심신장애 4. 육 아 9. 기타() 5. 가 사	11. 지난 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있었음 20. 없었음. ↳ 왜 지난 주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11. 일시적 병, 사고 12. 연가, 교육 13. 가족적 이유 14. 노사분규 15. 조업중단 16. 기타()
지난 1주간의 취업여부	지난 4주간의 구직활동여부
10. 지난 1주간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구원의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있었음 2. 무급가족종사자 3. 없었음	13. 지난 1개월 내에 직장(일)을 구해보았습니까? 1. 구해보았음(나1번으로) 2. 구해보지 않았음
지난 1주간의 구직활동여부	지난 4주간의 구직활동여부
12. 지난 주에 직장(일)을 구해보았습니까? 1. 구해보았음(나1번으로) 2. 구해보지 않았음	13. 지난 1개월 내에 직장(일)을 구해보았습니까? 1. 구해보았음(나1번으로) 2. 구해보지 않았음(다)번으로)

나. 취업자에 대한 질문지

취업자에 대해서는 먼저 불완전취업자 사항과 취업자의 직장관련사항,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관련사항, 그리고 직업훈련, 실업급여 수혜여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등 정부의 실업대책과 관련한 상세한 질문항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항목의 경우 앞에서 논했듯이 노동시장적 이유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중 추가취업을 위한 구직여부 뿐만 아니라 추가취업의 가능성을 질문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질문항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용구조의 다양화와 관련하여서는 임금근로자의 구분을 근로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실업급여,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항목을 보다 자세하게 질문해야 할 것이다. 한편 취업자들의 직장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존의 중분류(2-digit)에서 소분류(3-digit) 체계로 산업과 직업을 세분하여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보다 가치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세분류(5-digit) 체계로 세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세세분류 체계로의 전환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분류(3-digit) 체계로 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4-12] 취업자의 질문지(안)

부업유무	추가취업 구직여부	사업체 규모
가1. 지난 주 동안 주업 이외에 다른 일을 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가6. 지난 주에 실제로 일을 더하거나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보았습니까? 1. 예 2. 아니오(가9번으로)	가15. 다니시는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1. 1~4인 6. 100~200인 2. 5~9인 7. 300~499인 3. 10~29인 8. 500~999인 4. 3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근로시간	추가취업가능성 여부	최종학교 졸업연도
가2. 그 일을 지난 주에 몇 시간 일했습니까? 주업 <input type="text"/> 시간 부업 <input type="text"/> 시간 총계 <input type="text"/> 시간 1.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12번으로) 2. 1~35시간 3. 36시간 이상(가4번으로)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	가7. 만약 일자리가 주어준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가9번으로)	가16. 최종학교는 언제 졸업하였습니까?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가3.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십니까? ◆ 그렇함. ↳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는? 11. 건강 12. 육아 13. 가사 14. 통학 15. 본인이 원해서 16. 평균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17. 일거리가 없어서 18. 기타() ◆ 그렇지 않음. ↳ 그러면 지난 주에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는? 21. 일시적 병, 사고 22. 일기불순 23. 연가 24. 교육 25. 육아 26. 가족적 이유 27. 예비군훈련 등 28. 노사분규 29. 사업부진 30. 기타()	가8. 다른 일을 찾아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지금의 일을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2. 기술, 자격에 더 잘 맞는 일을 찾아서 3. 임금수준이 더 높은 일을 찾아서 4. 집에서 더 가까운 일을 찾아서 5. 건강 등에 더 잘 맞는 일을 찾아서 6. 근로조건이 더 좋은 일을 찾아서 7. 다른 지역의 일을 찾아서 8. 기타()	가17. 현 직장(일)은 최종학교 졸업 후 처음 직장입니까? 1. 예 2. 아니오
	추가취업희망 이유	현 직장의 시작시기
	산 업	가18. 현 직장(일)은 언제 시작하였습니까?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가9.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input type="text"/>	현 직장의 구직기간
	직 업	가19. 현 직장(일)을 구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input type="text"/> 월
	가10. 무슨 일을 하십니까? ◆ 일의 종류 ◆ 직명(직위) <input type="text"/>	현 직장의 구직방법
	공사상 지위	가20. 현 직장(일)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했습니까? 1. 공공직업소개소 등록 2. 민간취업알선기관 등록 3. 취직시행(이하 가22로) 4. 신문, 잡지, PC, 책보 등 구인·구직정보 5. 채용박람회나 취업박람회 6. 학교, 학원 추천 7. 사업체 방문 8. 친구, 친지 소개 9. 자영업 준비 0. 기타()
	가11.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1. 고용주 } 4. 상용 2. 자영업자 } (가15번으로) 5. 임시 3. 무급가족종사자 } 6. 일용	직업소개소 종류
추가취업 및 전직희망 여부	가12. 직장(일)의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가14번으로)	가21. 직업소개소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지방노동권서(고용안정센터) 2. 인력은행 3. 기타 공공기관(공단, 상공회의소 등) 4. 시군구 취업센터 5. 사설유료직업소개소 6. 사설무료직업소개소(YMCA, YWCA 등) 7. 기타()
가4. 지난 주에 다른 일을 원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 원하셨습니까?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2.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3.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 4.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가9번으로)	공무원여부	소 득
	가13. 공무원입니까? 1. 예 2. 아니오	가22. 현재 직장(일)에서 받고 있는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연 간 <input type="text"/> 만원 *올 중 하나만 선택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가14. 직장(일)에서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1.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2. 계약직, 추방직 3. 시간제근로	

직업훈련여부 가23. 지난 2년 동안 1주일 이상의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현재 받고 있음 2. 과거에 받은 적이 있음 3. 없음(가28로)	직업훈련기간 가26. 직업훈련을 받은 기간은 총 얼마입니까? <input type="text"/> 주	실업급여 수혜기간 가29.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총 얼마입니까? <input type="text"/> 주 (가31로)
직업훈련 종류 가24. 직업훈련(교육)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노동부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2. 시군구의 고용촉진훈련 3. 기타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4. 기업체의 재직자 훈련 5. 정부지원 양성훈련(1년 이상) 6. 개인 수강 7. 기타()	직업훈련비 부담자 가27. 귀하의 직업훈련(교육)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1. 본인 부담 2. 기업체 부담 3. 정부 부담 4. 본인과 기업체 공동부담 5. 본인과 정부 공동부담 6. 기업체와 정부 공동부담 7. 기타()	실업급여 비수혜 이유 가30. 만약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실업자가 된 적이 없음 2. 받을 조건(자격)이 안되었음 3. 조건은 되었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음 4. 조건은 되었지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받지 못했음 5. 조건은 되었지만 돈 없어서 못받았음 6. 기타()
직업훈련 이수목적 가25.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추가취업 및 전직을 위해서 2. 소독향상 3. 개인능력 배양 4. 현 직장에서의 고용안정, 승진 5. 특별히 다른 할 일이 없어서 6. 훈련수당 취득 7. 기타()	실업급여 수혜여부 가28. 지난 2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가30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가31.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까? 1. 현재 참여하고 있음 2.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음 3. 없음
이직시기 가32.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둔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 1년 미만 2. 1년 이상~2년 미만 3. 2년 이상(질문 끝) 4. 없었음(질문 끝)	직장의 조직형태 가36. 전 직장(일)의 조직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가38로) 공무원여부 가37. 공무원이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이직이유 가40. 그 직장(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개인·가족적 이유로 2. 건강상 이유로 3. 정년퇴직, 연로 4.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5. 직장의 흥·폐업 6. 명예·조기퇴직 7. 정리해고 8. 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9.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0. 기타()
산 업 가33.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input type="text"/>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가38. 전 직장(일)에서의 근무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1.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2. 계약직, 촉탁직 3. 시간제근로	소 득 가41. 전 직장(일)에서 받았던 총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연 간 <input type="text"/> 만원 *하나만 선택
직 업 가34.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 일의 종류 ◆ 직명(직위) <input type="text"/>	사업체 규모 가39. 다니셨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1. 1~4인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29인 8. 500~999인 4. 3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퇴직금 수혜여부 가42. 퇴직시 '퇴직금'을 받았습니까? 1. 예 2. 아니오(질문 끝) 퇴직금 수령금액 가43. 지금받은 퇴직금은 얼마였습니까? <input type="text"/> 만원 * 질문 끝
종사상 지위 가35. 전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1. 고용주 4. 상용 2. 자영자 5. 임시 3. 무급가족종사자 6. 일용 (가39로)		

다. 실업자에 대한 질문지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대책의 평가항목을 우선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실업자들의 실업급여 관련항목과 직업훈련 관련항목 등에 대해서 설문문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업자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직장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일궁합(job-match)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4-13] 실업자의 질문지(안)

취업가능성	구직방법	희망직종	
<p>나1.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다11로)</p>	<p>나4.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일)을 구했습니까? 1. 공공직업소개소 등록 2. 민간취업알선기관 등록 3. 취직시험 4. 신문, 잡지, PC, 벽보 등 구인·구직정보 5. 채용박람회나 취업박람회 6. 학교, 학원 추천 7. 사업체 방문 8. 친구, 친지 소개 9. 자영업 준비 0. 기타()</p>	<p>나8.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1. 관리직 5. 농림어업직 2. 전문직·기술직 6. 기능직 3. 사무직 7. 단순노무직 4. 서비스·판매직</p>	
<p>직장을 원하는 이유</p>			
<p>나2. 직장(일)을 원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실직에 따라 새로운 직장(일)을 찾아 2. 생활이 어려워져서(가구주 실직, 가구소득 감소 포함) 3. 생활비가 늘어나서 4. 가사나 육아부담이 줄어들면서 5.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6. 경제적 자립이나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7.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려고 8.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9. 기타()</p>	<p>희망고용형태</p>	<p>나9. 최소한 얼마 정도의 소득을 원하십니까?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p>	
<p>구직활동기간</p>	<p>나5. 원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 2. 비임금근로(나7로)</p>	<p>희망소득</p>	<p>취업실패사유</p>
<p>나3. 구직활동을 한 시기는 얼마나 됩니까? <input type="checkbox"/>개월</p>	<p>나6. 원하는 직장(일)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1.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2. 계약직, 촉탁직 3. 시간제근로</p>	<p>나10. 지난 주(달)에 직장(일)을 구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2.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3. 근처에 일거리가 없어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맞지 않거나 몸이 불편해서 6. 남자나 여자만 원해서 7. 구직결과를 기다리기 때문에 8.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9. 자영업 준비부족 0. 기타()</p>	<p>나7. 주로 하는 일을 원합니까? 물품이 하는 일을 원합니까? 1. 주로 하는 일 2. 물품이 하는 일</p>

희망근무형태	직업훈련 이수 목적	실업급여 수령기간
<p>나11. 현재 생계유지는 주로 어떤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구주만 응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소득 배우자 이외 가구원의 소득 친·인척 보조 저축, 퇴직금, 부동산을 처분 자산소득(이자, 임대료 등) 각종 연금 빚을 얻어서 실업급여 생활보호 등 정부보조금 기타() 	<p>나14.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소득향상 개인능력 배양 현 직장에서의 고용안정, 승진 특별히 다른 할 일이 없어서 훈련수당 취득 기타() 	<p>나19. 현재 받은 기간은 총 얼마입니까? <input type="checkbox"/>주</p> <p>실업급여 수급시 어려운 점</p> <p>나20. 실업급여 수급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의 내용을 잘 모름 신청과정이 어렵고 불편함 담당공무원의 불친절 기타() 없음 <p>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p>
<p>직업훈련여부</p> <p>나12. 지난 2년 동안 1주일 이상의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받고 있음 과거에 받은 적이 있음 없음(나17로) 	<p>직업훈련비 부담과</p> <p>나16. 귀하의 직업훈련(교육)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하십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부담 정부 부담 본인과 정부 공동부담 가족부담 기타 	<p>나21. 만약 없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신청자격이 안되었음 실업급여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음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음 기타()
<p>직업훈련 종류</p> <p>나13. 현재 받고 있거나 받았던 직업훈련(교육)의 종류는 무엇입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부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시군구의 고용촉진훈련 기타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정부지원 양성훈련(1년 이상) 개인 수강 기타() 	<p>실업급여 수혜여부</p> <p>나17. 지난 2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습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받고 있음 과거에 받은 적이 있음 없음(나21로) 	<p>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p> <p>나22.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아니오(나24로)
	<p>실업급여 수혜기간</p> <p>나18. 받을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input type="checkbox"/>년<input type="checkbox"/>월<input type="checkbox"/>일 -<input type="checkbox"/>년<input type="checkbox"/>월<input type="checkbox"/>일</p>	<p>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p> <p>나23. 그 기간은 언제입니까? <input type="checkbox"/>년<input type="checkbox"/>월 - <input type="checkbox"/>년<input type="checkbox"/>월</p>

[그림4-14] 비경제활동인구의 질문지(안)

취업희망여부	희망근무형태	희망직종
다1. 지난 주에 직장(일)을 원하셨습니까? (※ 15~64세 전일제출만 응답) 1. 예 2. 아니오(다11번으로)	다3. 주로 하는 일을 원합니까? 틈틈이 하는 일을 원합니까? 1. 주로 하는 일 2. 틈틈이 하는 일	다5.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1. 관리직 2. 전문직·기술직 3. 사무직 4. 서비스·판매직 5. 농림어업직 6. 기능직 7. 단순노무직
취업희망이유	희망고용형태	희망소득
다2. 직장(일)을 원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생활이 어려워져서(가구주의 실직, 가구주 소득감소 포함) 2. 생활비가 늘어나서 3. 가사나 육아부담이 줄어들면서 4.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5. 경제적 자립이나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6.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려고 7.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8. 기타 ()	다4. 원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 2. 자영업근로(다6로)	다7. 최소한 얼마정도의 소득을 원하십니까?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취업가능성
	다5. 원하는 직장(일)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1.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2. 계약직, 휴학직 3. 시간제근로	다8.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다11번으로)
비구직이유	직업훈련여부	실업급여 수혜여부
다9. 지난 주에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교육, 기술, 경력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맞지 않거나 몸이 불편해서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 상수가 대기, 얼마 후 일하게 되기 때문에 8. 육아, 가사 9. 휴학 0. 기타 ()	다12. 지난 2년 동안 1주일 이상의 직업 훈련(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현재 받고 있음 2. 과거에 받은 적이 있음 3. 없음(다17로)	다17. 지난 2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다21로)
	직업훈련 종류	실업급여 수혜기간
	다13. 현재 받고 있거나 받았던 직업훈련(교육)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노동부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2. 시군구의 고용촉진훈련 3. 기타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4. 정부지원 양성훈련(1년 이상) 5. 개인 수강 6. 기타 ()	다18.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input type="text"/> 주
		실업급여 수급시 어려운 점
		다19. 실업급여 수급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1. 고용보험의 내용을 잘 모름 2. 신청과정이 어렵고 불편하여 3.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하여 4. 기타 () 5. 없음
지난 1년간 구직활동여부	직업훈련 이수 목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다10. 지난 1년간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다14.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취업 2. 소득향상 3. 개인능력 배양 4. 현 직장에서의 고용안정, 승진 5. 특별히 다른 할 일이 없어서 6. 훈련수당 취득 7. 기타 ()	다20. 만약 없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서 2.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신청자격이 안되었음 3. 실업급여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음 4.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음 5. 기타 ()
희망근무형태	직업훈련기간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다11. 현재 생계유지는 주로 어떤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까? (※ 가구주만 응답) 1. 배우자의 소득 2. 배우자 이외 가구원의 소득 3. 전·연금 보조 4. 직축, 퇴직금, 우동산을 차분 5. 자산소득(이자, 임대료 등) 6. 각종 연금 7. 빚을 얻어서 8. 실업급여 9. 생활보호 등 정부보조금 0. 기타 ()	다15. 직업훈련을 받은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input type="text"/> 주	다21.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다22으로)
	직업훈련비 부담자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
	다16. 귀하의 직업훈련(교육)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1. 본인 부담 2. 정부 부담 3. 본인과 정부 공동부담 4. 가족부담 5. 기타	다22. 그 기간은 언제입니까?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월

이직시기	직장의 조직형태	이직이유
다22.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둔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 1년 미만 2. 1년 이상-2년 미만 3. 2년 이상(질문 끝) 4. 없었음(질문 끝)	다27. 직장(일)의 조직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다28로)	다31. 그 직장(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개인·가족적 이유로 2. 건강상 이유로 3. 정년퇴직, 연로 4.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5. 직장의 휴·폐업 6. 명예·초기퇴직 7. 정리해고 8.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9.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멸 악화 0. 기타()
산 업 다24.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사업제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공무원이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직 업 다25.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일의 종류 ◆ 직명(직위) □□□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다29. 직장(일)에서의 근무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1.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2. 계약직, 특약직 3. 시간제근로	소 목 다30. 직장(일)에서 받았던 총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월평균 □□□□□□만원 연 간 □□□□□□만원 *하나만 선택
종사상 지위 다26.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1. 고용주 2. 자영자 3. 무급가족 종사자 (다30으로) 4. 상용 5. 임시 6. 일용	사업체 규모 다30. 다니시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1. 1~4인 2. 5~9인 3. 10~29인 4. 30~49인 5. 50~99인 6. 100~299인 7. 300~499인 8. 500~999인 9. 1,000인 이상	퇴직금 수혜여부 다33. 퇴직시 퇴직금을 받았습니까? 1. 예 2. 아니오(질문 끝) 퇴직금 수령금액 다34. 지급받은 퇴직금은 얼마였습니까? □□□□□□만원 * 질문 끝

주석 1) 최경수, 『단시간근로자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3쪽 참조.

주석 2) 최경수, 『단시간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쪽 참조.

주석 3) 제2장에서 논했듯이 불완전취업자 중 비가시적 불완전취업자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통계적 정의는 가시적 불완전취업자에 국한한다.

주석 4) 일반적으로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라고도 칭한다.

주석 5) 금재호, 『도시근로자의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120~121쪽 참조.

주석 6) 미국은 1976년부터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를 U-1부터 U-7까지 7가지를 발표하여 왔으나, 1994년 CPS가 전면 개편되면서 통계는 U-1부터 U-6까지 6가지로 변경하였다.

주석 7) 노동시장적 요인(job-market-related reason)에는 직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the belief that no work was available), 구직활동을 해도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the belief that searching for work would be unsuccessful), 필요한 기능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여(the belief that one lacks the requisite skill or education), 차별 대우 때문에(the belief that one would face discrimination at some point in the job search) 등이 포함된다.

第3節 失業統計의 信賴性 및 效率性 提高方案

1. 조사요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방안

표본조사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표본오차의 크기는 현장조사시 조사요원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고 실업관련 기초통계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계부서의 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가 양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 실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하여 약 550명의 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무원 6~9급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신분이 보장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통계 선진국들의 조사요원은 임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는 약 1,800명의 조사요원¹⁾이 있으며, 이 중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지도원(Supervisor)과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임시직 조사원으로 구성되고 지도원에게는 조사원에 대한 감독 기능이 부여된다. 일본과 네덜란드에서도 조사원은 임시직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 조사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을 경우는 신분이 보장된 조사원이 응답자 가구를 방문함에 따라 응답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불성실한 조사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조사 오류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조사내용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가 비협조적임에도 불구하고 표본가구의 조사율은 99.8~99.9%로 매우 높는데 응답자들의 조사태도가 비교적 협조적인 외국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조사요원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5년간의 고정표본에 조사요원도 정규직으로 몇 년간 동일한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항목을 질문하기 때문에 조사요원과 응답자간의 친밀도가 매우 높아지고 이는 조사요원의 응답자에 대한 과신으로 이어져 조사항목의 세세한 질문없이 전월과 변동없는 것으로 작성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결과 표본이 개편되면 새로운 가구의 방문시 과거 정보의 부재에 따라 상세하게 질문하면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사의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매년마다 호봉상승 및 임금인상률이 적용됨과 동시에 각종 수당의 지급은 물론 연금 등 제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는 고비용 조사이다. 반면에 임시직은 일당제로 훨씬 저렴하게 조사가 수행될 수 있으며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조사원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현장조사원의 초임은 시간당 약 8.5달러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시간당 14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중앙전화조사원은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네덜란드는 조사표의 완성도에 따라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조사가구수를 완성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 이는 조사된 자료의 신뢰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조사비용의 절약, 그리고 조사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요원의 신분을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550명의 조사원이 모두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나 외국의 경우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조사원(field staff) 중 일부를 전문가로 고용하고 있다.

둘째, 조사요원의 신분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조사원이 바깥으로써 조사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시계열 단절의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이보다는 부정확한 통계의 지속적인 생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셋째, 조사에 대한 유인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임금수준을 호봉 및 임금인상률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닌 업무성과에 기초하여 조사의 완성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비용의 절감효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매월 일정가구수에 대하여 조사내용 확인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원(supervisor)을 두어 조사원이 지도원에 의하여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CAPI 조사방식의 도입

가. 우리나라 조사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앞서 논의했듯이 조사요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항목을 질문하여 응답을 받는 면접타게식 조사방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고 있는 각종 표본조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 응답자의 대부분이 "왜 하필이면 우리집이나?" 라는 생각을 하며 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이다. 이는 일본과 미국 등 이른바 통계 선진국들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가작성 통계에 대한 높은 신뢰도, 그리고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내 가구원들의 협조적인 태도와 비교할 때 사뭇 대조적이다.

또한 현행 조사방법으로는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오류뿐만 아니라 자료의 손상이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문지 조사방식으로 인한 제한된 질문조사 항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의 작성과 아울러 통계의 시의성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 하겠으나, 실제적으로 조사에서부터 공표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외국과 비교하였을 경우 우리나라는 약 30~35일²⁾ 정도로 미국과 일본의 20~25일 등 통계 선진국들에 비하여 소요기간이 길다. 이같은 차이는 행정상 처리절차에서 필요 이상으로 소요되는 시간낭비와 아울러 설문조사의 결과자료를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고 입력에 대한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조사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통계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사방식인 CAPI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CAPI 조사방식은 기본적으로 조사요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조사표의 문항을 늘려 가능한 상세하게 질문하도록 하고, 응답에 따라 조사항목간의 이동이 자동적으로 넘어갈(skip)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조사현장에서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가 생성되며, 조사결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어 결과공표의 시의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급증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짐에 따라 정부는 실업의 구조적 분석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고용통계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서 실업대책기금을 활용하여 CAPI 조사용 노트북 컴퓨터 500대를 일괄 구입하여 1998년 10월부터 시험조사를 걸쳐 금년 1월부터 현장조사에 활용하고 있으나, 조사표는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표』를 변동없이 적용함에 따라 CAPI 방식의 도입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CAPI 조사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조사결과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조사표가 CAPI 방식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 CAPI 방식에도 알맞는 설문조사표의 설계(coordination)방안을 모색하겠다.

나. 외국의 사례

1) 미국

미국은 1994년에 CPS가 전면 개편되면서 CAPI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지의 문항수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산업과 직업, 교육 수준 등에 걸쳐 200개 이상의 질문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응답자에 대해 불필요한 문항에 대해서는 넘어가는(skip)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문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실제로 설문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개인당 평균 6분이 소요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물론 대가족이나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는 시간이 더 걸렸고, 독신 가구나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살고 있는 가구는 시간이 덜 소요되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CAPI 도입 이후 고도로 훈련된 조사원들은 질문지 대신 설문항목이 프로그램으로 내장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소지하여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조사질문을 읽고 응답자의 질문을 입력한다. 그러면 입력에 따라 알맞은 다음 질문이 화면에 나타난다. 이후 조사 종료된 즉시 조사된 자료는 조사국 본부로 모뎀을 통하여 전송된다.

새로 개편된 CPS는 실업자나 퇴직자,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사자체가 부담이었다는 불평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구 CPS에서는 자신과 관련없는 항목도

질문에 응답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질문지에서는 만약 응답자가 정년퇴직자라고 보고하면 이들이 직장을 원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바로 넘어간다. 만약 그들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사는 종결되고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한편 1994년 CAPI 도입을 위해 질문지의 개정과 개발과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으며,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8년 이후부터 BLS와 조사국은 새로운 질문문장과 질문순서(sequence)를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질문지 개정안이 개발되었고 2단계로 걸쳐서 현장검증을 받았다. 2번의 검증 모두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와 무작위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실시되었으며, 1단계에서는 72,000명, 2단계에서는 32,00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질문지 내용에 대한 평가는 무응답항목, 응답률, 응답자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 모니터링에 대한 분석 등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질문지가 완성되었다.

1993년도 CAPI 방식을 이용한 새로운 설문지와 CPS 자료의 병행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을 때, 전체 추정의 수준과 각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가 후자의 경우보다 전체 실업률이 약 0.5%포인트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성별 차이도 발생하였다. 남성의 경우 취업자 비율은 CPS보다 병행조사에서 낮았고, 여성은 병행조사의 취업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CAPI 방식 도입과 설문지의 확장의 결과로 개선된 것 중 중요한 것은 구 CPS에서 지니고 있었던 한계근로자(marginal worker)와 구직활동자들에 대한 낮은 응답률을 많이 해소했다는 점으로서 새로운 조사질문지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시장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히 끌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캐나다

캐나다의 노동력조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1994년 이후 CAPI 방법을 도입하였다. 조사 수행방법도 현장방문조사와 전화방문조사를 모두 실시하고 있다. 조사원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질문지에서는 응답자의 응답에 따라 자동적으로 각각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하여 질문이 진행된다.

컴퓨터를 도입한 후 노동력조사의 자료편집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편집도 조사도중 할 수 있게 되었다. 입력된 정보에 범위 밖의 값이 있거나 기존의 입력사항과 일관성이 없을 때, 정보를 수정하도록 조사원은 컴퓨터 화면상의 메시지를 통해 인지받는다. 그러나 만약 응답자가 답을 모르거나 대답을 거부하면 조사원은 질문을 넘어갈 수 있는(skip)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료는 일단 본부에 도착해서 편집과 대체(imputation) 과정을 받기 쉬워진다.

처리과정의 편집과 대체단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나 손실로 처리되는 정보항목을 확인하고 그 조건을 시정하는 일이 포함된다. 실제적으로 질문지 입력사항 중 대답에 대한 정보 유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확인 은 명백하게 비일관성이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오류를 최소화하고 비체계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적 통제(quality control)와 조사원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다. CAPI 도입과 관련한 조사표 재설계 방안

앞서 언급했듯이 CAPI 도입의 효과가 최대한 나타나기 위해서는 CAPI 방식에 알맞게 설문지를 재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질문문항수도 현재의 문항수보다 대폭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질문 문항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약 100문항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문항수를 외국처럼 200~300개 정도로 증가시키는 것이 최선이나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통계작성의 의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가 매우 낮으며 비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CAPI 조사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몇 년간의 체계적인 준비관정을 거쳤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철저한 준비작업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3. 무응답가구(non-response) 처리방안

가. 우리나라의 무응답가구 현황

통계조사에서는 처음 목표한 단위에 대해 또는 항목에 대해 완전한 조사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만약 조사대상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응답거부로 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단위 무응답(unit non-response)이라 한다. 그리고 조사표 내의 대부분 항목은 조사되었으나 몇몇 항목이 빠져있을 경우를 항목 무응답(item non-response)이라 하며, 이 때 얻어진 자료를 결측치(missing data)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조사된 경우 일부 항목에서의 항목 무응답률은 0.1%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미국의 6~7%나 캐나다의 20~30% 등 외국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단 일부항목에서 무응답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무시한 채 통계결과를 산출한다. 이는 낮은 수준의 무응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이 무응답자 처리의 무시로 인한 부분만큼 비표본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무응답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질문항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응답자의 심기를 자극할 수 있는 항목은 가능한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질문항목을 추가할 수 없으며 정부의 정책평가를 위한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질문항목에 추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무응답으로 인한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설문항목을 개편하기에 앞서 무응답자 처리에 대한 통계기법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조사응답률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미국에서는 비면접가구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하게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의 추정시 첫 번째 단계로 비면접가구에 대한 조정을 행하고 있다. 특히 조사응답률이 낮은 캐나다에서도 비면접가구에 대하여는 조정작업을 거쳐 통계가 작성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네덜란드의 통계국에서 개발한 시스템인 Blaise를 활용하며 시스템 내에서 무응답자 처리를 자동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무응답 처리방안과 대체기법(imputation)의 도입

앞서 주장했듯이 실업통계 조사에서 어떤 항목 또는 단위에 대해서 결측치의 존재는 불가항력적이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³⁾,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결측치를 아예 무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비표본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과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부여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결측치의 비율이 아주 낮을 경우에는 주로 대체법(imputation)을 사용한다.

대체법이란 결측치를 그냥 빈 칸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럴 듯한 값으로 넣고 통계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대체법을 자료에 적용할 때에는 대체계급(imputation class)이라 부르는 몇 개의 집단으로 중복되지 않게 분할한다. 이 계급을 만드는 데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라는 보조변수 정보를 이용한다.

대체법에는 Hot-deck imputation, Cold-deck imputation, Mean-value imputation, Random imputation, Regression imputation, Multiple imputation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Hot-deck imputation 기법의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추정결과 열포대체법이 다른 대체법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⁴⁾.

Hot-deck imputation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⁵⁾.

먼저 대체계급(imputation class)을 확정해 두고 만약 결측치가 발생할 경우 과거 조사자료나 특성이 비슷한 조사자료를 이용해서 대체를 한다. 각 계급과 각 항목에 대해 현 자료가 결측된 것과 이용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계급을 정하여 대체를 한다.

예를 들면 한 항목에 대해 h-번째 계급의 값을 과거자료에 의해 X_h 로 대체한다. 표본단위를 $I_1, I_2, I_3, \dots, I_9, I_{10}$ 으로 배열한다. 현 자료에서는 Y_{13}, Y_{16}, Y_{19} 밖에 이용할 수 없다고 하자.

이 때 대체된 값을

$Z_{i1}, Z_{i2}, Z_{i3}, Z_{i4}, Z_{i5}, Z_{i6}, Z_{i7}, Z_{i8}, Z_{i9}, Z_{i10}$,

이라 하자. 그러면

$$Z_{i1}=Z_{i2}=X_h$$

$$Z_{i3}=Z_{i4}=Z_{i5}=Y_{i3}$$

$$Z_{i6}=Z_{i7}=Z_{i8}=Y_{i6}$$

$$Z_{i9}=Z_{i10}=Y_{i9}$$

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일기여자(donor)의 값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가중치 부여의 세분화

가. 우리나라 가중치 부여방법의 현황과 문제점

경제활동인구조사는 30,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여 모집단의 수 및 구조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가중치 부여방법은 시도별 16개 지역을 동부와 읍부로 나눈 후, 이를 다시 성별로 나눈다. 따라서 각각에 대한 가중치부여 개수의 합계는 총 6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구해진다.

$$\text{가중치} = \frac{\text{모집단의 각 계층별 생산가능인구}}{\text{표본의 각 계층별 생산가능인구}}$$

그러나 가중치의 부여범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표본개편 이후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계층에서 시계열이 단절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특히 연령계층별 인구나 학력별 인구의 경우 모집단 규모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표본개편후 시계열이 단절되는 현상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1998년도 표본개편 전후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중치를 부여한 성별 인구의 추세에는 표본개편전과 후에도 추세변화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계층이나 학력의 인구수는 표본개편의 전과 후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6>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는 표본의 개편전이나 이후에도 남자와 여자의 인구 모두 오차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

<표 4-26> 성별 15세 이상 인구

(단위 : 천명, %)

	1997	전년대비		1998	전년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전 체	35,737	554	1.6	36,243	506	1.4
남 자	16,870	281	1.7	17,132	262	1.5
여 자	17,866	274	1.5	18,111	245	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그러나 연령계층별·학력별 인구의 경우는 표본개편 전후의 상황에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학력별 인구의 경우 교육부 자료⁶⁾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98년도 전문대 및 대학의 졸업생수는 약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대졸 이상의 인구가 무려 표본 개편전보다 9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약 50여만명의 오차가 발생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 결과 대졸 이상의 경우 1998년 들어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전체 고용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⁷⁾. 또한 중졸 이하의 경우는 오히려 표본 개편전보다 약 10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학력별 15세 이상 인구

(단위 : 천명, %)

	1997			1998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체	34,736	554	1.6	35,243	507	1.5
초졸 이하	8,089	8	0.1	7,659	-430	-5.3
중 졸	7,352	368	5.3	6,779	-573	-7.8
고 졸	13,893	-81	-0.6	14,462	569	4.1
대졸 이상 ¹⁾	5,403	259	5.0	6,342	939	17.4

주 : 1) 대졸 이상에는 전문대졸이 포함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또한 연령계층별 인구의 변동도 표본개편 전후의 오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10대, 20대 인구의 경우 출산력의 저하로 인하여 감소추세는 있으나⁸⁾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30대, 40대 인구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등 연령계층에 따라 오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다.

〈표 4-28〉 연령계층별 15세 이상 인구

(단위 : 천명, %)

	1997			1998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체	35,737	554	1.6	35,243	506	1.5
15~19세	3,937	89	2.3	3,863	-74	-1.9
20~29세	7,478	-38	-0.5	7,147	-331	-4.4
30~39세	7,913	-168	-2.1	8,333	420	5.3
40~49세	6,076	252	4.3	6,404	328	5.4
50~59세	4,412	161	3.8	4,429	18	0.4
60세이상	4,920	259	5.6	5,065	145	3.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나. 가중치 부여방법의 개선방안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승수산출시 세분화된 가중치의 부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15세 이상 인구의 구조가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인구추계는 시도별·시부군부별·성별 구분만 이루어져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세분화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계시 가중치 세분화를 위해서는 세분화된 인구추계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방안은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추계인구에 대한 가중치 부여방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여건상 가중치의 부여범위를 현재의 지역별, 시·군부별, 성별에 추가로 연령계층과 학력을 감안한 승수를 적용할 경우 앞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인구를 시산한 결과를 제시하여 보겠다.

먼저 모수인 센서스 결과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추정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1995년 11월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이 기간 중 가중치의

세분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인구조사 결과가 공표된 시점이어서 인구센서스를 지역별·성별·연령별·학력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 추정방법 1: 성별 분포만 활용한 승수적용(기존의 통계청 방법)
- 추정방법 2: 성별·연령계층별 분포를 활용한 승수적용
- 추정방법 3: 성별·연령계층별·학력별 분포를 활용한 승수적용

추정결과 추정방법 3에 의해 시산된 결과에서 얻어진 15세 이상 인구의 분포와 모수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 활용하는 방법 1과 방법 3에 따라 추정된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은 <표 4-29> 부터 <표 4-34> 에 제시되어 있다.

<표 4-29> 센서스와 추정방법별 15세 이상 인구 분포차이 비교

(단위: 천명, %)

	센서스	방법 1				방법 2			방법 3		
		취미(A-B)	비율(A/A)								
중졸이하	15-19세	2,842	2,842	0	0.0	3,176	-333	11.0	3,026	-184	6.4
	20-29세	518	518	0	0.0	520	-3	0.5	501	-17	14.0
	30-39세	1,868	1,868	0	0.0	2,307	-239	12.7	2,267	-239	21.3
	40-49세	2,525	2,525	0	0.0	2,940	-415	16.2	2,907	-332	12.9
	50-59세	2,702	2,702	0	0.0	3,085	-384	14.2	2,830	-128	4.7
	60세이상	3,608	3,608	0	0.0	4,220	-612	19.3	3,649	-41	1.1
계	14,103	14,103	0	0.0	16,119	-2,016	14.2	15,261	-1,158	8.2	
고졸	15-19세	1,014	1,014	0	0.0	871	143	-14.0	837	178	-17.5
	20-29세	5,914	5,914	0	0.0	5,340	574	-9.6	6,008	-94	1.5
	30-39세	4,251	4,251	0	0.0	3,953	298	-5.9	4,215	-14	0.3
	40-49세	2,079	2,079	0	0.0	2,022	57	-2.7	1,952	127	-6.0
	50-59세	876	876	0	0.0	944	-68	7.8	844	32	-3.6
	60세이상	337	337	0	0.0	399	-62	18.4	334	3	-0.8
계	14,430	14,430	0	0.0	13,529	901	-6.1	14,306	220	-1.5	
대졸이상	15-19세	6	6	0	0.0	6	0	0.0	6	0	0.0
	20-29세	2,010	2,010	0	0.0	1,647	363	-18.0	1,842	167	-8.3
	30-39세	2,232	2,232	0	0.0	1,781	451	-20.2	1,879	413	-18.0
	40-49세	888	888	0	0.0	708	179	-20.1	682	206	-23.2
	50-59세	398	398	0	0.0	338	60	-14.8	302	96	-24.2
	60세이상	190	190	0	0.0	182	8	-3.9	152	38	-20.1
계	5,784	5,784	0	0.0	4,690	1,125	-19.4	4,857	927	-16.0	
전 계	15-19세	3,863	3,863	0	0.0	4,027	-164	4.2	3,863	0	0.0
	20-29세	8,441	8,441	0	0.0	7,508	933	-11.0	8,441	0	0.0
	30-39세	8,362	8,362	0	0.0	7,941	421	-5.0	8,362	0	0.0
	40-49세	5,531	5,531	0	0.0	5,712	-181	3.2	5,531	0	0.0
	50-59세	3,976	3,976	0	0.0	4,460	-484	9.8	3,976	0	0.0
	60세이상	4,134	4,134	0	0.0	4,851	-715	17.3	4,134	0	0.0
계	34,308	34,308	0	0.0	34,308	0	0.0	34,308	0	0.0	

주: <방법 1> 성·연령·교육정도별 승수적용, <방법 2> 성별·연령별 승수적용, <방법 3> 성별 승수적용.

〈표 4-30〉 추정방법별 취업자수 분포차이 비교

(단위 : 천명, %)

	연령	방법 3	방법 1		방법 2			
			차이(A-B)	비율(B/A)	차이(A-C)	비율(C/A)		
중증어려	15~19세	130	121	-12	11.1	118	-7	-4.1
	20~29세	338	316	-12	3.8	300	-66	-19.9
	30~39세	1,786	1,596	-190	11.5	1,696	-20	-6.9
	40~49세	2,050	2,303	253	16.7	2,323	273	29.9
	50~59세	1,919	2,303	384	14.8	2,008	-91	-8.8
	60세이상	1,876	1,329	-547	18.9	1,452	-15	-15.0
계	7,226	8,288	1,113	15.1	7,993	-79	-4.3	
고용	15~19세	26	27	3	-13.3	248	46	-1.7
	20~29세	3,414	3,056	-358	-10.4	3,463	-49	1.3
	30~39세	3,056	2,942	-114	-3.7	3,026	-30	0.5
	40~49세	1,642	1,525	-117	-1.8	1,593	78	3.8
	50~59세	646	728	82	12.7	646	0	-11.2
	60세이상	100	282	182	35.2	198	-6	-16.9
계	9,214	8,011	-463	-4.3	9,128	70	4.3	
대졸이상	15~19세	4	0	3	-89.3	0	3	-3.8
	20~29세	1,577	1,282	-295	-18.7	1,444	132	12.7
	30~39세	1,848	1,461	-387	-20.9	1,529	319	4.6
	40~49세	251	611	360	14.0	596	165	-4.1
	50~59세	310	284	-26	-4.6	251	792	-11.5
	60세이상	308	106	-202	3	88	21	-16.9
계	4,648	3,744	-904	-19.9	3,899	749	4.1	
전 계	15~19세	366	380	15	4.0	366	0	-3.8
	20~29세	5,297	4,674	-623	-11.7	5,297	0	13.3
	30~39세	6,311	5,989	-322	-5.4	6,331	0	5.7
	40~49세	4,470	4,638	168	3.5	4,479	0	-3.4
	50~59세	2,925	3,215	290	10.6	2,925	0	-9.6
	60세이상	1,796	2,018	218	18.1	1,708	0	-15.3
계	26,076	26,200	172	0.8	21,876	0	0.8	

주 : <방법 3> 실·연봉·교육경도별 승수인정, <방법 2> 실명·연봉별 승수인정, <방법 1> 실명 승수인정.

〈표 4-31〉 추정방법별 실업자수 분포차이 비교

(단위 : 천명, %)

	연령	방법 3	방법 1		방법 2			
			차이(A-B)	비율(B/A)	차이(A-C)	비율(C/A)		
중증어려	15~19세	9	30	-1	30.7	9	-1	-3.9
	20~29세	11	11	-1	5.1	13	-3	16.9
	30~39세	12	13	-2	25.3	14	-3	5.5
	40~49세	13	16	-3	39.5	15	-2	-4.0
	50~59세	12	14	-2	36.7	13	-1	-10.5
	60세이상	3	4	-1	39.0	3	-8	-16.9
계	60	69	-9	14.7	68	-8	-0.6	
고용	15~19세	28	18	3	-13.5	17	4	-1.8
	20~29세	912	142	30	-12.3	953	-2	15.2
	30~39세	33	33	1	-2.0	34	-1	4.7
	40~49세	17	17	0	-0.6	16	1	-3.8
	50~59세	8	9	-2	38.0	8	0	-12.1
	60세이상	1	2	-1	30.7	1	0	-17.2
계	242	226	22	-9.0	240	1	9.1	
대졸이상	15~19세	0	0	0	0.0	0	0	0.0
	20~29세	76	60	14	-19.3	66	6	12.5
	30~39세	34	19	5	-19.4	20	4	1.7
	40~49세	7	6	1	-18.4	6	2	-4.1
	50~59세	3	3	0	-12.8	3	1	-32.1
	60세이상	0	0	0	0.0	0	0	0.0
계	109	88	21	-19.1	96	13	9.3	
전 계	15~19세	27	28	-1	4.0	28	0	-3.8
	20~29세	265	217	-32	-12.9	265	0	14.8
	30~39세	66	65	3	-4.4	68	0	4.5
	40~49세	37	38	-2	4.1	37	0	-4.0
	50~59세	34	27	-3	12.7	34	0	-11.3
	60세이상	5	6	-1	39.5	5	0	-16.3
계	405	377	28	-7.0	405	0	7.5	

주 : <방법 3> 실·연봉·교육경도별 승수인정, <방법 2> 실명·연봉별 승수인정, <방법 1> 실명 승수인정.

〈표 4-32〉 추정방법별 비경제활동인구 분포차이 비교

(단위: 천명, %)

	연령	방법 3		방법 1		방법 2		
		인구	비율(A/B)	인구	비율(B/A)	인구	비율(C/A)	
국공여하	15-19세	2,721	1,022	-220	11.0	2,889	-136.3	-4.1
	20-29세	183	171	19	5.2	188	-4.6	8.2
	30-39세	400	389	-89	10.7	398	-98.5	9.7
	40-49세	502	572	-79	14.0	561	-50.5	-1.9
	50-59세	771	889	-98	12.6	909	-37.9	-6.9
	60세이상	2,168	2,557	-389	17.9	2,134	-25.5	-14.2
	계	6,808	7,792	-984	13.1	7,270	-402.4	-6.4
고용	15-19세	697	386	101	-14.4	572	125.7	-4.2
	20-29세	2,338	2,342	185	-8.3	2,382	-44.3	11.2
	30-39세	1,112	978	134	-12.0	1,075	36.9	9.9
	40-49세	436	380	40	-9.6	373	46.9	-1.8
	50-59세	222	207	15	-6.8	190	32.3	-8.3
	60세이상	175	195	-19	11.0	196	18.8	-15.4
	계	4,964	4,496	465	-9.4	4,756	208.4	3.7
대졸이상	15-19세	0	0	0	-	0	0.0	0.0
	20-29세	368	305	51	-14.8	370	27.2	8.4
	30-39세	421	381	119	-28.4	330	90.5	9.5
	40-49세	130	92	38	-29.1	90	40.2	-2.6
	50-59세	66	52	11	-25.4	48	17.8	-8.4
	60세이상	0	0	0	0.0	0	0.0	0.0
	계	1,025	828	200	-21.8	882	195.4	4.2
전체	15-19세	3,471	3,659	-188	4.3	3,470	0.6	-4.1
	20-29세	2,804	2,921	278	-9.6	2,899	8.2	10.6
	30-39세	1,963	1,788	175	-8.9	1,963	8.4	9.7
	40-49세	1,025	1,046	-21	2.0	1,024	8.2	-2.0
	50-59세	1,047	1,027	-80	7.6	1,047	6.3	-7.1
	60세이상	2,423	2,827	-405	16.7	2,423	-40.1	-14.3
	계	12,827	13,877	-1,050	1.6	12,827	10.6	-1.5

주: <방법 3> 실·연령·교육정도별 순수인정, <방법 2> 실령·연령별 순수인정, <방법 1> 실령 순수인정.

〈표 4-33〉 추정방법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비교(1995년 11월 기준)

(단위: %)

	연령	방법 1			방법 2			방법 3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국공여하	15-19세	4.4	4.8	4.2	4.4	4.0	4.2	4.4	4.0	4.2
	20-29세	87.8	80.5	86.7	87.7	80.8	88.2	87.4	80.8	84.7
	30-39세	94.7	64.2	75.8	94.7	64.2	75.4	94.9	64.2	75.4
	40-49세	94.9	71.5	80.8	94.8	71.5	80.6	94.9	71.5	80.4
	50-59세	88.2	81.1	71.8	88.2	81.1	71.4	88.1	81.0	71.5
	60세이상	54.6	32.1	40.1	54.6	32.2	39.9	54.6	32.2	39.9
	계	61.7	45.5	52.2	62.2	46.1	52.8	61.1	45.4	51.7
고용	15-19세	22.4	40.5	31.6	22.3	40.3	31.7	22.4	40.5	31.3
	20-29세	67.6	52.7	58.9	67.6	52.7	60.4	67.6	52.6	60.5
	30-39세	97.7	50.5	75.3	97.7	50.5	74.5	97.7	50.5	73.5
	40-49세	97.1	56.5	81.2	97.0	56.5	80.9	97.0	56.5	79.8
	50-59세	89.1	-	78.1	89.0	-	77.5	89.2	-	74.6
	60세이상	60.6	-	51.2	60.4	-	50.7	60.3	-	47.9
	계	80.2	56.6	66.8	79.4	50.8	66.5	78.6	56.5	65.6
대졸이상	15-19세	-	-	-	-	-	-	-	-	-
	20-29세	90.6	72.7	81.5	90.6	72.7	82.1	90.6	72.7	82.2
	30-39세	97.6	50.5	85.1	97.6	50.5	82.4	97.6	50.6	81.7
	40-49세	98.1	52.0	87.0	98.2	52.2	86.8	98.1	51.8	85.4
	50-59세	83.2	-	84.6	83.4	-	84.3	83.1	-	83.5
	60세이상	-	-	-	-	-	-	-	-	-
	계	84.0	62.2	82.2	84.1	62.2	82.2	84.2	61.1	81.7
전체	15-19세	8.1	12.4	10.1	8.1	12.3	10.2	8.1	12.3	10.2
	20-29세	74.2	56.7	65.1	74.2	56.7	65.1	74.3	56.7	65.1
	30-39세	97.1	56.3	77.2	97.1	56.3	76.5	97.1	56.3	76.5
	40-49세	96.4	65.7	81.7	96.4	65.8	81.5	96.4	65.8	81.5
	50-59세	80.1	58.8	74.2	80.1	58.7	73.7	80.1	58.7	73.7
	60세이상	56.1	31.7	41.7	56.1	31.7	41.4	56.1	31.7	41.4
	계	75.3	49.8	62.0	75.9	49.6	62.6	75.9	49.6	62.6

주: <방법 3> 실·연령·교육정도별 순수인정, <방법 2> 실령·연령별 순수인정, <방법 1> 실령 순수인정.

〈표 4-34〉 성별·학력별·연령계층별 실업률 비교

		방법 1			방법 2			방법 3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중졸이하	15~19세	68	85	75	71	88	78	63	91	75
	20~29세	36	71	32	36	28	32	35	29	33
	30~39세	12	05	08	11	05	08	12	05	09
	40~49세	12	02	07	11	02	06	12	02	06
	50~59세	10	04	06	11	03	06	10	03	06
	60세이상	04	01	02	03	01	02	03	01	02
계	12	04	08	13	05	08	12	05	08	
고졸	15~19세	73	61	65	77	58	64	78	60	64
	20~29세	55	32	44	55	32	45	55	32	45
	30~39세	13	07	11	13	07	11	13	07	11
	40~49세	11	09	10	14	10	10	14	08	10
	50~59세	14	-	12	14	-	12	15	-	12
	60세이상	11	-	10	06	-	06	07	-	06
계	26	21	24	28	21	25	28	21	26	
대졸이상	15~19세	-	-	-	-	-	-	-	-	-
	20~29세	49	40	45	50	40	45	50	41	45
	30~39세	15	04	13	14	03	13	15	05	13
	40~49세	09	11	10	10	11	10	10	08	09
	50~59세	12	-	10	13	-	12	10	-	09
	60세이상	-	-	-	-	-	-	-	-	-
계	21	22	23	23	21	24	22	25	23	
전체	15~19세	71	67	69	75	65	69	75	65	69
	20~29세	52	34	44	52	34	44	52	34	44
	30~39세	13	06	11	13	06	11	13	06	11
	40~49세	11	04	08	11	04	08	11	04	08
	50~59세	12	03	08	12	03	08	12	03	08
	60세이상	04	01	03	04	01	03	04	01	03
계	20	18	18	22	14	19	22	14	19	

주: <방법 1> 남·여성·교육정도별 수순연령, <방법 2> 성별·전체별 수순연령, <방법 3> 성별 수순연령.

주석 1) 1,800명의 조사요원 중 1,600명은 현장조사원(field interviewer)이며, 나머지 200명은 중앙전화조사요원(telephone center interview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석 2) 우리나라의 조사대상주간은 15일이 속한 1주간이며, 실제조사기간을 그 다음 주이다. 따라서 실제 조사시점이 20일 전후라고 가정할 경우 보통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시점은 다음달 25일 전후로, 이는 조사에서 공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30~35일 정도로 산출할 수 있다.

주석 3) James W. McNally, *Generating Hot-Deck Imputation Estimate : Using SAS for Simple and Multiple Imputation Allocation Routines*, pp.1~5 참조.

주석 4) 앞의 책, p.3 참조

주석 5) 장인식, 『표본조사론』, 다산출판사, 605~612쪽 참조.

주석 6) 교육부, 『교육통계연감』, 참조.

주석 7) 1998년도 취업자 변동현황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국졸 이하의 경우 전년대비 -12.4%, 중졸 17.2%, 고졸 -4.8%를 기록하였으나, 대졸 이상의 경우는 전년대비 10.3% 증가하였다.

주석 8)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1998년도 10대 인구는 전년대비 19천명, 20대 -111천명, 30대, 40대 306천명, 그리고 50대 이상은 299천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표본관리방법의 개선

가. 표본관리방법의 제개념

표본관리방법에는 조사객체의 변경여부에 따라 크게 고정표본방식과 연동교체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고정표본방식이란 최초에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선정하고 일단 조사대상 표본으로 정해지면 장기간 고정하는 방식이며, 연동교체방식은 매회 전면적으로 교체하거나 혹은 표본에 순서를 붙여 매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즉 모집단의 구조와 특성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노동력 통계와 인구이동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주기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사에서는 효율적인 추정을 위해서 조사시기 이전에 관찰된 자료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표본조사과정은 조사시기마다 표본의 일부를 새로운 표본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연동교체방식인 것이다.

고정표본방식은 조사가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원의 매너리즘과 응답자의 부담으로 인하여 불성실한 조사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표본이 중간에 누수됨으로써 노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대로 연동표본방식은 비표본오차가 감소하고 모집단 변화의 반영도 제고와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다는 장점과 아울러 표본의 수시변경으로 인하여 조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표 4-35〉 고정표본방식과 연동교체방식의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고정표본방식	- 조사용이	- 조사원의 매너리즘에 따른 조사의 불성실 - 표본의 노후화 - 응답자 부담으로 인한 응답의 불성실
연동표본방식	- 조사원의 과신에 따른 비표본오차 감소 - 모집단 변화의 반영도 제고 - 응답자 부담 감소	- 조사실시의 어려움

나. 우리나라 표본관리방법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의 실업통계는 조사된 자료의 안정성 제고와 추정값의 원활한 시계열 유지, 그리고 조사원의 업무부담과 무응답 가구를 줄이기 위해서 표본가구의 고정관리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표본구역으로 선정되면 표본이 개편¹⁾될 때까지 표본구역으로 고정된다. 물론 월간 변동사항을 추정할 경우에는 추정오차의 증가와 교체표본추출에 소요되는 추가비용과 새로운 조사구를 조사할 때 생기는 조사원의 업무량의 증가를 고려할 때 고정표본의 이용이 오히려 더욱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고정표본관리방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비표본오차의 감소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표본가구의 고정관리방법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본개편 당시 확정된 표본가구는 지리적으로 표본구역을 선정하고 그 주소지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가구들로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표본가구 자체가 아닌 표본주소지를 고정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조사된 가구는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상황을 살펴보면 이동률은 연평균 19% 정도로서, 5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가구들이 한 번씩 이사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표본가구로 조사된 가구가 이사가고 새로운 가구가 동일주소로 이사왔을 경우 생활수준이나 가족의 구성여건이 유사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말하면 동일가구가 표본가구로 고정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통계작성이나 표준오차를 계산하는데 반영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노동력 통계작성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표 4-36〉 인구이동 통계

	1995	1996	1997	1998	1999. 1/4
이동률	19.9	19.2	19.0	17.4	5.2

자료 : 통계청, 「1999년 1/4분기 인구이동 집계자료」.

두 번째는 모집단의 구조변화가 연속조사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표본조사구 추출시 주택의 특성과 농림어업 및 광공업 비율에 따라서 조사구를 나열하였으나 아파트의 신축이나 신규주택 건설 등으로 모집단의 구조의 변화가 크고 또한 실업률이 산업분류와 연령계층에 따라서 계절별로 또는 사회 경제상황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표본가구의 고정관리방법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1995년 11월 1일 인구주택 센서스 이후 1997년 말까지 신축된 주택은 120만여호이며, 이 중 아파트가 95만여호,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11만여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13만여호이다. 이들을 25개 지역별로 신축주택수에 표본설계 당시의 표본추출률을 적용해 보면 추가해야 할 표본가구수는 2,641가구이고 조사구당 평균 가구수가 24가구임을 감안한다면 110조사구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축주택 중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80% 정도이며 3년간 시도별 아파트 신축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동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구주택 센서스 이후에 철거되었거나 폐가된 경우도 있겠지만 추가되어야 할 표본가구수가 목표조사 가구수의 8.8%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집단의 구조와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본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4-37〉 시도별 아파트 신축현황(1995. 11. 1~1998. 10. 31.)

시·도	구분	호수	시·도	구분	호수
서울	동 부	122,617	강원	동 부	26,087
부산	동 부	84,788		읍면부	6,393
	읍면부	496	충북	동 부	28,050
대구	동 부	52,034		읍면부	10,269
	읍면부	6,809	충남	동 부	27,699
인천	동 부	64,407		읍면부	31,167
광주	동 부	62,514	전북	동 부	51,051
	동 부	22,695		읍면부	4,115
울산	동 부	14,783	전남	동 부	22,514
	읍면부	8,162		읍면부	11,677
경기	동 부	147,621	경북	동 부	33,287
	읍면부	50,149		읍면부	24,458
경남	동 부	41,794	제주	동 부	4,241
	읍면부	19,128	전 계		979,005

세 번째는 앞서 논했던 조사원 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사원과 응답자간의 긴밀한 친숙관계를 유지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는 용이하나 조사원들의 매너리즘으로 조사환경의 변화에 적응이 곤란하고 조사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표를 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업무감독이 없을 경우에는 불성실한 조사태도로 인한 비표본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표본조사 가구로 선정되면 5년 동안 매월 가계부 기입 또는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서 오는 심리적인 부담감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퇴직 등이나 사업실패 등의 개인적인 비밀사항의 노출기피 등으로 응답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응답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연평균 20%의 인구이동률을 감안할때 표본가구의 고정관리의

본연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고 주택의 신축 등으로 모집단의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이 없으며 응답자들의 지속적인 응답으로 비표본오차 발생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표본오차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노동력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표본가구를 고정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연동교체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 표본관리방법의 외국 사례

연동교체 표본관리방법을 적용하는 외국의 사례 중에서 센서스 주기가 5년인 일본과 10년인 미국의 경우에 대해서 표본추출과정과 표본교체방식 및 추정오차를 살펴보겠다.

먼저 일본과 미국 모두 『4-8-4』 체제의 표본연동교체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일본은 1차 추출단위에 2차 추출단위를 연동교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최종추출 단위만을 교체하는 방식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추정방법에서도 이들 두 나라간에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1) 일본

처음 추출한 표본조사구를 기준조사구라고하며, 소정의 조사기간을 마치고 교체하는 조사구를 교체조사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기준조사구는 표본으로 선정되면 4개월간 조사한 후에 익년 동일시기에 표본으로 포함하며 4개월간 조사하고 표본에서 삭제한다. 교체조사구의 추출은 기준조사구의 추출용 일련번호를 시작번호로 하고 교체조사구 추출간격을 이 번호에 더하는 계통추출법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4-14]에 나타나 있다.

표본은 8개조의 조사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A, B, C 및 D의 구분은 조사를 새로 시작하는 월에 따라 붙여진 것이며, 후치번호 1은 금년에 새로 표본조사구로 포함된 것을 나타내고, 2는 작년에 표본조사구로 포함되어 금년에 재조사하고 내년에는 조사하지 않는 조사구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A조에 속하는 조사구는 5월에 조사를 새로 시작해서 4개월간 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A조의 조사구를 9월에 교체조사구로 추출하여 표본조사구로 포함한다. 그러나 5월에 조사를 시작한 조사구에 속하는 표본주소(2차 추출단위)들은 5~6월의 전반 2개월(〈전기〉로 표현) 조사분과 7~8월의 후반 2개월(〈후기〉로 표현) 조사분으로 분리추출하여 조사한다. 즉 2차 추출단위인 주소는 2개월간 계속 조사한 후 1년간 쉬었다가 익년의 같은달에 조사된다.

하나의 기준조사구에 대응하는 교체조사구는 예비조사구를 포함하여 11개 조사구를 추출하며 그래서 추출간격은 기준조사구의 추출간격의 1/12로 하였다. 2차 추출단위인 주소의 교체는 표본조사구 내에서 주소를 추출할때, 전기분(조사기간 4개월 중 전반 2개월)과 후기분(후반 2개월)으로 나누어 별도의 독립적인 추출시작번호에 의해서 계통추출한 표본주소를 반씩 나누어 표본에서 탈락시키고 새로운 표본주소를 포함한다.

[그림 4-15] 조사구와 주소의 계속조사 현황

조번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A-1(1년차)	[Hatched]				(전 기) (후 기)				[Hatched]			
A-2(2년차)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B-1(1년차)	[Hatched]		[Hatched]				[Hatched]		[Hatched]		[Hatched]	
B-2(2년차)	[Hatched]		[Hatched]				[Hatched]		[Hatched]		[Hatched]	
C-1(1년차)	[Hatched]		[Hatched]				[Hatched]		[Hatched]		[Hatched]	
C-2(2년차)	[Hatched]		[Hatched]				[Hatched]		[Hatched]		[Hatched]	
D-1(1년차)	[Hatched]		[Hatched]				[Hatched]		[Hatched]		[Hatched]	
D-2(2년차)	[Hatched]		[Hatched]				[Hatched]		[Hatched]		[Hatched]	

2)미국

미국의 표본교체방식은 표본으로 선정된 최종추출단위(Ultimate Sampling Unit:USU)²⁾는 4개월간 연속조사를 진행하고 난 후, 8개월간 쉬고 나서 다시 4개월간 연속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표본목록에서 영구히 제거한다. 표본교체방법은 [그림 4-16]에 잘 나타나 있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월별 추정값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월에 조사된 표본의 3/4(75%)을 중복하여 금월의 표본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4(25%)은 교체표본추출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표본을 조사한다. 예를 들어 (X+1)년의 3월을 보면 A30과 C14의 1, 2, 3 표본과, A31과 C15의 5, 6, 7 표본은 전 달((X+1)년의 2월)에 조사했던 표본이고 A30과 C14의 4표본과 A31과 C15의 8표본만이 새로운 것이다. 미국 표본교체 체계는 연간 추정값의 신뢰성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년동월 표본의 1/2(50%)을 중복하여 금년 같은 달의 표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4-16]에서 (X+2)년 3월을 보면 (X+1)년 3월에 사용하였던 A31과 C15의 5, 6, 7, 8 표본을 중복해서 조사하고 A33과 C17의 1, 2, 3, 4 표본을 새로 조사하고 있다.

[그림 4-16]A-설계와 C-설계에서 연동표본 교체현황

년 월		Sample & Rotation																			
		A29 C13				A30 C14				A31 C15				A32 C16				A33 C17			
X년	11																				
	12																				
	1																				
	2																				
X+1년	3																				
	4																				
	5																				
	6																				
X+2년	7																				
	8																				
	9																				
	10																				

이처럼 4-8-4 교체체계를 적용했을 월간의 중복률은 <표 4-38> 과 같다.

<표 4-38> 월간 중복률

		(단위 : %)										
월간격	1개월	2개월	3개월	4~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중복률	75	50	25	0	12.5	25	37.5	50	37.5	25	12.5	

라.연동교체 표본개선방안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환경에서 모집단의 변화를 신규주택과 아파트의 건설에 따른 사항과 연간 20% 정도 되는 인구이동률에 따른 표본가구 교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한 외국의 연동교체 표본관리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조사환경에서 생각되는 몇 가지 표본교체 관리방법을 제안하고 이들의 개괄적인 내용만 언급하겠다. 분명한 것은 연동교체 표본관리방법의 도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실용성을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동교체 표본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만 제공하겠다.

1)부분교체 표본관리방법

매월 표본의 일부를 신규표본으로 대체하여 일정기간 지나면 모든 표본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앞에서 살펴본 일본이나 미국의 『4-8-4』 체계와 같은 형식을 포함하여 「2-10-2」 체계, 「3-9-3」 체계, 「6-6-6」 체계 등 4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가)2-10-2 체계

표본은 4개의 부차표본으로 구성되며 매월 중복비율은 50%이고, 2개월의 간격에서 볼 때는 중복표본이 없지만 1년간의 간격에서 중복비율은 50%이므로 연간 시계열 모형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2달간만 조사되고 10개월간 쉬었다가 다시 2개월간 재조사되므로 조사원과 응답가구간의 친숙도라든지 협조관계의 조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무응답률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나)3-9-3 체계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3개월간 조사하고 9개월 쉬었다가 다시 다음해 3개월 조사한 후에 표본에서 제외하는 형식이며 표본은 6개의 부차표본으로 구성된다. 표본의 중복비율은 1개월 간격에서는 66.6%, 2개월 간격에서는 33.3%이고 3개월에서 11개월 간격에서는 중복비율이 0%이지만 연간 중복비율은 50%이므로 연간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조사가 계속되는 기간보다 표본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무응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4-8-4 체계

현재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4-8-4 연동표본 교체방식을 말하며 표본이 8개의 부차표본으로 구성되며 월간 및 연간 중복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4개월간 조사한 후에 8개월간 쉬었다가 다시 4개월간 조사하므로 응답가구의 부담은 작아지는 반면에 응답률은 낮아질 것이다.

라)6-6-6 체계

표본조사구는 12개의 부차표본으로 구성되며 표본으로 포함된 부차표본가구들은 6개월간 조사한 후에 6개월 쉬었다가 다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표본에서 영구히 제외시킨다. 첫 달에는 두 개의 표본조사구에서 각각 6개의 부차표본을 조사한 후 각 표본조사구에서 한 개 부차표본을 제외시키고 신규 부차표본을 한 개씩 추출하여 포함시키는 형식이다. 1개월간의 중복비율은 83.3%이고, 2개월간의 중복비율은 66.6%이며 3개월간 중복비율은 50%이다. 또한 연간 중복비율은 50%이지만 6개월간의 중복비율은 0이고 7개월간의 중복비율은 16.6%이다. 표본이 중복비율과 조사연속기간 등을 감안할 때, 자료의 시계열 분석과 표본가구의 응답부담 측면에서는 적절한 연동표본교체법으로 생각된다.

2)고정표본과 연동교체표본의 혼합방안

한편 위에서 언급한 연동교체 표본방식의 단점으로는 무응답률이 높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응답률을 최소화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설계 당시에 고정표본조사를 위한 조사구와 연동교체 표본관리를 위한 조사구를 혼합하여 표본관리를 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들어 표본 중에서 50%는 고정표본으로 하여 표본으로 한 번 추출된 조사구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다른 50% 표본은 「6-6-6」 연동표본 교체방식으로 관리한다면 교체 부차표본의 추출과정의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본간의 높은 중복률 때문에 상관성이 높아서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추정법은 추정오차를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설계로는 고정표본과 연동교체표본의 혼합방안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구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조사구를 모아서 적당한 크기의 층을 구성한 후에 각 층에서 모집단을 잘 대표할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할 뿐만 아니라 모집단 구조의 변화를 추정량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조사구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좀더 시간과 충분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심층분석한 후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6. 소지역 실업통계의 개발

가. 지역별 실업통계 작성의 필요성 및 개발방향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지방자치행정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지방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구 단위의 지역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적인 측면과 생산기법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IMF 자금지원 신청 이후 급격하게 악화된 고용사정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실업대책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에 투입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도별 예산배정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의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나 각 시·도 단위의 자세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정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업대책의 평가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막대한 실업대책예산을 투입하여 시·군·구 실업자 및 실업구조 파악을 위해 시도별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정확한 실업대책을 실시·평가하기 위해서는 소지역 단위의 실업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시·군·구의 소지역 통계 중에서 실업관련 소지역 통계의 수요가 어느 분야보다도 많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통계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³⁾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전국적으로 50,000여 표본가구의 조사결과와 각종 행정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County 단위의 소지역 실업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실업통계의 개발방법은 각 지역별로 직접 표본설정(sampling)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통계부서의 인원과 예산의 확충, 그리고 전문가의 양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실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시의성 있는 통계를 즉각적으로 생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조사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정부의 정책입안에 혼선을 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이 방안은 현 우리나라 상황하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부터는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통계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간접추계방법인 소지역추정법을 활용한 방법을 그 대안으로 실업통계 개선에 관한 논의를 펴 나갈 것이다. 이는 현재 규모의 조사원과 예산하에서도 정책 입안자료로 활용가능한 시·군·구의 실업통계의 생산은 가능하다는 확신과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조건상 230여 시·군·구 단위에 대한 소지역 실업통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나. 소지역 실업통계 추정법의 제논의

1) 소지역 추정법의 개념

직접 조사된 자료와 모집단의 특성과 구조분석을 통해서 계산한 예측값을 혼합하여 표본수가 적은 점을 보완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추정법을 소지역 추정법(small area estimation)이라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센서스의 중간연도에 해당되는 기간에 주(state) 또는 county의 인구추정과 노동력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대규모의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 대지역 단위 통계의 생산이 주목적이거나 지방자치정부의 요청이나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위해서 좁은 지역단위의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조사된 자료만을 이용한다면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보고 자료 또는 센서스 자료 구조의 특성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간접추계법인 소지역 추정법을 활용하고 있다.

2) 소지역 실업통계 추정방법의 종류

가) 인구통계학적 방법

미국의 경우와 같이 10년 주기로 센서스를 할 경우에는 지방도시나 county의 중간 해당연도의 인구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추정법으로 센서스 자료와 인구수에 관련된 징후 변수(출생자수, 사망자수, 주택수, 등록된 학생수 등)의 변동을 분석하여 얻은 예측값을 결합하는 추정법을 인구 통계학적 방법이라 말한다.

나) 합성추정법(Synthetics Estimation)

표본조사에서 신뢰성 있는 직접 추정값을 구할 수 있는 대영역을 소지역으로 분할하더라도 대지역을 다른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이 특성의 구조가 소지역의 특성 구조와 동일하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소지역의 연구 변수에 대한 추정값을 구하는 법을 합성추정법(synthetics estimation)이라 한다. 소지역의 특성값을 추정할 때 주변의 유사한 특성을 갖는 소지역들을 하나의 지역으로 합성하고 합성된 지역과 관심의 소지역의 특성이 같다는 조건에서 합성된 지역의 추정량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소지역의 추정값을 구하는 방법도 합성추정법이 된다. 합성추정법은 이처럼 주변이나 유사한 영역의 정보를 이용하므로 'borrow strength'라고도 한다.

다) 복합추정법(Composite Estimation)

소지역에 배정된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표본조사만을 이용한 직접 추정량의 불안정에서 오는 낮은 신뢰성과 합성추정량의 편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추정값과 합성추정값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는데 이를 복합추정법이라 한다.

다. 충청북도의 소지역 실업통계 개발 예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5년주기의 인구주택 총조사의 10%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설계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모집단의 구조분석과 행정업무 보고자료를 이용한 모형추정을 통해서 예측한 추정값과 표본조사 자료에서 구한 추정값을 결합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추정방법을 충청북도의 소지역 실업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개요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은 2구 2시 8군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제천시 경우에는 도농의 혼합도시이므로 실업자 추정시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4-39>는 1999년 4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충북의 15세 이상 인구는 약 110만명 정도로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65만명 수준을 기록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60.5%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참가율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39> 충청북도의 경제활동인구 총괄(1999년 4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전 체	1,071	648	60.5	423
남 자	501	361	72.1	140
여 자	570	287	46.8	28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데이터」.

다음으로 <표4-40>은 충북지역의 경제활동인구의 분포를 시·군·구별로 나눈 것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65만명 중 2구 2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충북지역의 5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4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 4월 시와 군지역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와 조사구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구 64개 중 시구가 37개 조사구이고 나머지 27개 조사구는 군조사구로 나타났다.

<표4-40>충청북도의 시군구별 경제활동의 조사구 현황

(단위 : 명, 개소)

	전 체	남 자	여 자	조사구
청주상당구	85,064	46,449	38,615	8
청주홍덕구	131,561	77,055	54,506	14
충 주 시	96,568	53,813	41,745	11
계 천 시	68,800	41,417	27,383	4
소 계	380,983	218,734	162,249	37
청 원 군	49,063	26,828	22,235	5
보 은 군	27,920	14,467	13,453	2
옥 천 군	40,725	22,294	18,431	3
영 동 군	39,816	22,463	17,353	3
진 천 군	22,335	12,138	10,197	1
괴 산 군	32,491	16,244	16,247	5
음 성 군	29,676	14,896	14,781	6
단 양 군	24,361	13,030	11,331	2
소 계	266,387	142,359	124,028	27

2) 추정절차 및 결과

충북지역을 크게 2개 그룹인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구분하여 합성추정량에서 'borow strength'를 적용하기 위한 유사성질의 범주의 구분을 성별·연령대별과 성별·교육정도별로 하고 각 셀에 대한 실업률을 추정하였다.

시지역 내에서는 각 시의 특성별 실업률은 동일하고 군지역에서 각 군의 특성별 실업률이 동일하다는 조건하에서 소지역별로 실업자를 추정한다.

다음으로 성별·연령대별 및 성별·교육정도별의 각 범주의 실업률을 이용하여 계산된 시지역의 실업률은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실업률과 비슷하다는 가정하에서 시지역의 실업자 총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시·구의 실업자 추정값을 구한다. 한편 군지역의 실업자 총수는 통계청에서 추정한 충청북도의 실업자수에서 시·구 지역의 조정된 실업자수를 감하여 계산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각 군별로 실업자 추정값을 조정한다.

이상에서와 같은 추정방법을 통하여 충북지역의 성별·연령대별 및 성별·교육정도별 실업자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추정결과는 <표4-41>과 같다.

<표4-41>연령계층별·학력별 추정 실업자 현황

(단위 : 천명)

	연령대별			교육정도별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상당구	2,975	1,778	4,753	3,001	1,601	4,602
홍덕구	5,212	2,657	7,869	5,266	2,468	7,734
송주시	3,367	1,742	5,109	3,222	1,350	4,572
제천시	2,067	1,018	3,085	2,070	774	2,844
청원군	905	528	1,433	703	425	1,128
진천군	635	135	770	484	127	611
괴산군	667	305	972	661	412	1,073
음성군	863	388	1,251	656	314	970
보은군	372	170	542	1,452	128	1,580
옥천군	507	291	798	380	237	617
영동군	573	290	863	399	154	553
단양군	445	160	605	290	120	410
전 체	18,589	9,462	28,051	18,384	8,110	26,494

이상에서와 같이 소지역 실업통계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충청북도의 실업자를 추정해 보았다. 이러한 소지역 실업통계의 추정방법에 대한 보다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이후에 설계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설계에서는 시·도 단위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시·도 단위의 실업자 추정을 위해서 시·도 단위까지는 충분히 많은 수의 표본을 배정하였으나 시·군·구 단위는 불규칙하게 표본이 배정되어 있으며, 어떤 시·군·구에는 극히 적은 수의 표본이 조사되었으므로 시·군·구 단위의 추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연속적으로 계속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과거의 조사된 자료도 이용할 수 있는 시계열 모형의 기법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추정방법과 시계열 모형의 설정 등에 관한 연구는 짧은 시간에 완성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아니고 장시간 다양한 경우의 자료 분석을 통해서만이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통계당국은 적극적 지원과 관심으로 연구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주석 1)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개편은 5년마다 이루어지며, 가장 최근의 표본개편은 1998년 1월에 있었다.

주석 2)매월 조사되는 표본 USU수를 같게 하기 위해서 표본 USU를 8개 부차표본으로 편성한 후에 표본교체 순서에 따라 표본가구로 포함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10년간 사용될 표본 USU를 고려한다면 15개 set의 표본 USU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 한 표본 PSU의 총조사기간은 8개월이므로 120개월=8개월×15에서 필요한 표본 USU의 set수가 산정될 것이다.

주석 3)조옥현·노근호, 『소지역 통계 발전방향』, 소지역 통계 워크숍, 1999. 6.

第5章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에서 실업관련 통계가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양적·질적인 차원에서 크게 변모하여 왔다. 특히 1997년 말의 IMF 지원체제에서 비롯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초래하였다.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고용규모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임금상승률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실업자 발생과 소득불안정 및 불균등의 심화 등에 따른 사회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1998년 3월 이래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내용과 규모로 적극적으로 추진된 실업대책이 기대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으며 평가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행의 실업 통계로는 이러한 평가를 심층적으로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는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빠르게 변모해 가는 경제·사회적 구조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자료는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관련 통계는 급변하는 고용구조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반영하여 고용 및 실업대책의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통계는 국제비교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무한경쟁의 세계에 접어드는 마당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나라들의 노동시장 여건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업통계가 거시경제 지표로서 정확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고 정부 실업대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 그리고 국제비교의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실업통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실업과 관련한 개념 및 실업의 통계적 정의, 실업통계 작성의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실업통계 작성방법 및 현황, 그리고 실업통계 작성방법 및 현황, 그리고 실업통계 작성방법의 국가간 차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외국의 실업통계 작성현황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또한 실업통계 개선의 필요성을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통해서 제시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개선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 및 사회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실업관련 통계가 지녀야 할 과제를 총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통계가 지닌 한계를 최대한 극복해 보고자 하였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된 실업 통계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후속 연구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계의 개선 이외에 통계의 활용, 특히 조사된 통계의 공표에 관한 문제를 제안하고 싶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일부항목들 - 예를 들면 '비경제활동상태' 등 - 에 대해서는 대외 공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조사된 모든 통계는 원칙적으로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강순희 외,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1999. 7.
- 김재호, 『도시근로자의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7. 12.
- 김재원, 『노동경제학』, 박영사, 1997.
- 남세진·최성재,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배무기, 『노동경제학』, 경문사, 1995.
- 신동균,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3.
- _____, 『1998년 실업구조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오문완, 『단시간근로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 6.
- 이계오·류제복·이귀형, 『소지역 추정법을 이용한 충북 시·군·구의 실업자 추정』, 소지역 통계워크숍, 1996. 6.
- 이철수, 『단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8. 6.
- 장연식, 『표본관리론』, 다산출판사, 1996.
- 정인수,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1.
- _____, 『청년층 실업현황과 고용촉진대책』, 한국노동연구원, 1999. 7.
- 조우현, 『노동경제학』, 범문사, 1998.
- 조육현·노근호, 『소지역 통계 발전방향』, 소지역 통계워크숍, 1996. 6.
- 최강식·박진희, 『실업통계의 국제비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10권 제2호, 1997. 6.
- 최강식·전재식, 『1999년도 노동력 수급전망』, 한국노동연구원, 1999. 2.
- 최경수, 『단시간근로자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7. 7.
- 홍성민, 『실업률 통계의 개선방안』, 『기업경제』, 1997. 5.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에 필요한 통계개선 방향」, 기자간담회 자료, 1998. 4.
- 한국노동연구원,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1998. 10.
-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연구회,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방향에 관한 종합보고서」, 1998. 3.
- 노동부, 「실업률 통계작성 방법비교」, 내부자료, 1998. 4.
- _____, 「실업통계 보완방안」, 경찰부가조사 관련 회의자료, 1998. 4.
- 통계청, 「한국통계 조정현황」.
- 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_____, 「경제활동인구월보」, 각호.
- _____,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30년」, 1994. 12.
- _____, 「제16차 국제노동전문가회의 참가결과보고」, 1998. 12.
- _____, 「노동력조사표—한국, 미국, 일본」, 1999. 4.
- _____, 「표본개편연구회 연구보고」, 1996. 8.
- 總務廳統計局, 「勞働力調査特別調査報告書」, 2, 1996.
- 總務廳統計局, 「勞働力調査年報」, 1996.
- 樋口美雄, 「勞働經濟學」, 東洋經濟新報社, 1996.
- Bowie C. E., Cahoon L. S. and E. A. Martin, "Evaluating Changes in the Estimates", *Monthly Labor Review*, Sep. 1993.
- Bregger J. E. and C. S. Dipbo, "Why is it Necessary to Change?", *Monthly Labor Review*, Sep. 1993.
- Bregger J. E. and S. E. Haugen, "BLS Introduces New Range of Alternative Unemployment Measures", *Monthly Labor Review*, Oct. 1995.
- Constance Sorrentino,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Unemployment Indicators", *Monthly Labor Review*, March, 1993.
- Constance Sorrentino, "International Unemployment Indicators, 1983-93", *Monthly Labor Review*, March, 1993.

- Fleck, S. and C. Sorrentino, "Employment and Unemployment in Mexico's Labor Force", *Monthly Labor Review*, Nov. 1994.
- James W. McNally, *Generating Hot-Deck Imputation Estimate : Using SAS for Simple and Multiple Imputation Allocation Routines*, Working Paper Series, Brown University, 1997. 10.
- Koji Taira, "Japan's Low Unemployment : Economic Miracle or Statistical Artifact?", *Monthly Labor Review*, July 1973.
- Lancaster T, "Econometric Methods for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Econometrica*, 1979.
- Polivka A. E. and J. M. Rothgeb, "Redesigning the CPS Questionnaire", *Monthly Labor Review*, Sep. 1993.
- Hussmanns R, Mehran F. and V. Verma, *Survey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 An ILO Manual on Concepts and Methods*, 1990.
- Sara Elder and Constance Sorrentino, "Japan's Low Unemployment : a BLS Update and Revision", *Monthly Labor Review*, Oct. 1993.
- BLS, *Comparative Civilian Labor Force Statistics*. 1994. 8.
- _____, *Comparison of old and revised current population survey questionnaires*, 1994. 2.
- _____, *Handbook of Methods*, April 1997.
- _____, *Current Population Survey Interviewing Manual*, January 1994.
- Statistics Canada, *Guide to the Labour Force Survey*, January 1999.
- Eurostat, *The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1996.
- ILO, *The Measurement of underemployment*, Six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October, 1998.
- _____, *World Labour Report*, 1995.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1976-96)*, 1997.
- _____, *Quarterly Labour Force Statistics*, 1999.
- _____, *Employment Outlook*, July 1995.
- _____, *Employment Outlook*, June 1997.
- _____, *Employment Outlook*, June 1998.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Force Survey : Historical Supplement*, 1996.
- Republic of China, *Report on the Manpower Utilization Survey Taiwan Area*, 1998.
- Republic of China, *Yearbook of Manpower Survey Statistics Taiwan Area*, 1998.
-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 *Ministry of Labour Singapore*, Report on the Labour Force Survey of Singapore 1994.
-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労働力調査」.

附錄

<附錄 1> 經濟活動人口調查表

<附錄 2> 經濟活動人口 附加調查表

<附錄 1> 經濟活動人口調查表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작성기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표>

관리사항					
조사구번호					-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					

조사담당자기입사항				
방문일시 및 결과	1차	일시		1.조사완료 2.부재중 3.응답거부
	2차	일시		
	3차	일시		
응답자성명				
전화번호	☎()			-
의견				

가구원사항				
구분	남	여	계	
총 가구원				
제외자	15세 미만			
	미취학자녀수			
	15세 이상			
대남가구원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제외.사중가구주유무	1. 있음 2. 없음			
가구구분	1. 농가 2. 비농가			

가구원번호□□ (가구표상의 가구번호)

1. 가구원 설명	2. 가구주와의 관계	3. 성별	4. 생년월일	5. 교육정도			6. 혼인상태
				학력	제일	수학여부	
1. 일련 번호 □ □ 2. 성별	1. 가구주 2. 배우자 3. 이혼자녀 4. 이혼형제 자매 5. 부모(상인, 장모) 6. 조부모 7. 기타 친인척 8. 동거인	1. 남자 2. 여자	양력 □ □ □ □ 년 □ □ 월 □ □ 일	0. 무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 (초급대) 5. 대학 6. 대학원	1. 인문사회계열 2. 예체능계열 3. 사범계열 4. 기타(상남공수 상계열) 5. 자연계열 6. 의학계열	1. 졸업 2. 재학 3. 중퇴 4. 휴학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7.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1. 텔레비전(12번으로) 6. 통학 2. 일터 7. 면회 3. 구직활동 8. 심신양육 4. 육아 9. 기타) 5. 가사		9. 지난 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있었음 20. 없었음. ~ 제 지난 주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11. 일시적 병, 사고 12. 연가, 교육 13. 가족적 이유 14. 노사분규 15. 조영중단 16. 기타)		10. 지난 주에 직장(일)을 구해보았습니까? 1. 구해보았음(15번으로) 2. 구해보지 않았음			
8. 지난 1주간 조금이라도 수업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구원(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있었음 2. 부가가족구성자 3. 없었음		10번으로		11. 지난 1개월 내에 직장(일)을 구해보았습니까? 1. 구해보았음(15번으로) 2. 구해보지 않았음(20번으로)			
12. 지난 주에 통틀어 몇 시간 일을 했습니까? □ □ □ 시간 1. 18시간 미만 부가가족구성자(10번으로) 2. 1-35시간 3. 36시간 이상(27번으로)		15.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20번으로)		20. 지장이라도 직장(일)이 있다면 일하겠습니까? 1. 하겠음. 2. 하지 않음(24번으로)			
13.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십니까? ◆ 그렇함. ~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는? 11. 정근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12. 건강 13. 육아 14. 가사 15. 통학 16. 본인이 원해서 17. 일거리가 없어서 18. 기타() ◆ 그렇지 않음. ~ 그러면 지난 주에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는? 21. 일시적 병, 사고 22. 일거리 없음 23. 연가, 교육 24. 육아 25. 가족적 이유 26. 노사분규 27. 사업부진 28. 기타()		16.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일)을 구했습니까? 1. 직업소개소에 등록 2. 취직시행 3. 신문, 잡지, PC, 책보 등 구인·구직 정보 4. 학교, 학원 추천 5. 사업체 방문 6. 친구, 친지 소개 7. 자영업 준비 8. 기타() 17. 구직활동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 개월 18. 원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1. 일용근로 2. 비일용근로		21.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22. 지난 주(일)에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 본인이 교육, 기술, 경험에 적합한 2. 원하는 임금 수준에 맞는 3.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4.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5. 육아 6. 가사 7. 통학 8. 건강상 이유 9. 기타			
14. 지난 주에 추가로 직장(일)을 찾아보았거나, 취업시간을 더 늘릴 수 있었습니까? ~ 그러면 어떤 형태를 원하십니까?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2.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 다른 일도 하고 싶음. 3.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 4.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27번으로)		19. 주로 하는 일을 원합니다, 가사나 통학을 하면서 통용이 하는 일을 원하십니까? 1. 주로 하는 일 2. 통용이 하는 일		23. 지난 1년간 직장(일)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 그러면 구해본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 6개월 이하 2. 7-12개월 이하 3. 없었음. 24. 앞으로 1년 이내에 구직할 의사가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p>25. 판매 수입을 목적으로 일반 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p> <p>1. 1년 미만 2. 1년 이상 3. 없었음</p> <p style="text-align: right;">(질문 끝)</p>	<p>26. 직장(업)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개인·가족적 이유로 2. 건강상 이유로 3. 정년퇴직, 연로 4. 직업(업)기간·보수 등이 불만족 5. 직장의 특성·책임 6. 명예·초기퇴직, 정리해고 7. 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필요 8.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정 악화 9. 기타</p>	<p>27.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p> <p>◆ 사업체명 _____ ◆ 사업체의 주된 활동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p>										
<p>28.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p> <p>◆ 일의 종류 _____ ◆ 직명(직책)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p>	<p>29. 직장(업)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p> <p>◆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p> <p>1. 상 용 4. 고용주 2. 임시 5. 자영자 3. 월 용 6. 무급가족종사자</p>	<p>30. 다니시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p> <table border="0"> <tr> <td>1. 1~4인</td> <td>6. 300~399인</td> </tr> <tr> <td>2. 5~9인</td> <td>7. 400~499인</td> </tr> <tr> <td>3. 10~19인</td> <td>8. 500~999인</td> </tr> <tr> <td>4. 20~49인</td> <td>9. 1,000인 이상</td> </tr> <tr> <td>5. 50~99인</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질문 끝)</p>	1. 1~4인	6. 300~399인	2. 5~9인	7. 400~499인	3. 10~19인	8. 500~999인	4. 2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1. 1~4인	6. 300~399인											
2. 5~9인	7. 400~499인											
3. 10~19인	8. 500~999인											
4. 2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